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

(A Study on the Reform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nd Quarantine Systems in Compli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Vol I

2006

**연 세 대 학 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7. 20.

주관연구기관명 : 연 세 대 학 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책임자 : 손 명 세

연구 원 : 박 길 준

연구 원 : 이 선 규

연구 원 : 장 욱

연구 조 원 : 이 일 학

연구 조 원 : 함 기 현

연구 조 원 : 이 미 진

연구 조 원 : 이 은 영

연구 조 원 : 김 지 현

요 약 문

I. 제 목

-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선방향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국제보건규칙이 세계보건총회에서 의결된 후에는 회원국이 유보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규칙이 해당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사업 또는 법률을 개정·수립하여야 함.
- 세계보건기구 헌장(Constitution) 제14장 회원국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 제62조와 제63조에 의하면 각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및 협약, 조약, 규칙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업에 대해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국에서 공고된 건강과 관련한 법률, 규정, 공식보고서 및 통계에 대해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보건규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62조 각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가 결정한 권고 및 협약, 조약, 규칙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각 회원국은 자국에서 공고된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공식 보고서, 통계자료를 세계보건기구에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 최근 들어 SARS,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 9.11 테러 이후의 생물학적 테러에 대한 위협은 국내의 전반적인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에 대해 검토하여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III. 연구의 목적

- WHO에서는 2006년 발효를 목표로 국제보건규칙(IHR)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개정 예정인 국제보건규칙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된 국제보건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며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내 현황 및 실태에 적합한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관련 법령 개정 방향 포함)의 개편 방향 마련에 필요한 정책대안 및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IV.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국제보건규칙 개정 취지와 내용분석
 - 개정된 내용 및 개정의도의 파악

- 국내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분석

- 국제보건규칙 개정이 국내 법 및 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세계보건기구의 헌장(Constitution)에 명시된 규칙(Regulations)이 갖는 효력과 이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 고찰
 - 국제보건규칙의 국제법적 효력 검토
 -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내용과 국내 법 및 제도와의 비교

- 개정 예정인 국제보건규칙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관련 법령 개정 방향 포함) 개편 방향 마련에 필요한 정책 대안 제시

- 법률 개정 방향 제시
 - 구체적인 법률(전염병예방법, 검역법 등)의 개정안 마련

- 외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외국사례 검토

-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제도의 시행 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검토

V. 연구결과

1. 국제보건규칙의 의미와 국내법에 끼치는 영향 분석

- 국제보건규칙(2005)가 발효되는 2007년 6월까지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 등의 국내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동 시점에서 5년 이내, 즉 2012년 6월까지 국제보건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질병발생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 및 검역 능력을 규칙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함.
 - 회원국이 유보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규칙이 해당 회원국에 효력을 발효하며, 이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사업 또는 법률을 개정·수립하여야 함.

- 세계보건기구 헌장(Constitution) 제14장 회원국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 중 제62조와 제63조에 의하면 각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및 협약, 조약, 규칙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업에 대해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국에서 공고된 건강과 관련한 법률, 규정, 공식 보고서 및 통계에 대해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보건규칙은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회원국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국제보건규칙(2005)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국내법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검역법
 - 전염병예방법
 - 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본 연구에서는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2. 국내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에 대한 역량 평가

○ 원래 연구내용에는 없었던 국내 전염병관리 및 검역 체계에 대한 역량 평가를 연구내용에 추가해 달라는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었음.

○ 이를 위해 6월 2일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선방향 전문가 워크숍’에서 역량 평가 조사표를 만들어 조사 수행하였음.

○ 역량평가의 설문 내용은 국제보건규칙(2005) 별표 1의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요건’ 과 ‘지정 공항, 항만, 육상교차점을 위한 핵심역량 요건’ 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시한 역량 평가는 다음과 같음. (부록 3 참조)

-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권)의 핵심 역량 평가

3. 현행 관련 법규의 개정안 마련

○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개정은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전염병 관리의 특성상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 왔지만, 이로 인해 전체적인 법안의 체계에 있어서의 정합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삭제 조항과 유사조항 등이 다수 남아 있음.

○ 전염병예방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염병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

고 있는 전염병을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전염병에 대한 이해의 증가로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전염병의 종류와 그 분류기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00년에 종전의 전염병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SARS 이후 변화된 상황이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고 있어, 전염병의 종류와 그 분류의 재검토가 필요함.

- 지금의 검역법은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해공항검역규칙(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이 폐지되고 1954년 해외로부터 전염병이 전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해공항에 내항하는 승객·승무원·선박·항공기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해공항검역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963년 이 법의 명칭을 검역법으로 바꾸어 개정된 후, 약 12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짐.
- 현재의 검역법은 일본의 검역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초기 제정 당시부터 항만 및 선박검역을 위주로 제정되었고, 이후 항공기, 도보검역 등이 추가되어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한 조항에 선박, 항공기, 여행자, 도보검역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검역기준의 혼동을 야기시킴.
- 현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 하에 국립검역소를 두고 있으므로 검역법 상 이루어지는 업무가 질병관리본부장의 소관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검역소장의 권한 및 한계의 범위가 미흡함.
- 현행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과 현행 검역법, 검역법 시행규칙, 검

역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별책자료 참조.

VI.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선진 전염병관리체계 및 검역체계의 수립 방안과 관련 법령을 개정에 반영할 수 있음.
- 국내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제도 마련하고자 함.
- 전염병 등 공중보건상의 위기사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체계를 완전히 갖추게 됨.
- 일부의 연구 분야(전염병 분류 등)는 연구진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연구가 요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연구결과로서 완성되는 정책안을 시행하고 법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 및 토대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함.
-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의 향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 관련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SUMMARY

(영 문 요약 문)

A Study on the Reform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nd Quarantine Systems in Compli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referred to as IHR(2005), was unanimously adopted on 23 May 2005 by the World Health Assembly and these Regulations are scheduled to enter into force in June 2007. The broadened purpose and scope of the IHR (2005) are to “prevent, protect against, control and provide a public health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and which avoid unnecessary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and trade.”

The renewed mandate given to Member States and WHO under the IHR(2005) has also increased their respectiv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particular, States Parties to the IHR(2005) are required to develop, strengthen and maintain core surveillance and response capacities to detect, assess, notify and report public health events to WHO and respond to public health risks and public health emergencies. WHO, in turn, is to collaborate with States Parties to evaluate their public health capacities, facilitate technical cooperation, logistical support and the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building capacity in surveillance and response.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of the IHR (2005) and its application into the Korean health policies and laws.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the drafts for the revision of the Communicable Diseases Prevention Act and the Quarantin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vision process of both the Communicable Diseases Prevention Act and the Quarantine Act first started from the review of their contents and structures to ensure their coherence; then, the compliance with the IHR (2005) has been reviewed.

The major revision poi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freedom and rights was heavily emphasized. The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very often raised in the consideration of the revision of the Acts. The issues such as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d the due process of isolation and quarantine were considered and applied into the preparation of the drafts.

Second, the classification of the legally designated communicable diseases for public health actions was considered by reviewing th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EU, Malaysia, Taiwan and Singapore. However, since it requires the specialty in epidemiology and microbiology, further studies should be followed.

Third, the grant of appropriate public health authority to the public health officers for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nd the quarantine officers was also an important point to consider. In

order to enforce the public health measures, public health authority should be guaranteed for public health officials.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1.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1
2. 신종 전염병의 확산	2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2
제4절 연구방법	3
1. 문헌조사	3
2. 면접조사(델파이 조사)	4
3. 외국사례 검토	4
4. 정책자문회의(패널토의)	4
5. 법안작성실무회의	4
6. 공청회	4
제2장 국내 · 외 연구 현황	6
제1절 국제보건규칙의 의미와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	6
1. 국제보건규칙의 개정과정	6
2.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11
3. 국제보건규칙(2005)과 우리나라 법률과의 비교	12
제2절 각국의 전염병 관리 현황	30
1. 법정전염병의 종류와 분류	30
2. 예방접종	40
3. 감시와 보고	41
제3절 각국의 검역전염병 지정 현황	48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50
제1절 이론적 분석	50
1. 전염병관리와 공중보건법학	50
제2절 전문가 워크샵을 통한 역량 평가 시행	53
1.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결과 분석	53

2.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역량평가결과	57
제3절 전염병관리체계의 개선방안	61
1. 현행 전염병예방법 체계의 문제점	61
2. IHR 대표기관의 설치 및 지정	62
3.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	64
제4절 검역법의 개정방안	96
1. 현행 검역법 체계의 문제점	96
2. 검역법의 개정방향	97
3. 검역법 개정안	98
4. 제도적 개선 방안	118
제4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121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22
참고문헌	123
부록1. 일본전염병예방법	126
부록2. 캐나다검역법	162
부록3. 핵심역량평가 설문지	242
부록4. 핵심역량평가 주관식 답안	256
부록5.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285

표 목 차

표1. 연구 수행 체계	5
표2.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의 종류	31
표3.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의 변화	32
표4. 일본의 법정전염병	33

표5. 중국의 법정전염병	35
표6. EU의 법정전염병	36
표7. 말레이시아의 법정전염병	37
표8. 대만의 법정전염병	38
표9. 싱가포르의 법정전염병	39
표10.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평가 결과분석	56
표11.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역량평가	60

그림목차

그림1.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결정도구	16
-----------------------------------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 국제보건규칙이 세계보건총회에서 의결된 후에는 회원국이 유보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규칙이 해당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사업 또는 법률을 개정·수립하여야 함.
- 세계보건기구 헌장(Constitution) 제14장 회원국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 제62조와 제63조에 의하면 각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및 협약, 조약, 규칙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업에 대해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국에서 공고된 건강과 관련한 법률, 규정, 공식보고서 및 통계에 대해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보건규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62조 각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가 결정한 권고 및 협약, 조약, 규칙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각 회원국은 자국에서 공고된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공식 보고서, 통계자료를 세계보건기구에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2. 신종 전염병의 확산

- 최근 들어 SARS,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 9.11 테러 이후의 생물학적 테러에 대한 위협은 국내의 전반적인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에 대해 검토하여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제2절 연구목적

- WHO에서는 2006년 발효를 목표로 국제보건규칙(IHR)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개정 예정인 국제보건규칙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된 국제보건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며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내 현황 및 실태에 적합한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관련 법령 개정 방향 포함)의 개편 방향 마련에 필요한 정책대안 및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 국제보건규칙 개정 취지와 내용분석
 - 개정된 내용 및 개정의도의 파악
- 국내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분석
- 국제보건규칙 개정이 국내 법 및 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세계보건기구의 헌장(Constitution)에 명시된 규칙(Regulations)이 갖는 효력과 이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 고찰
 - 국제보건규칙의 국제법적 효력 검토
 -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내용과 국내 법 및 제도와의 비교
- 개정 예정인 국제보건규칙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관련 법령 개정 방향 포함) 개편 방향 마련에 필요한 정책 대안 제시
- 법률 개정 방향 제시
 - 구체적인 법률(전염병예방법, 검역법 등)의 개정안 마련
- 외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외국사례 검토
-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제도의 시행 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검토

제4절 연구방법

1. 문헌조사

- 자료수집을 통한 사안의 검토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관된 문헌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넷 검색 및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제도 및 법안에 담겨야 할 사안을 검토함.
- 현행 정책 및 법률, 기준, 제도의 검토 및 문제점 파악
 - 앞에서 검토한 사안과 관련된 현행 정책 및 규칙, 기준, 제도들을

검토하고, 그 밖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도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국제보건규칙이 갖는 국제법적 효력에 대해 검토하여 국제보건규칙 개정이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2. 면접조사(델파이 조사)

-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에 관련된 기관(질병관리본부, 검역소, 보건소 등)에서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3. 외국사례 검토

- 앞의 문헌조사를 통해 얻어진 외국이 자료를 토대로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법적·정책적 대응을 취하고 있는지를 각국의 법률과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4. 정책자문회의(패널토의)

-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에 관련된 학자, 의사 혹은 그 외의 전문가, 법학자,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8-10인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방향과 입법안의 틀과 초안을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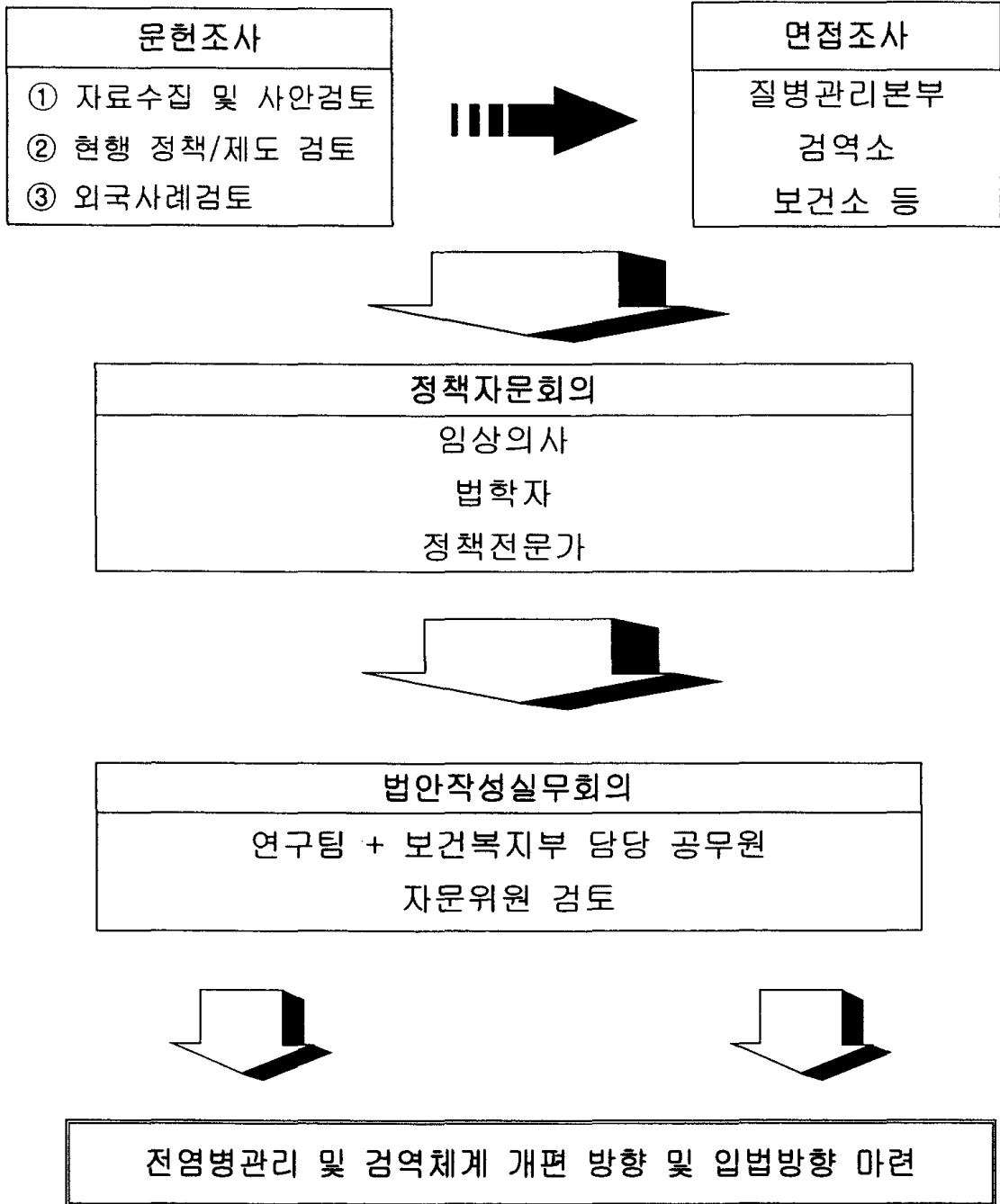
5. 법안작성실무회의

-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의 연계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최종입법안을 작성함.

6. 공청회

- 최종 법안 및 정책개편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합의 도출

<표 1> 연구 수행 체계



제 2 장 국내·외 연구 현황

제1절 국제보건규칙의 의미와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

1. 국제보건규칙의 개정과정

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의 역사

- 전염병의 국가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의 필요성은 1830년부터 1847년까지 유럽을 휩쓴 콜레라의 유행이 계기가 되어 1851년 공중보건 관련 최초의 국제회의인 “국제위생회의(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국제조약의 체결을 논의하게 됨.
- 그 결과 1892년 공중보건 관련 최초의 국제조약인 “국제위생협정(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이 체결되어 1926년 6월 21일 파리에서 조인됨.
 - 1933년 4월 12일 헤이그: “항공기 운항을 위한 국제위생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Aerial Navigation)
 - 1934년 12월 22일 파리: “건강증명서에 대한 영사비자 문제를 위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Agreement for Dispensing with Bills of Health)”과 ” 건강증명서에 대한 영사비자 면제를 위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Agreement for Dispensing with Consular Visas on Bills of Health)”
- 1948년 세계보건기구가 발족됨에 따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도 국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어 그 결과 탄생한 것이 1951년의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s)”임.

- 1955년, 1956년, 1960년, 1965년 등 4회의 개정과정을 거침.

○ 1969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가 채택되면서 ” 국제위생규칙 “은 폐지됨.

- 1973년과 1981년에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 국제보건규칙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3종의 중증 전염병의 유행 상황을 감시하고 국가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 각 회원국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사실을 WHO에 보고하고 WHO는 이를 역학주보(Weekly Epidemiological Record)에 발표함.

(2) 대상 전염병의 국가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은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구서(deratting),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함.

(3) 검역증,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제간에 통용되는 보건문서를 규정함.

나. 국제보건규칙의 개정과정

○ 1980년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신종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현행 국제보건규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1990년대 초반 남미에서 제7차 콜레라 범 유행이 시작되고 1995년에 신종 전염병인 '에볼라 출혈열(Ebola Haemorrhagic Fever)'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자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 1995년 제48차 세계보건총회: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한 채택

- 2001년 제54차 세계보건총회: Global Health Security에 대한 결의를 받아들임.
 - 회원국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공중보건학적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을 WHO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결정임.

- 2002년 세계보건총회: 2001년의 결의안을 국제보건규칙에 반영하기로 재결의

- 2003년 제56차 세계보건총회: 2005년 제58차 세계보건총회까지 새로운 국제보건규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정부간 협상팀(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결의안 채택

- 2004년 1월 제113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사무국이 마련한 개정안 초안을 보고받고, 2004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세계보건기구 6개 지역별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하여 2004년 11월에 “정부간 협상팀”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정부간 협상팀” 제1차 회의가 2004년 11월에 개최되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05년 2월 제2차 회의가 개최되어 개정안에 기재될 보건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하였으나,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쟁점들이 해소되지 못함.
 - 2005년 5월 제2차 회의 속개 형식으로 “정부간 협상팀”를 다시 개최하여 최종안을 합의하였으며, 이를 “국제보건규칙(2005)”라 명명함.

<국제보건규칙 개정 결의안>

가. 논의경과

- 5월 14일(토) 새벽 「제2차 국제보건규칙 개정 정부간 실무 작업반 회의」에서 채택되어 제58차 WHO 총회에 제출된 국제보건규칙 개정 결의안이 5월 17일(화) A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전체 토론과 4차례 걸친 비공식 작업반(Informal Working Group) 회의를 거쳐 5월 20일(금) 오전 A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됨.

나. 결의안 주요내용

- IGWG가 기존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국제보건규칙을 ‘국제보건규칙(2005)’로 명명함.
- 회원국과 WHO 사무총장에게 제2조(목적과 범위)와 제3조(원칙)에 따라 국제보건규칙(2005)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청함.
- 회원국에 대해 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역량 강화노력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함.
- 사무총장에게 국제보건규칙(2005) 이행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다. 대만의 IHR 적용 문제

- 국제보건규칙(2005)은 제3조에서 보편적 적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64조에서 ‘국가’가 IHR의 수용, 거부, 유보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국가만이 IHR에 가입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만은 중국이 견지하는 'One China Policy'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국제보건규칙 규정만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WHO와 중국간 대만의 IHR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A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국제보건규칙 제3조(보편성원칙)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회원국과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OP2를 삽입함으로써 대만이 IHR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됨.

라. 향후 조치사항

- 국제보건규정 개정 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되면 18개월 이내 (2006년 11월 시한)에 국제보건규칙(2005)의 수용, 거부, 유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동 규칙 § 59.1).
- 상기 의사표시 후 24개월 이내 동 규칙 시행에 필요한 국내법 및 행정체계를 정비하여야 함(동 규칙 § 59.2).
- 동 기간 내에 국내법 및 행정체계 정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1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유예를 요청하여야 함(동 규칙 § 59.3).
- 제61차 WHO 총회(2008년)까지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동 규칙 § 54.1).
- 발효 후 5년 이내에 질병감시, 평가, 보고체계를 국제보건규칙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비하여야 함(동 규칙 § 5.1).
- 상기 기한 내에 정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비기간 연장을 2년씩 최대 2차례 요구할 수 있음(동 규칙 § 5.2).

2.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국제보건규칙(2005)가 발효되는 2007년 6월까지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 등의 국내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동 시점에서 5년 이내, 즉 2012년 6월까지 국제보건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질병발생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 및 검역 능력을 규칙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함.
 - 회원국이 유보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규칙이 해당 회원국에 효력을 발효하며, 이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사업 또는 법률을 개정·수립하여야 함.

- 세계보건기구 헌장(Constitution) 제14장 회원국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 중 제62조와 제63조에 의하면 각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및 협약, 조약, 규칙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업에 대해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국에서 공고된 건강과 관련한 법률, 규정, 공식 보고서 및 통계에 대해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보건규칙은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회원국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62조 각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가 결정한 권고 및 협약, 조약, 규칙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각 회원국은 자국에서 보건과 관련하여 공고된 중요한 법률, 공식 보고서, 통계자료를 세계보건기구에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 국제보건규칙(2005)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국내법

- 검역법
- 전염병예방법
- 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국제보건규칙(2005)과 우리나라 법률과의 비교

○ 국제보건규칙(2005)은 전반부에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뒤에 일상적인 검역에 해당하는 출입국시 각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루고 있음.

○ 국제보건규칙(2005)의 적용대상 질병의 정의를 제1조에서 ‘원인이나 출처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현저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칙에서는 ‘적용대상 질병(검역전염병)은 엘토르 콜레라를 포함한 콜레라, 페스트, 황열을 의미한다’라고 제한적으로 표현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그 표현이 모호함.
- 질병의 정의가 모호하게 표현된 것은 국제보건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를 전염병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누출 및 방사능 사고까지 확대하려다가 일부 회원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한 결과임.

○ 제2조에서는 그 목적을 ‘국제적인 질병확산을 예방·방어·관리·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방법은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국제교통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은 현행 국제보건규칙이 서문에서 그 목적을 ‘세계교통

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질병의 국제전파에 대하여 최대한 방지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제3조에서는 규칙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다음의 4가지로 명시하고 있음.

- 인간의 존엄·권리·근본적인 자유의 전적인 존중
- 국제연합헌장과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준수
- 질병의 국가간 전파에서 세계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적용
- 자국의 보건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시행에 관한 각 국가의 주권 존중

○ 제4조에 의하면, 각 국가는 IHR 국가 대표기관(National IHR Focal Point)과 책임당국(responsible authorities)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야 하며,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IHR 연락사무소(WHO IHR Contact Point)를 설치하여야 함.

- IHR 국가대표기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세계보건기구의 IHR 연락사무소에 각종 신고를 하는 역할과 국가의 다른 행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국제보건규칙(IHR)	현행 검역법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1부 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원칙 책임당국 제1조 (정의) 제2조 (목적과 범위) 제3조 (원칙) 제4조 (책임당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검역전염병의 정의) → (정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법정 전염병의 분류

	<p>제38조의2 (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p> <p>제38조의3 (권한의 위임)</p>	<p>[신설] IHR 국가대표기관 지정·설치에 관한 사항</p> <p>[신설] IHR 국가대표기관의 기능</p> <p>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p> <p><u>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질병관리본부</u></p> <p>[신설] 국가공중보건비상사태 관리계획의 수립</p>
--	--	---

○ 현행규칙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이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회원국은 그 사실을 세계보건기구에 신고하여야 하나, 국제보건규칙(2005)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질병발생 상황을 규칙의 별표2에서 제시하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결정도구”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는 비교적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고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음.

가. 두창(small pox), 야생 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한 폴리오, 신규 아형으로 인한 인체감염 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4종 전염병은 1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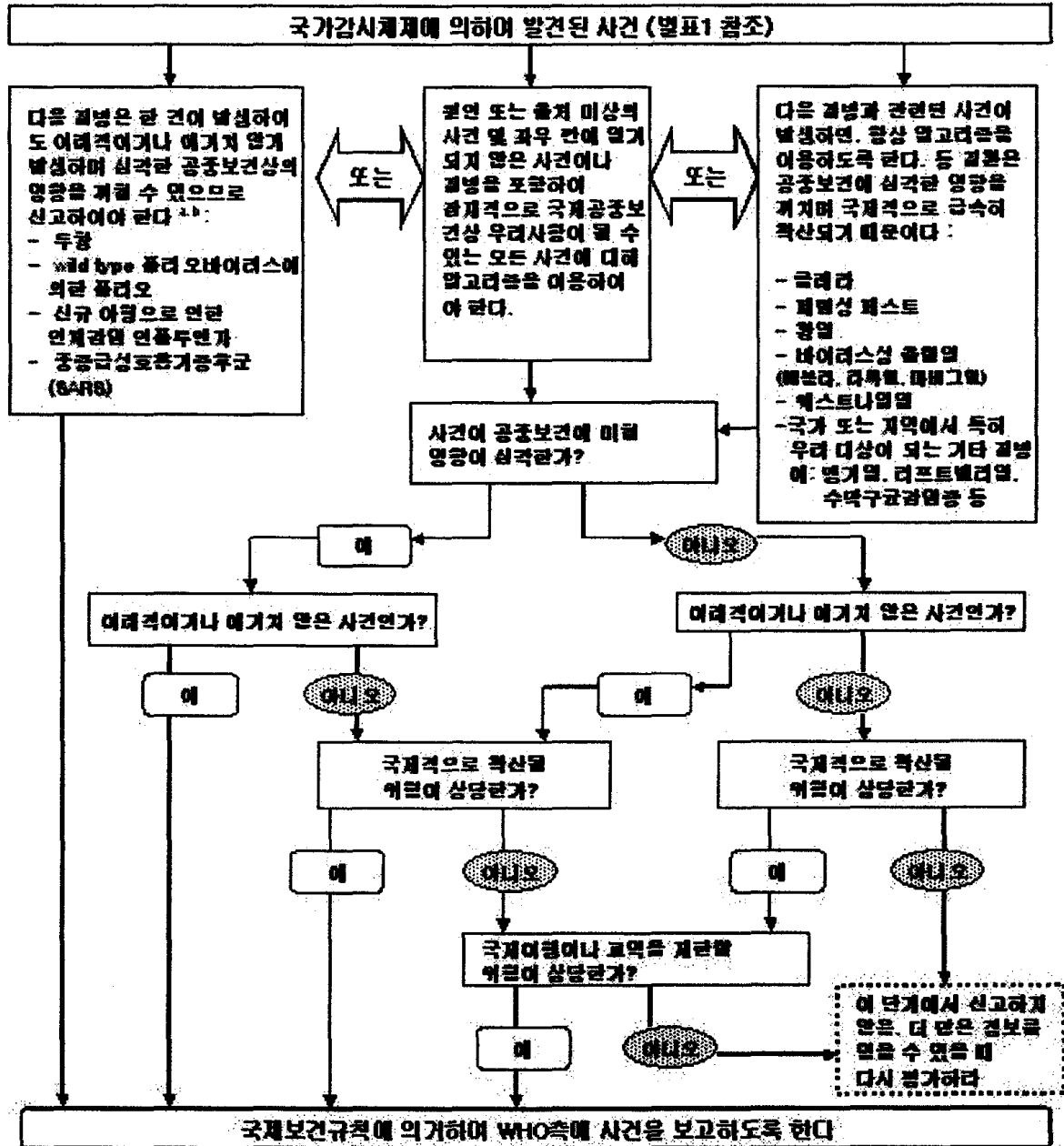
나. 콜레라,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라싸, 마버그), 웨스트나일열 및 국가 또는 지역에서 특히 우려 대상이 되는 기타 전염병(댕기열, 리프트벨리열, 수막구균감염증 등)과 원인 또는 출처 미상의 사건을 포함한, 잠재적으로 국제공중보건상 우려사항이 될 수 있는 사건은 다음의 경우에 신고함.

- (1) 사건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고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것일 때
- (2) 국제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상당할 때
- (3) 국제여행이나 교역을 제한할 위험이 상당할 때

다. 이 밖에 각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음.

- (1) 국제보건비상사태를 성립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평가 후 24시간 내에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세계보건기구에 신고
- (2) 동 사건에 대응하여 시행한 보건조치의 내용에 대한 신고
- (3)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입수한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충분히 상세한 공중보건 정보 - 환례 정의, 검사 결과, 위험의 출처와 유형,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질병확산에 영향을 미친 조건 및 시행된 보건조치 - 를 지속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제공
- (4)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하였거나 특이한 공중보건상의 사건이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한 증거를 보유하면 원인이나 출처와 상관없이 모든 관련 정보를 세계보건기구에 제공
- (5) 평가결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도 WHO의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보건조치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6) 자국 영토 밖에서 발견된 공중보건위험이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 - 인체감염 사례, 감염이나 오염을 전파하는 매개체 또는 오염된 상품이 유·출입되는 경우 등 - 를 입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가능한 한 24시간 내에 WHO에 알림.
- (7) 신고한 사건에 대한 WHO의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일차적인 답변이나 수신확인을 24시간 내에 해야 함.

<그림 1>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결정도구



a WHO 사례정의에 따름

b 질병목록은 오직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함

국제보건규칙(IHR)	현행 검역법	현행 전염병예방법
<p>제2부 정보 및 공중보건 대응</p> <p>제5조 (감시)</p> <p>제6조 (신고)</p> <p>제7조 (예기치 못하였거나 이례적인 공중보건 사건 발생기간 중 정보교환)</p> <p>제8조 (협약)</p> <p>제9조 (기타 보고)</p> <p>제10조 (검증)</p> <p>제11조 (WHO의 정보 제공)</p> <p>제12조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결정)</p> <p>제13조 (공중보건 대응)</p> <p>제14조 (WHO와 정부간기구 및 국제기구간의 협력)</p>	<p>[신설] IHR국가대표기관에 보고</p>	<p>[신설] 공중보건비상사태 심의위원회의 설치</p> <p>[신설] IHR국가대표기관에 보고</p> <p>[신설]국제협력을 위한 정보교환</p> <p>[신설]국제보건기구(WHO)의 요청에 의한 검증</p>

○ 국제보건규칙(2005)의 특징 중 하나는 각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질병 감시 역량과 대응역량을 제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 질병 감시 역량은 규칙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탐지·신고·보고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

- 이 규칙이 각 국가에게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해 제시하는 기간은 5년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조건을 충족하

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2년에 걸쳐 2차례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됨.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요건 (IHR 별표1)	관련 법령
<p>1. 지역사회 차원 또는 일차적 공중보건 대응 차원 (보건소 차원)</p> <p>1) 관할 구역 내 전역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 정도를 초과하는 정보의 질환 또는 사망을 동반한 사건을 탐지할 역량</p> <p>2) 가능한 모든 필수 정보 - 임상적 특징, 실험실 결과, 위험의 출처와 유형,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 및 적용한 보건조치 등 - 를 적절한 차원의 보건의료 대응기관에게 즉각 보고할 역량</p> <p>3) 초보적 관리조치를 즉각 시행할 역량</p>	<p>전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p> <p>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제2호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보조</p> <p>전염병예방법 제2장 신고와 보고의 의무 제4조 (의사등의 신고) 제5조 (기타 신고의무자) 제6조 (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 제7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 제7조의2 (보건소장등의 보고) 제5조의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p> <p>전염병예방법 제3장 건강진단 제8조 (건강진단) 제9조 (건강진단등의 명령)</p> <p>전염병예방법 제4장 예방접종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제12조 (임시예방접종) 제13조 (예방접종의 권고) 제20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1조의3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p>

<p>2. 중간 공중보건대응 차원 (광역자치단체 차원)</p> <p>1) 보고된 사건의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 관리조치를 지원 또는 시행할 역량</p> <p>2) 보고된 사건을 즉각 평가하고 긴급사건일 경우 모든 필수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는 역량</p> <p>3. 국가 차원</p> <p>1) 48시간 내에 모든 긴급사건 보고를 평가할 역량</p> <p>2) WHO에 신고하여야 할 상황인 경우 IHR 국가대표기관을 통해 이를 즉시 신고할 역량</p>	<p>전염병예방법 제5장 예방시설</p> <p>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 광역자치단체 차원</p> <p>제25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응)</p> <p>전염병예방법 제6장 환자 및 방역조치</p> <p>제37조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p> <p>전염병예방법 제7장 예방조치</p> <p>제39조 (제1군전염병 예방조치) - 광역자치단체 차원</p> <p>제40조 (소독조치)</p> <p>제42조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광역자치단체 차원</p> <p>제43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p> <p>전염병예방법</p> <p>제7조의4 (역학조사) - 국가차원</p> <p>제7조의3 (전염병 발생감시) - 국가차원</p> <p>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장 질병관리본부</p> <p>전염병예방법</p> <p>[신설] 공중보건비상사태심의위원회의 설치</p> <p>[신설] IHR 국가대표기관 지정설치에 관한 사항</p> <p>[신설] IHR 국가대표기관의 기능</p> <p>제5조의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p>
--	---

<p>3) 질병의 국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신속히 결정할 역량</p> <p>4) 전문요원, 검체의 실험실 분석, 물자 등의 지원을 제공할 역량</p> <p>5) 지역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지원을 제공할 역량</p> <p>6) 신속하게 억제 및 관리조치를 승인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고위 보건관리 및 기타 관리와 직접적인 운영연결체계를 제공할 역량</p> <p>7) 다른 관련 정부부처와 직접적인 연락체계를 제공할 역량</p> <p>8) 당사국의 영토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수신한 정보 및 권고사항을 보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공항, 항만, 육상교차점, 연구소 및 기타 핵심업무처와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연결을 제공할 역량</p> <p>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학제/다부문 팀을 창설하는 것으로 포함한 국가 공중보건비상 대응계획을 수립·시행·유지할 역량</p> <p>10) 위 3)에서 9)의 사건을 24시간 제공할 역량</p>	<p>및 이동)</p> <p>제8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p> <p>[신설] 질병관리본부장이 관장하는 업무 조항에 상세히 기술</p> <p>제5조의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p> <p>[신설] 공중보건비상사태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p>
--	--

○ 국제보건규칙(2005)이 발효되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발생시 임시 권고안을 발동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일상적 또는 주기적으로 적용하는 지속 권고안을 발동할 수 있음.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

- (1) 특정 보건조치에 대한 권고는 없음.
- (2) 감염지역에서의 여행력(travel history) 심사
- (3) 의학적 검사와 실험실 분석의 증거 심사
- (4) 의학적 검사 요구
- (5)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법의 증거 심사
- (6)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조치 요구
- (7) 의심환자 대상 공중보건관찰(public health observation)
- (8) 의심환자에 대한 검역(quarantine) 및 기타 보건조치 실시
- (9) 필요한 경우 감염자 격리·치료 실시
- (10) 의심환자나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검사 실시
- (11) 의심환자나 감염자의 입국 거부
- (12)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의 입국 거부
- (13) 감염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한 출국심사 및 제한 실시

2.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소포우편물과 관련한 조치

- (1) 특정 보건조치에 대한 권고는 없음.
- (2) 적하목록과 운송경로 심사
- (3) 조사 실시
- (4) 감염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하여 출국·환승시 취하는 조치에 대한 증거 심사
- (5) 매개체와 병원소를 포함한 감염 또는 오염제거 조치의 실시
- (6) 격리 또는 검역 실시
- (7) 달리 이용 가능한 성공적인 절차가 없는 경우에 통제된 상황 아래에서 행하는 오염되거나 의심되는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의 압류 또는 파괴
- (8) 출·입국 거부

국제보건규칙(IHR)	현행 검역법	현행 전염병예방법
<p>제3부 권고안</p> <p>제15조 (임시권고안)</p> <p>제16조 (지속권고안)</p> <p>제17조 (권고안 기준)</p> <p>제18조 (사람,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소포우편물 관련 권고안)</p> <p>제4부 입국지점</p> <p>제19조 (일반적 의무사항)</p> <p>제20조 (공항과 항만)</p> <p>제21조 (육상교차점)</p> <p>제22조 (책임당국의 역할)</p>	<p>[신설] WHO 권고안에 의한 공중보건조치의 실시</p> <p><u>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u></p> <p><u>제35조의3 (국립검역소) → 검역소장의 관장사항을 향</u></p> <p><u>으로 명시</u></p> <p>제36조 (도보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1 외항선통보서 - 서식2 항공기도착통보서 - 서식2의2 열차자동차검역통보[신고]서 	

- 제19조는 입국지점의 핵심 역량 개발, 입국지점의 책임 당국 지정 및 입국지점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포함한 감염 또는 오염원 관련 자료를 세계보건지구에 제공하는 것을 각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핵심 역량을 갖춘 입국지점(공항, 항만, 육상교차점)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하여야 함.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 역량 요건	관련 법령
-----------------------------------	-------

<p>1. 항시 필요한 역량</p> <p>1) 병든 여행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진단시설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도를 제공할 역량</p> <p>2)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p> <p>3) 병든 여행자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p> <p>4) 화물 검사를 위한 숙련된 인력을 제공할 역량</p> <p>5) 식수원, 음식점, 항공기내식 관련 시설, 공중화장실, 적절한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타 잠재적 위험지역 등 입국지점의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조사사업을 시행할 역량</p> <p>6) 입국지점 내 또는 그 인근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위한 관리 사업과 숙련된 인력을 실천 가능한 한 제공할 역량</p>	<p>검역법</p> <p>제13조 (격리 또는 감시)</p> <p>제28조 (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p> <p>전염병예방법</p> <p>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p> <p>검역법</p> <p>[신설] 전염병격리치료시설로의 이동 등</p> <p>가축전염병예방법 등</p> <p>검역법</p> <p>제29조 (검역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p>
<p>2.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p> <p>1) 공중보건위기 대처 조정자와 적절한 입국지점, 공중보건 및 기타 기관의 접촉창구를 지명하는 것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역량</p> <p>2) 격리,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의료</p>	<p>검역법</p> <p>제13조 (격리 또는 감시)</p>

<p>및 수의과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염 여행자나 동물을 평가하고 돌볼 수 있는 역량</p> <p>3)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여행자와 분리하여 면접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역량</p> <p>4) 감염이 의심되는 여행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되도록 입국지점에서 떨어진 시설에서 건강격리할 수 있는 역량</p> <p>5)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을 살충, 구서, 살균, 오염제거 또는 기타 조치하기 위하여 권고 조치를 적용할 역량</p> <p>6)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출국 통제조치를 적용할 역량</p> <p>7)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수 있는 여행자의 이송을 위하여 특정히 지정된 장비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숙련된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p>	<p>제7조 (검역장소)</p> <p>제11조 (검역조치) 제1항 제7호 제29조 (검역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p> <p>[신설] 입국의 금지</p>
---	--

○ 제22조는 입국지점 책임 당국(검역소)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수하물 등에 대한 감염원·오염원 감시(monitoring)
- 입국지점 여행자 이용시설의 위생상태 유지
- 구서, 살균, 살충 소독 및 사람에 대한 위생조치 감독
- 운송수단 운영자에 대한 관리조치 의향 전달
- 운송수단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제거 및 안전한 처리에 대한 감독
- 국제 수로의 물을 오염시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방출 감

시 및 관리

- 여행자, 수하물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 예상치 못한 공중보건사건에 대비한 효과적인 비상 방안 보유
- IHR 국가대표기관과의 연락 유지

국제보건규칙(IHR)	현행 검역법	현행 전염병예방법
<p>제5부 공중보건조치</p> <p>제1장 일반 조항</p> <p>제23조 (출발과 도착 시 보건조치)</p> <p>제2장 운송수단과 운송수단 운영자에 관한 특별조항</p> <p>제24조 (운송수단 운영자)</p> <p>제25조 (경유 선박과 항공기)</p> <p>제26조 (경유 민간 화물차, 열차, 대형버스)</p> <p>제27조 (감염된 운송수단)</p> <p>제28조 (입국지점에서의 선박 또는 항공기)</p> <p>제29조 (입국지점의 민간 화물차, 열차, 대형버스)</p>	<p>제2장 검역조사</p> <p>제4조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p> <p>제5조 (군용운송수단)</p> <p>제6조 (검역통보)</p> <p>제7조 (검역장소) - 별표1 검역항별 검역장소</p> <p>제8조 (검역시간)</p> <p>제9조 (검역조사)</p> <p>제10조 (검역전의 승선 또는 탑승)</p> <p>제11조 (검역조치)</p> <p>제12조 (회항지시)</p> <p>제15조 (조건부검역해제)</p> <p>제16조 (수용장소내의 물건반출입금지)</p> <p>제17조 (감시의 해제)</p> <p>제18조 (요소독물건의 보관)</p> <p>제24조 (물품수입의 제한)</p> <p>제27조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p> <p>제29조 (검역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p>	

	제25조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37조 (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제38조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	--	--

-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입·출국 시에 여행자와 수하물 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보건조치의 종류와 함께 여행자에 대한 처우는 예의와 존중, 성별·사회·문화·민족·종교의 고려, 충분한 식량과 물·적절한 숙소와 의복·수하물을 비롯한 소지물의 보호, 적절한 의학적 조치,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조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국제보건규칙(IHR)	현행 검역법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3장 여행자에 관한 특별조항 제30조 (공중보건관찰대상 여행자) 제31조 (여행자 입국 관련 보건조치) 제32조 (여행자에 대한 처우) 제4장 상품,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적재지역에 관한 특별조항 제33조 (통과 상품) 제34조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적재지역)	[신설] 공중보건관찰대상 여행자에 대한 감시/검진의 요구색출검사의 실시 [신설] 예방접종 및 기타 예방조치 제13조 (격리 또는 감시) 제28조 (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	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입출국 시 취할 수 있는 보건조치	관련 법령
<p>1. 여행자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p> <p>1) 연락이 가능한 여행 목적지에 대한 정보 요구</p> <p>2) 감염이나 오염에 대한 접촉가능성 확인을 위한 여행 일정 관련 정보 요구</p> <p>3) 여행자의 건강증명서 요구</p> <p>4) 공중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의학적 검사 요구</p> <p>2. 수하물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p> <p>1) 수하물에 등에 대한 조사실시 (inspection)</p> <p>3. 운송수단 운영자에 대한 조치</p> <p>1) WHO가 권고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보건조치를 따르도록 요구</p> <p>2) 여행자에게 WHO가 권고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보건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p> <p>3) 운송수단을 매개체와 병원소를 포함한 감염원 또는 오염원이 없는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p> <p>4) 공중보건위험에 관한 증거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구서, 살균, 살충 소독 실시</p>	<p>검역법</p> <p>제9조 (검역조사)</p> <p>제11조 (검역조치)</p> <p>제9조 (검역조사) 제2항</p> <p>제11조 (검역조치) 제3항</p> <p>제11조 (검역조치) 제1항 제7호</p>

○ 보건문서의 종류와 서식

-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법 증명서
- 해항보건상태신고서
- 항공기종합신고서 보건부문

- 선박위생증명서

국제보건규칙(IHR)	현행 검역법	현행 전염병예방법
<p>제6부 보건문서</p> <p>제35조 (일반조항)</p> <p>제36조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조치 증명서)</p> <p>제37조 (보건상태신고서)</p> <p>제38조 (항공기종합신고서 중 보건부분)</p> <p>제39조 (선박위생증명서)</p>	<p>서식25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p> <p>서식3 보건상태신고서</p> <p>서식4 항공기종합신고서</p> <p>서식4의2 열차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p> <p>서식7 위생검사표</p> <p>[신설]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선박위생관리증명서</p> <p>제19조 (검역증의 교부)</p> <p>제20조 (가검역증)</p> <p>제21조 (회항명령)</p> <p>제22조 (무전검역)</p> <p>제26조 (취잡이소독증명서)</p>	

○ 입국지점의 책임당국이 실시하는 보건조치 중 다음에 대한 비용은 입시 또는 영구 거주를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제외하고는 청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보건조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단일 관세(one tariff)이어야 하고, 서비스의 실제 원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여행자의 국적, 거주지 또는 체류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최소 1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사항도 함께 기술).

(1) 모든 의학적 검사

(2) 여행자가 도착할 때 제공하는 예방접종 또는 기타 예방법(10일 전

에 비용을 공고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 (3) 여행자에 대한 적절한 격리 수용
- (4) 실시한 조치와 실시연월일을 명시하여 여행자에게 교부한 증명서
- (5) 여행자의 수하물에 적용한 보건조치

국제보건규칙(IHR)	현행 검역법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7부 비용 부담 제40조 (여행자에 관한 보건조치 비용부담) 제41조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비용 부담)	제14조 (비용부담) 제33조 (수수료의 징수) 제34조 (동전) 제35조 (동전)	

○ 국제보건규칙(2005)는 동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국가에서 WHO의 권고안과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자국의 법률로 추가적인 보건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각 국가와 WHO의 상호 협조의 의무,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등의 조항도 함께 담고 있음.

국제보건규칙(IHR)	현행 검역법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8부 일반 규칙 제42조 (보건조치의 시행) 제43조 (추가 보건조치) 제44조 (협력과 지원) 제45조 (개인정보의 취급) 제46조 (생물학적 물질, 시약, 진단용 물질 수송 및 처리)	[신설] 개인정보의 보호	제54조의6 (비밀누설금지)

제9부 전문가 명부, 비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제10부 종결 조항		
--	--	--

제2절 각국의 전염병 관리 현황

1. 법정전염병의 종류와 분류

가.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 분류의 역사

○ 현행 전염병 예방법은 전염병은 제1군에서 제4군 및 지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 기준은 제1군 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군 전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제3권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으로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제4군 전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 증후군, 재출현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정의하고 있음.

- 지정전염병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으로 정의되고 있음.

〈표 2〉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제1군전염병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제2군전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제3군전염병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AIDS	
제4군전염병	황열	덴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신종전염병증후군		
지정전염병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정황생포도상구균감염증		
	샤가스 병	광동주혈성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현행 전염병을 1954년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제정 법률은 전염병의 종류를 제1종 내지 제3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은 제1군 내지 제4군과 지정전염병 등 5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분류가 세분화되었음.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과 페스트는 제정 법률이나 현행 법률이나 제1군(제1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국가 개입이 가장 필요한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있음.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새로 제1군 전염병으로 추가된 반면, 재귀열과 아메바성이질은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되었음.
-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발진열,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과 두창은 제1종 전염병에서 제2군 내지 제4군 전염병으로 그 중요도가 낮아졌음.
- 제2군 전염병 중에서는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4종은 제정 법률부터 제2종 전염병으로 분류해왔던 것인 반면, 파

상풍, 풍진, B형 간염과 수두 등 4종은 신규로 지정되어 예방접종의 발전을 반영하였음.

- 제3군 전염병 중에서는 결핵, 한센병, 성병만 제정 법률부터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해온 것이며,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등이 제3군 전염병으로 추가되었음.

〈표 3〉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의 변화

분류기준		대상전염병			
제정 법률	현행 법률				
제1종	제2군	콜레라 세균성이질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미지정	제1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1종	미지정	재귀열	아메바성 이질		
제1종	제2군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제1종	제3군	발진티푸스	발진열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제1종	제4군	두창			
제2종	제2군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미지정	제2군	파상풍	풍진	B형간염	수두
제3종	제3군	결핵	한센병	성병	
미지정	제3군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레지오넬라증 브루셀라증	비브리오패혈증 탄저	공수병 AIDS

나. 일본의 법정 전염병

- 일본은 법정전염병은 제1류 내지 제5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류 전염병은 전염력이 아주 높고, 제1군 격리병원에 격리입원하여야 하는 전염병이고, 제2류 전염병은 전염력이 높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제2군 격리병원에 격리입원하는 전염병, 제3류 전염병은 전염력이 높지만 필요시에만 일반격리병원에 격리하는 전염병,

제4류와 제5류 전염병은 전염력이 낮고 필요시 일반 격리병원에 격리 입원하는 제4류는 즉시 신고하는 반면, 제5류는 7일 이내 신고하는 차이를 두고 있음.

<표 4> 일본의 법정 전염병

전염력	격리입원	대상전염병
제1류 ↑↑↑	제1군격리병원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에볼라출혈열, 랫사열, 마버그열, 페스트, SARS, 두창
제2류 ↑↑	제2군격리병원 (유증상자)	콜레라, 디프테리아, 파라티푸스, 폴리오, 이질, 장티푸스
제3류 ↑↑	일반격리병원 (필요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4류 ↑	일반격리병원 (필요시)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브루셀라증, B 바이러스병, 콕시디오마이코시스, 뎅기열, 에키노코커스증, 발진티푸스, 한타바이러스페증후군, 신중후군출혈열, A형간염, E형간염,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 일본뇌염, Jap. spotted fever, 레지오넬라증, 렙토스피라증, 라임병, 리사바이러스감염증, 앵무병, Q열, 공수병, 재귀열, 쯔쯔가무시증, 툴라레미아, 웨스트나일열, 황열
제5류 ↑	일반격리병원 (필요시)	AIDS, 급성뇌염, 아메바성이질, 선천성 루벨라 증후군, CJD,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전격성 연쇄상구균감염증, 지알디아증, 수막구균성수막염, 매독, 파상풍, VRE, VRSA, 바이러스성 간염

○ 일본의 법정전염병과 우리나라 법정전염병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일본은 각 군을 전염력과 격리입원의 방법으로 일관되게 분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1군과 제3군, 제4군은 방역대책의 수립 여부로 제2군 예방접종사업 대상 여부로 구분하는 등 기준에 일관성이 없음.

- 일본은 SARS 등 호흡기격리가 필요한 신종전염병은 제1류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전염병관리의 중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실제 중앙 정부의 정책은 호흡기격리가 필요한 신종전염병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법률의 중점은 아직도 수인성 전염병에 맞추어져 있는 괴리를 보이고 있음.

다. 중국의 법정 전염병

- 중국의 법정전염병은 Category A. B. C 등 세 가지로 나누는데 Category A는 성(省) 정부에서 관리하는 반면, Category B와 C는 성(省) 이하의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며, 각 군별 법정전염병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음.
 - 법에서 정한 전염병은 모든 지방 정부가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에서 추가로 관리 대상 전염병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표 5〉 중국의 법정 전염병

구분	대상 전염병
Category A	plague, cholera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avian influenza, anthrax, pulmonary tuberculosis, viral hepatitis, bacillary and amoebic dysentery, typhoid and paratyphoid fever, AIDS,
Category B	gonorrhoea, syphilis, poliomyelitis, measles, pertussis, diphtheria, cerebro-spinal meningitis, scarlet fever, epidemic haemorrhagic fever, rabies, leptospirosis, brucellosis, schistosomiasis, tetanus neonatorum, epidemic encephalitis-type B, malaria, dengue epidemic and endemic typhus fever, filariasis, echinococcosis, leprosy, influenza, mumps, rubella, acute haemorrhagic
Category C	conjunctivitis, visceral leishmaniasis, infectious diarrhoea (excluding cholera, bacillary and amoebic dysentery, typhoid and paratyphoid fevers).
Other Communicable Disease	Other communicable diseases than those listed above may be added to Categories B and C at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health authority attached to the State Council, if necessitated by outbreaks, the epidemiological situation, or the seriousness of diseases. Such amendments are to be made public.

출처: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ommunicable Diseases (Aug. 28, 2004)

라. EU의 법정 전염병

- EU는 법정전염병을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성을 매개로 전염되는 질환’, ‘바이러스성 간염’, ‘음식이나 수인성 매개 질환’, ‘특이 매개물 질환’, ‘공기 매개 전염 질환’, ‘동물원성 감염증’ 및 ‘심각한 유입성 질환’ 등 전파 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각 분류별 법정 전염병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6> EU의 법정 전염병

구분	대상 전염병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디프테리아, H. influenza group B 감염, 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폴리오, 풍진
성 매개 전염병	클리미디아, 임질, HIV감염, 매독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음식이나 수인성 매개 질환	보툴리즘독소증, 캄필로박터증, 크립토스포르디움증, 람플편모충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렙토스피라증, 리스테리아증, 살모넬라증, 세균성이질, 독소포자충증, 에르시니아증
특이매개물 전염질환	크로츠펠트-야콥병
공기매개 전염질환	레지오넬라증, 수막구균감염증, 결핵, 폐렴연쇄구균감염증
동물원성 감염증	브루셀라증, 포충증, 공수병
심각한 유입성 감염병	콜레라, 말라리아, 페스트, 유행성 출혈열

마. 말레이시아의 법정 전염병

- 말레이시아는 법정 전염병을 Part 1과 Part 2 등 단순히 2분류로만 나누고 있다. Part 1에는 여러 종류의 전염병이 규정되어 있는데, Part 2에는 HIV 감염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 7> 말레이시아의 법정 전염병

구분	대상전염병
Part 1	연성하감, 콜레라, 뎅귀열, 디프테리아, 이질, 식중독, 임질, 나병, 말라리아, 홍역, 페스트, 폴리오, 공수병, 재귀열, 매독, 파상풍,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바이러스 뇌염, 바이러스 간염, 발진티푸스, 백일해, 황열
Part 2	HIV 감염

출처: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ct 1998

바. 대만의 법정 전염병

- 대만의 법정전염병은 제1군(Category 1), 제2군(Category 2), 제3군(Category 3), 지정(Designated), 신종(New) 전염병과 같이 5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신고기간 또는 격리조치의 방법에 따른 분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신고기간과 격리조치는 군에 따라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표 8> 대만의 법정 전염병

구분	대상전염병	신고기간	격리조치
Category 1	cholera, plague, yellow fever, rabies, Ebola hemorrhagic fever, anthrax,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4시간 이내	항시 (강제)
Category 2	typhus fever, diphtheria, meningococcal meningitis, typhoid, paratyphoid, poliomyelitis, bacillary dysentery, amebic dysentery, dengue fever, malaria, measles, acute viral hepatitis A, enterohemorrhagic E coli (EHEC), enterovirus complicated severe case, Hanta virus syndrome	24시간 이내	필요시
Category 3	tuberculosis, Japanese encephalitis, leprosy, rubella, congenital rubella syndrome, pertussis, scarlet fever, tetanus, scrub typhus, acute viral hepatitis (except A), mumps, chickenpox, legionella, invasive hemophilus influenza b, syphilis, gonorrhea, serious complication of influenza	1주일 이내	필요시
Designated Communicable Diseases	known communicable diseases or syndrom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the preceding three subparagraphs that are deemed by the central competent authority necessary to be prevented and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are so announced	보건당국이 정하는 기간 내	보건당국의 명령
New Infectious Diseases	unknown emerging communicable diseases or syndromes whose symptoms or cure outcom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nown communicable diseases, and the central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that their epidemics can pose serious impact on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d control them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is so announced.	보건당국이 정하는 기간 내	보건당국의 명령

출처: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ct (Jan. 20, 2004)

바. 싱가포르의 법정 전염병

- 싱가폴은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전염병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검역을 요하는 위험전염병으로 페스트, 사스, 황열을 다시 별도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타 출입국자의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아동의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고지대상 전염병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표 9> 싱가포르의 법정 전염병

구분	대상전염병
1st Schedule Infectious Disease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Influenza, Chickenpox, Cholera, Dengue, Dengue Haemorrhagic Fever, Diphtheria, Encephalitis, Hand, foot and mouth diseas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Non-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Legionellosis, Leprosy, Malaria, Measles, Mumps, Nipah virus infection, Paratyphoid, Plague, Poliomyelitis, Rubella,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Typhoid, Tuberculosis, Venereal disease(Chancroid, Genital Herpes, Gonorrhoea, Non-gonococcal, urethritis, Syphilis), Viral Hepatitis, Yellow Fever
2nd Schedule Dangerous Infectious Diseases	Plagu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Yellow Fever.
3rd Schedule Vaccination of Persons Leaving or Arriving in Singapore	Yellow Fever
4th Schedule Disease Against Which a Child is to be Vaccinated	Diphtheria, Measles
5th Schedule Diseases in Respec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Which Acts Referred to in Section 21A are Prohibited	
6th Schedule	Disease in Respect of Which Information may be Disclosed by the Director to a Person to Enable him to take Steps to Take Prevent Spread of Disease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출처: Infectious Diseases Act (2003)

2. 예방접종

○ Jacobson v. Massachusetts 사건(1905년 2월 20일 판결)

- 이 사건은 미국에서 공중보건법학에 있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판결로서 매사추세츠 주의 캠브리지 시의 보건당국은 증가하는 천연두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1세 이상 모든 시 거주자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법령을 채택하였고,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5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Jacobson은 예방접종을 거부하였고, 이에 \$5 벌금이 부과되자, 법령은 정당한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고, 동등한 보호와 수정헌법 14조의 면제와 특권에 의거하여 천연두 예방접종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 Jacobson의 주장: 예방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해 강제적으로 구속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의 자유가 침해 받은 것이며, 강제 예방접종은 비합리적, 전제적, 가혹한 행위임.
- 법원의 판결: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헌법에 의해 절대적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절대적 자유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건, 정부가 규제가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선 또는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강제할 수 있음.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격이나 재산과 이익을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공중의 안전과 공공복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예방접종을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음.

○ Jacobson 법원에서 규정한 정부의 공중보건규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4가지 기준

- 공중보건 필요성(Public Health Necessity): 피할 수 있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에만 공중보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 합리적인 수단(Reasonable Means): 입법부의 목적이 확실하고 유익하다고 해도 채택되는 방법들은 공중보건 보호와 “실제적, 실질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권리의 분명하거나 명백한 침해”이어서는 아니 됨.
- 균형(Proportionality): 공중에게 과해지는 부담이 기대되는 이익에 비해 전부 불균형이라면 공중보건 규제는 위헌일 수 있음.
- 해악 회피(Harm Avoidance): 규제방법이 대상자에게 지나친 보건 위협을 취해서는 아니 됨.

3. 감시와 보고

○ 공중보건정보는 실제로 보건에 대한 위협을 확인하고, 감시하고, 예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건활동에 긴요하게 쓰이며, 이는 나아가 공중보건판단과 이를 토대로 행해지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함.

- 이렇게 공중보건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정보습득의 중요한 방법들 중 대표적으로 감시(surveillance)와 보고(reporting)를 들 수 있음.

가. 공중보건감시

- 세계 각국마다 공중보건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Systems or Sources for Disease Notification or Reporting in Various Countries	
Australia	CCH' 's <i>Australian Health and Medical Law Reporter</i>
Canada	<i>Disease Surveillance On-Line and Notifiable Diseases Monthly Reporter</i> ,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China	Centers for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Croati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ran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Surveillance
Malaysia	Report to the Medical Office of Health
New Zealand	Notifiable Diseases listed on the schedules to the Health Act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Center of the Health
England	Protection Agency
Korea	<i>Disweb</i> ,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USA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CDC)

나. 질병과 다른 건강 상태에 대한 강제적인 보고

- 뉴질랜드의 보고 대상 전염병
 - 뉴질랜드의 보고 대상 전염병은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분류가 됨
 - (1) 보건직공무원 및 지방 행정당국에 보고하여야 할 전염병
 - (2) 보건직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할 전염병
 - (3) 기타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Health Act)
Section A - Infectious diseases notifiable to Medical Officer of Health and local autho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ute gastroenteritis • Campylobacteriosis. • Cholera. • Cryptosporidiosis • Giardiasis • Hepatitis A. • Listeriosis • Meningoencephalitis - primary amoebic • Salmonellosis.
Section B - Infectious diseases notifiable to Medical Officer of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Anthrax. • Arboviral diseases • Brucellosis • Creutzfeldt Jakob Disease and other spongiform encephalopathies • Diphtheria • Haemophilus influenza b. • Hepatitis B • Hepatitis C. • Hepatitis (viral) not otherwise specified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including HPAI subtype H5N1). • Hydatid disease • Leprosy • Leptospirosis. • Malaria. • Measles • Mum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isseria meningitidis invasive disease. • Pertussis. • Plague. • Poliomyelitis • Rabies • Rheumatic fever • Rickettsial diseases • Rubella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Tetanus • Viral haemorrhagic fevers • Yellow fever
OTHER INFECTIOUS DISE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croid • Gonorrhoeal infection • Herpes simplex • Impetigo contagiosa • Influenza • Non-specific urethritis • Pediculosis • Scabies • Streptococcal infection Group A • Syphilis • Varicella-zoster infection • Venereal granuloma.

- 영국과 웨일즈의 보고 대상 전염병
 - 영국과 웨일즈의 보고 대상 전염병은 공중보건법과 공중보건(전염병)규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공중보건법에서는 이전의 국제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콜레라,

페스트 등을 포함한 몇 개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규칙에는 다수의 전염병예방 및 관리 대상이 되는 전염병을 군의 분류 없이 규정하고 있음.

<p>England and Wales Notifiable Diseases (Public Health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lera ■ plague ■ relapsing fever ■ smallpox ■ typhus <p>and under Section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poisoning
<p>England and Wales Notifiable Diseases (Public Health (Infectious Disease) Regul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ute encephalitis ■ acute poliomyelitis ■ anthrax ■ diphtheria ■ dysentery (amoebic or bacillary) ■ leprosy ■ leptospirosis ■ malaria ■ measles ■ meningitis ■ meningococcal septicaemia (without meningitis) ■ mumps ■ ophthalmia neonatorum ■ paratyphoid fever ■ rabies ■ rubella

- scarlet fever
- tetanus
- tuberculosis
- typhoid fever
- viral haemorrhagic fever (including dengue fever, ebola virus and lassa fever)
- viral hepatitis (A,B & C)
- whooping cough
- yellow fever

○ 미국의 보고 대상 전염병

- 미국의 경우에는 보고 대상 전염병이 61개로 특별한 군의 분류 없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질병통제센터에서 고시를 통해 발표됨.
-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종 전염병 또는 대상 전염병이 아닌 전염병 등이 출몰할 경우, 법의 개정이 필요 없이 국가기관의 행정시행의 목적으로 신속하게 보고를 강제할 수 있음.

Nationally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United States 2005			
1.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14.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O157:H7	26. Listeriosis	49. Syphilis
2. Anthrax	a.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O157:H7	27. Lyme disease	a. Syphilis, primary
3. Arboviral neuroinvasive and non-neuroinvasive diseases	b.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shiga toxin positive, serogroup non-O157	28. Malaria	b. Syphilis, secondary
a. California serogroup virus disease	c.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shiga toxin+ (not serogrouped)	29. Measles	c. Syphilis, latent
b.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disease		30. Meningococcal disease	d. Syphilis, early latent
c. Powassan virus disease		31. Mumps	e. Syphilis, late latent
		32. Pertussis	f. Syphilis, latent unknown duration
		33. Plague	g. Neurosyphilis
		34. Poliomyelitis, paralytic	h. Syphilis, late, nonneurological
		35. Psittacosis	50. Syphilis,
		36. Q Fever	
		37. Rabies	
		a. Rabies, animal	
		b. Rabies, hu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St. Louis encephalitis virus disease e. West Nile virus disease f.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disease 4. Botul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Botulism, foodborne b. Botulism, infant c. Botulism, other (wound & unspecified) 5. Brucellosis 6. Chancroid 7. Chlamydia trachomatis, genital infections 8. Cholera 9. Coccidioidomycosis 10. Cryptosporidiosis 11. Cyclosporiasis 12. Diphtheria 13. Ehrlichio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hrlichiosis, human granulocytic b. Ehrlichiosis, human monocytic c. Ehrlichiosis, human, other or unspecified ag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Giardiasis 16. Gonorrhea 17. Haemophilus influenzae, invasive disease 18. Hansen disease (leprosy) 19. Hantavirus pulmonary syndrome 20. Hemolytic uremic syndrome, postdiarrheal 21. Hepatitis, viral, ac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Hepatitis A, acute b. Hepatitis B, acute c. Hepatitis B virus, perinatal infection d. Hepatitis C, acute 22. Hepatitis, viral, Chron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Chronic Hepatitis B b. Hepatitis C Virus Infection (past or present) 23. HIV inf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HIV infection, adult (>=13 years) b. HIV infection, pediatric (<13 years) 24. Influenza-associated pediatric mortality 25. Legionello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38. Rocky Mountain spotted fever 39. Rubella 40. Rubella, congenital syndrome 41. Salmonellosis 4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associated Coronavirus (SARS-CoV) disease 43. Shigellosis 44. Smallpox 45. Streptococcal disease, invasive, Group A 46. Streptococcal toxicshock syndrome 47. Streptococcus pneumoniae, drug resistant, invasive disease 48. Streptococcus pneumoniae, invasive in children <5 ye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gen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yphilitic Stillbirth 51. Tetanus 52. Toxic-shock syndrome 53. Trichinellosis (Trichinosis) 54. Tuberculosis 55. Tularemia 56. Typhoid fever 57. Vancomycin - 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VISA) 58. Vancomycin -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VRSA) 59. Varicella (morbidity) 60. Varicella (deaths only) 61. Yellow fever
--	---	---	--

제3절 각국의 검역전염병 지정 현황

- 전염병예방 및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질병 뿐 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전염병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별도의 검역법에 검역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을 지정해 놓고 있음.
- 캐나다: 여행자의 이동이 교류가 많은 인근 지역인 남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출몰하는 다양한 출혈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911테러 이후 미국을 위협했던 탄저균으로 인한 생물학적 테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검역전염병에 탄저도 포함되어 있음.
 - 호주: 검역전염병을 사람과 선박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특징이며, 주로 동물 등을 매개로 하는 페스트와 황열은 선박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중국: 개정 전 국제보건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페스트, 콜레라, 황열 이외에도 천연두, 발진티푸스, 회귀열이 검역전염병에 포함되어 있음.

캐나다 (잠복기)	호 주	중 국 (잠복기)
활동성 폐결핵	<사람>	
탄저	콜레라	
아르헨티나 출혈열 (21일)	뎅기열	페스트 (6일)
볼리비아 출혈열 (21일)	디프테리아	콜레라 (5일)
보툴리누스증	이질	황열 (6일)
브라질 출혈열 (21일)	뇌염	천연두 (14일)
콜레라 (5일)	장염	발진티푸스 (14일)
크리미아-콩고 출혈열 (21일)	출혈열	회귀열 (8일)
디프테리아	A형 간염	
에볼라 출혈열 (21일)	인플루엔자	

<p>라싸 열 (21일)</p> <p>마르부르크 출혈열 (21일)</p> <p>홍역</p> <p>수막구균성 수막염</p> <p>수막구균혈증</p> <p>A형 유행성 독감 (10일)</p> <p>페스트 (6일)</p> <p>소아마비</p> <p>리프트 계곡 열</p> <p>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일)</p> <p>천연두 (14일)</p> <p>야토병</p> <p>장티푸스</p> <p>베네수엘라 출혈열 (21일)</p> <p>황열 (6일)</p>	<p>레지오넬라균병</p> <p>한센병</p> <p>말라리아</p> <p>홍역</p> <p>수막염</p> <p><선박></p> <p>파라티푸스 열</p> <p>백일해</p> <p>페스트</p> <p>폐렴</p> <p>폴리오</p> <p>공수병</p> <p>회귀열</p> <p>살모넬라증</p> <p>천연두</p> <p>결핵</p> <p>장티푸스</p> <p>발진티푸스</p> <p>황열</p>	
--	---	--

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이론적 분석

1. 전염병관리와 공중보건법학

○ 공중보건법의 정의

- 인구집단으로서의 국민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법적인 권력과 의무에 관한 학문
- 국민의 건강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 권한과 의무,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율성, 프라이버시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에 대한 한계성을 연구하는 학문.

○ 공중보건법의 다섯 가지 필수적인 특징

- 공중보건활동은 정부(Government)의 특별한 책임, 즉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
- 공중보건의 초점은 인구집단으로서의 국민 전체(Populations)의 건강에 있기 때문에, 의료의 초점인 질병 치료보다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중보건은 주 정부와 인구집단(국민) 사이의 관계(Relationships)를 다룸.
- 공중보건은 공중보건의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반을 둔 인구집단(국민)을 위한 서비스(Services)를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공중보건학(Public Health)에 기초를 둠.
- 공중보건은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보편적인 윤리적 자유주의에 의지하기 보다는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Coercion)을 갖게 됨.

○ 공중보건법에서 강제력의 역할과 개인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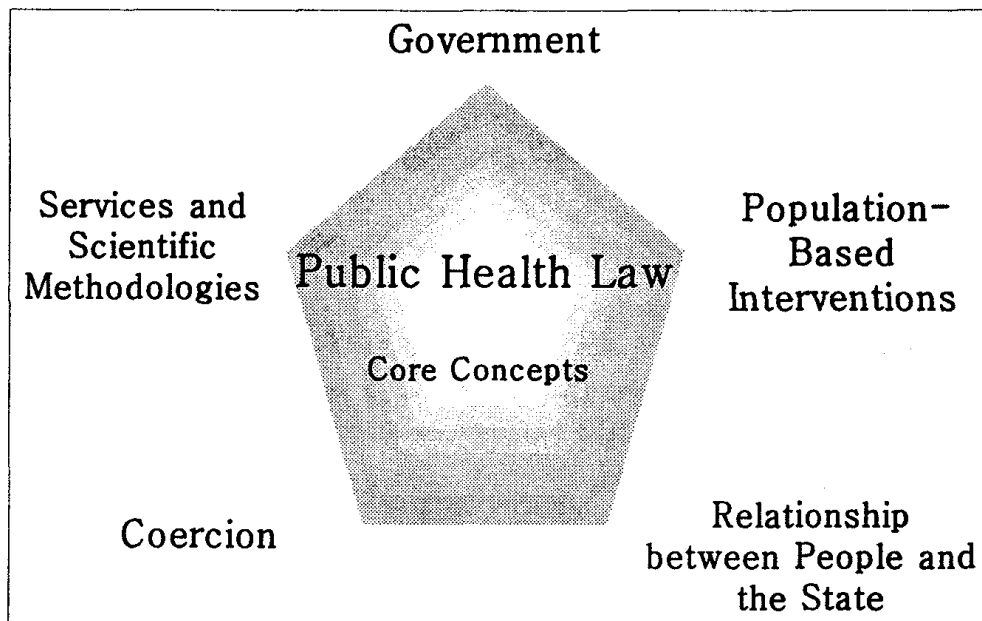
- 공중보건법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관련됨.
- 정부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반면, 설립된 행동 표준(지침)과 일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다양한 개인 활동의 제약 없이는 불가능 함.
-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들의 흥미를 위한 활동을 하지만, 그런 활동이 공동의 건강과 안전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음.
- 정부의 강제력 없이는 공중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쉽게 사라지지 않음.
- 정부는 역사적으로 공중보건의 이익을 위해 강제력을 사용해 왔으며 강제력은 때때로 명백한 사회적 위험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 공중보건은 지역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의 권리를 억제해 옴.
- 공중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헌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공중보건법의 지속된 문제임.
- 정부는 건강 향상을 위해 선출된 대표자로서 규정에 의해 강제되고, 이러한 규정들은 건강에 대한 위협들을 규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찰을 요구함.
- 반면에 정부는 공공의 안녕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범할 수 없음.

○ 공중보건법의 존재 근거

-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중요 방법 중에 하나임.
- 법률은 공중보건 당국의 미션 창조 및 기능의 할당 등을 창시함
- 법률은 건강한 행위를 위한 규범과 관련된 공중보건업무의 도구임.

○ 공중보건법학

- 건강한 인간과 관련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한 및 의무의 연구
- 자율성, 프라이버시, 자유, 소유 등을 구속하는 권한의 제한
- 공동체의 보건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인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
- 인구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제2절 전문가 워크샵을 통한 역량 평가 시행

- 원래 연구내용에는 없었던 국내 전염병관리 및 검역 체계에 대한 역량 평가를 연구내용에 추가해 달라는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었음.
- 이를 위해 6월 2일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 체계 개선방향 전문가 워크샵’에서 역량 평가 조사표를 만들어 조사 수행하였음.
- 역량평가의 설문 내용은 국제보건규칙(2005) 별표 1의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요건’과 ‘지정 공항, 항만, 육상교차점을 위한 핵심역량 요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시한 역량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권)의 핵심 역량 평가

1.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결과 분석

- 지난 6월 2일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선방향 전문가 워크샵’에서 실시한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평가 결과 총 11명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평가자는 보건소 관련 평가자, 광역자치단체 관련 평가자, 질병관리본부 평가자로 크게 3그룹으로 분류되었고 평가지수는 1점(매우 나쁨)부터 10점(매우 좋음)까지 분류하였음.
- 평가 분석 결과, 전체적인 핵심역량은 7.07로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 관련 평가자 그룹이 전체적인 핵심역량을

7.84로 평가하여 다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다고 평가하였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평가자 그룹은 각각 6.57과 5.87로 보통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각각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지역사회 차원 또는 일차적 공중보건대응 차원(보건소 차원)

- 지역사회 차원 또는 일차적 공중보건대응 차원에서의 핵심역량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7)으로 평가되었으나, 의료기관의 신고율의 저조 및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 및 확보 인력의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로 평가되었음.

나. 중간 공중보건대응 차원(광역자치단체 차원)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핵심역량은 보통인 편(6.13)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부분에서도 앞서 제기된 인력부족 문제 및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음. 특히, 긴급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인력 및 조직 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을 제기하였음.

다. 국가 차원(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 국가차원의 핵심역량은 좋은 편(7.25)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지역사회 차원 또는 일차적 공중보건대응 차원(보건소 차원)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핵심역량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조직과 인력의 편성이 대체적으로 잘 구성되어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다음의 사항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48시간 내에 모든 긴급사건을 보고를 평가할 국가의 역량과 관련하여 국가 표준 실험 및 진단 시설과 이와 관련된 능력이 부족함.

- 전문요원, 검체의 실험실 분석, 물자 등의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과 관련하여 인력 및 물자 등이 수적으로 부족함.
 - 신종전염병병원체에 대한 진단능력 강화와 관련된 전문요원의 교육 역량이 부족함.
 - 지역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으로만 편재되어 있어 현재의 수준으로는 비상상황 발생 시 파견할 인력에 대한 보충 방안이 부족함.
 - 다른 관련 정부부처와 직접적인 연락체계와 관련하여 부처 간 협력 체계는 구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계성 및 협조는 부족함.
 -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WHO에서 수신한 정보 및 권고사항을 보급하기 위한 민간 의료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수단이 부족함.
- 이 밖에도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학제/다부문 팀을 창설하는 것으로 포함한 국가공중보건비상 대응계획을 수립·시행·유지할 국가의 역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하였음.
- 또한 질병의 확산 및 예방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24시간 정보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의 지속적인 보완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함도 지적되었음.
- 전체적인 평가결과, 인력부족 및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결여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며, 긴급사건 발생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표 10>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결과 분석

질문내용	평균점수
관할 구역 내, 전역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 정도를 초과하는 정보의 질환 또는 사망을 동반한 사건을 탐지할 보건소의 역량	6.82
가능한 모든 필수 정보를 적절한 차원의 보건의료대응기관에게 즉각 보고할 보건소의 역량	6.82
초보적 관리조치를 즉각 시행할 보건소의 역량	7.36
보고된 사건의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 관리조치를 지원 또는 시행할 광역자치단체의 역량	6.18
보고된 사건을 즉각 평가하고, 긴급사건일 경우, 모든 필수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량	6.45
48시간 내에 모든 긴급사건을 보고를 평가할 국가의 역량	7.18
WHO에 신고하여야 할 상황인 경우 IHR 국가대표기관을 통해 이를 즉시 신고할 국가의 역량	7.64
질병의 국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신속히 결정할 국가의 역량	7.64
전문요원, 검체의 실험실 분석, 물자 등의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	7.18
지역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	7.09
신속하게 억제 및 관리조치를 승인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고위 보건관리 및 기타 관리와 직접적인 운영연결체계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	7.18
다른 관련 정부부처와 직접적인 연락체계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	7.18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WHO에서 수신한 정보 및 권고사항을 보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공항, 항만, 육상교차점, 연구소 및 기타 핵심업무처와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연결(네트워크)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	7.0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학제/다부문 팀을 창설하는 것으로 포함한 국가공중보건비상 대응계획을 수립·시행·유지할 국가의 역량	7.18
관련된 정보를 24시간 제공할 국가의 역량	7.09
전체평균	7.07

2.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 역량 평가 결과 분석

- 지난 6월 2일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선방향 전문가 워크숍’에서 실시한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 역량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평가에는 총 18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가자는 검역소 관련 평가자, 질병관리본부 평가자로 크게 2그룹으로 분류되었고 평가지수는 1점(매우 나쁨)부터 10점(매우 좋음)까지 분류하였음.
- 평가 분석 결과, 전체적인 핵심역량은 5.2로 보통인 편으로 평가되었으며 항시 필요한 역량은 5.3으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은 5.1로 보통인 편으로 평가되었으며, 각각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항시 필요한 역량

- 항시 필요한 역량 평가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인력, 관련 환경에 대한 조사사업 등으로 크게 3가지에 관하여 평가하였음.
- 접근성에 대한 역량 평가 결과 5.2로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해양검역소 시설 확보의 부족 및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대응 시설이 현격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현재와 같은 시설을 기준으로 집단 환자가 발생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이 힘들 것으로 사려 됨.
- 현재 갖춰진 후송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예방접종 이외의 진단, 치료, 이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부족한 자원 등

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 이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이 필요함.

- 인력에 대한 역량 평가 결과 5.2로 보통인 편으로 평가되었으며, 인력의 수적인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화물 검사에 대한 인력 제공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 이외에도 인력에 대한 권한 부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조사사업에 대한 역량 평가 결과 5.8로 보통인 편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또한 위에서 제기한 인력의 수적인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제기되었으며, 조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였음.

나.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은 5.7로 보통인 편으로 평가되었으나, 유관 기관과의 협의 부족 및 인력·예산 등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대응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하였음.
- 지역 의료 및 수의과 시설과의 협조체계와 관련된 감염자 및 동물 평가의 역량은 5.7로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감염자의 이송과 관련된 지역 의료와의 협조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동물에 대한 검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사람·동물·식물에 대한 검역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점검 및 총괄 기능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음.

- 시설에 대한 역량 평가 결과 5.1로 보통이 편으로 평가되었고, 음압시설이 갖춰진 공간뿐만 아니라 면접, 진단 및 일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음
- 권고 조치를 적용할 역량은 4.3으로 나쁜 편이며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앞에서 제기하였던 인력충원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여행자의 입·출국 관리를 적용할 역량은 4.9로 나쁜 편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및 공중보건비상사태종합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여행자의 이송과 관련한 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4.6으로 나쁜 편으로 평가되었으며, 장비에 대한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보유분에 관한 법제화를 지적하였고, 상시 대응과 관련한 중앙 차원의 모의 훈련 및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전체적인 평가결과, 인력부족 및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결여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본적인 체계 및 장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긴급사건 발생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표 11>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 역량 평가

질문내용	평균점수
병든 여행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진단시설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도를 제공할 역량	4.8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5.4
병든 여행자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5.3
화물 검사를 위한 숙련된 인력을 제공할 역량	4.5
식수원, 음식점, 항공기내식 관련 시설, 공중화장실, 적절한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타 잠재적 위험지역 등 입국지점의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조사사업을 시행할 역량	5.8
입국지점 내 또는 그 인근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위한 관리 사업과 숙련된 인력을 실천 가능한 한 제공할 역량	5.8
해당 입국지점의 조정자 및 접촉창구 지명, 공중보건 및 기타 기관과 서비스 등 공중보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 적절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할 역량	5.7
격리,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의료 및 수의과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 여행자나 동물을 평가하고 돌볼 역량	5.7
의심 또는 감염된 자와 면접하기 위하여 여행자로부터 떨어진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역량	5.1
평가 필요시 감염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여행자를 되도록 입국지점에서 떨어진 시설에 격리할 역량	5.1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구제, 구서, 소독, 오염제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고 조치를 적용할 역량	4.3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출국 관리(입출국 제한 등)를 적용할 역량	4.9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수 있는 여행자의 이송을 위하여 특정 장비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숙련된 인력(별도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4.6
전체평균	5.2

제3절 전염병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현행 전염병예방법 체계의 문제점

- 지금의 전염병예방법은 일제 시에 제정된 『전염병에 대한 총독부령 폐결핵예방에 관한 취체령』 등이 우리나라 사회 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우리나라 헌법에 입각한 법률을 제정키 위하여 1954년 『전염병예방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여 새로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18차례 개정되어 왔음.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제1조 목적)
 - 이 법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 또는 제2종, 제3종 전염병을 말함. (제2조 전염병의 예방)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의이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시하였을 때에는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종 제2종과 나병에 있어서는 즉시 그 환자 또는 사체소재지의 특별시장,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4조 의사의 신고와 보고)
 -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이법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함. (제11조 정기예방접종)
 - 전염병환자는 공중의 집합소 또는 기타전염병이 전파된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제31조)
 -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주무부, 특별시, 도에 방역관을 두도록 함. (제44조 방역관)
-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개정은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전염병 관리의 특성상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 왔지만, 이로 인해 전체적인 법안의 체계에 있어서의 정합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삭제 조항과 유사조항 등이 다수 남아 있음.

- 전염병예방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염병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을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전염병에 대한 이해의 증가로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전염병의 종류와 그 분류기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00년에 종전의 전염병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SARS 이후 변화된 상황이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고 있어, 전염병의 종류와 그 분류의 재검토가 필요함.

2. IHR 대표기관의 설치 및 지정

- 국제기구의 국내 활동에 관하여는 처음에 대통령령인 『한국유네스코 위원회설치령』이었던 것을 1963년 법률인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로 제정된 것이 있음.
 - 1950년 6월 14일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하고 1953년 7월 한국 유네스코가 설치된 이래 대한민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문화교류·국제간의 문화정보교환, 국제원조의 도입등 광범위한 업적을 이루어 왔으나 점차 활발하여지는 유네스코활동을 감안할 때 기존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령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선진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률로써 동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법률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유네스코활동을 하는 외에 국민에 의한 활동을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적 원조 등을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함.
 - ②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활동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도하에 국내의 교육·과학 및 문화계의 실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네스코

현장과 대한민국의 유네스코활동의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

③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건의·기획·조사·연락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장하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두도록 함.

⑦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의 국가간 전파를 방지하고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현장과 국제보건규칙(2005)에 근거한 IHR 대표기관을 설치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표기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 반면,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부분을 전염병예방법에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 질병관리본부를 IHR 국가대표기관으로 지정하고, 본부 내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과 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현재 권한의 위임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조항이 없이도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음.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요구하고 있는 IHR 국가 대표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그 역할을 전염병예방법 내의 조항 또는 별도의 법률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함.

- IHR 국가대표기관 지정·설치에 관한 사항

- IHR 국가대표기관의 기능

- 국제보건규칙(2005)에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국제보건기구의 요청에 의한 검증
 - WHO 권고안에 의한 공중보건조치의 실시
 - 국제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 국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평가하고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기관을 마련하도록 함.
-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공중보건조치에 있어 검역소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구분하고,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감시 및 대응체계와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3.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

- 전염병예방법의 개정방향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 중 가장 우선 고려하였던 것은 전체적인 법률의 구조와 체계를 바로잡는 것과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의 법정전염병의 군 분류의 타당성 및 개정방향에 관한 것이었음.
- 법률의 구조와 체계의 개선
 - 우선 제1장 총칙의 경우, 전염병예방법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유 제한 및 강제력 행사라는 공중보건법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가, 의료인, 국민에 대하여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였고, 특히 국가의 강제력 행사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보호의 측면에서도 검토하였음.

- 권한위임,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타 부처, 기관 등에 협력요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 전염병 예방 및 관리의 조치들을 신고와 보고, 감시 및 건강진단, 예방접종, 격리 및 방역조치, 예방조치로 나누어 각각의 조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법조항들을 정비하였음.

○ 전염병예방법 준 분류의 검토

-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 분류의 검토는 역학적인 측면에서라기 보다는 외국의 입법례 및 법률의 강제력 행사의 정도(격리, 보고, 치료 등)에 따라 검토하였음.
-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으나, 현 전염병예방법의 준 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였음.
- 다만 각 준마다 포함되는 질병의 종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역학 및 감염내과학 등의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가. 목 차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와 권리
제2장 신고와 보고의 의무	제6조 권한위임
제4조 의사등의 신고	제7조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제5조 기타 신고의무자	등

제5조의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제8조 협력요청
제6조 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	제2장 신고와 보고
제7조의2 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0조 의사 등의 신고
제7조의3 전염병 발생감시	제11조 기타 신고의무자
제7조의4 역학조사	제12조 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
제3장 건강진단	제13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
제8조 건강진단	제14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9조 건강진단 등의 명령	제15조 고위험병원체의 신고
제4장 예방접종	제3장 감시 및 건강진단
제10조 삭제	제16조 전염병 발생감시
제10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제17조 역학조사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제18조 건강진단
제12조 임시예방접종	제4장 예방접종
제13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19조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제14조 삭제	제2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15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제21조 정기예방접종
제16조 삭제	제22조 임시예방접종
제17조 삭제	제23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18조 삭제	제24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제19조 삭제	제25조 생물테러전염병 예방·치료의약품의 계획생산
제20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6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1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	제27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제21조의2 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	제28조 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
제21조의3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제29조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제22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등	제30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예방시설</p> <p>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제24조 삭제 제25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응 제26조 삭제 제27조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거절금지 제28조 예방시설의관리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격리 및 방역조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전염병관리시설</p> <p>제31조 전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등 제32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응 제33조 전염병환자 등의 입소거절금지 제34조 전염병관리시설의 관리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환자 및 방역조치</p> <p>제29조 격리환자 제30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수감중인 환자의 격리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38조 소독의무</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환자에 대한 조치</p> <p>제35조 전염병환자등의 격리 제36조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37조 수감 중인 환자의 격리 제38조 격리의 통보 등 제39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제40조 건강진단의 명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방역조치</p> <p>제41조 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42조 소독의무</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예방조치</p> <p>제39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제40조 소독조치 제40조의2 소독업무의 대행 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제40조의4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제40조의5 서류의 제출·검사 등 제40조의6 소독의 실시 등 제40조의7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제40조의8 영업의 정지명령 등 제40조의9 청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예방조치</p> <p>제43조 전염병예방조치 제44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제45조 소독조치 제46조 소독업무의 대행 제47조 소독업의 신고 제48조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49조 서류의 제출검사 등 제50조 소독의 실시 등 제51조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제52조 영업의 정지명령 등</p>

제41조 삭제 제42조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제8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제44조 방역관 제45조 검역위원 제46조 예방위원	제53조 청문 제7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제54조 방역관 제55조 검역위원 제56조 예방위원
--	---

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내용

(1) 총 칙

-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면서, 국제보건기구에 통보하여야 할 전염병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관리사업이 달라질 것을 예상하여 법정 전염병의 분류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두창(small pox), 야생 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한 폴리오, 신규 아형으로 인한 인체감염 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4종 전염병은 1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콜레라,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라싸, 마버그), 웨스트나일열 및 국가 또는 지역에서 특히 우려 대상이 되는 기타 전염병(댕기열, 리프트벨리열, 수막구균감염증 등)과 원인 또는 출처 미상의 사건을 포함한, 잠재적으로 국제공중보건상 우려사항이 될 수 있는 사건은 다음의 경우에 신고함.
- 일본, 중국, 유럽연합,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법을 살펴 본 결과 일본의 분류체계를 따르는 제1안과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의 국가 분류체계를 따르는 제2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기존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음.

- 일본의 분류체계: 전염력, 격리병원의 구분, 신고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제1류: 전염력이 아주 높고 제1군 격리병원에 격리입원하여야 하는 전염병
 - 제2류: 전염력이 높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제2군 격리병원에 격리입원하는 전염병
 - 제3류: 전염력이 높지만, 필요시에만 일반격리병원에 격리하는 전염병
 - 제4류: 전염력이 낮고 필요시 일반격리병원에 격리입원하는 전염병으로 즉시 신고
 - 제5류: 전염력이 낮고 필요시 일반격리병원에 격리입원하는 전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

- 일본 전염병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법정 전염병
 - 제2군전염병: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수두
 - 제3군전염병: 결핵, 한센병, 성홍열,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인플루엔자
 - 제4군전염병: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 그러나 일본의 전염병 분류에서 우리와 다른 점은 5류의 구분이 격리병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이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의 격리치료를 위한 유압시설의 유무와 관련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 지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의 적용에 제한이 있음.

- 또한 일본 전염병 분류에는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의 분류

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분류의 구분을 없애 버리는 것이 바람직할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임.

- 현행 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에서 정의하고 있던 “전염병 예방시설”을 제1항의 전염병분류에 따라 “전염병관리시설”로 용어를 바꾸어 제8항에 정의하였음.

제1안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p> <p>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p> <p>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p> <p>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 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p> <p>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p> <p>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력이 매우 높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제1군 전염병관리시설에 격리입원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p> <p>가. <u>크리미안콩고출혈열</u> 나. <u>에볼라출혈열 (현 제4군)</u> 다. <u>랏사열 (현 제4군)</u> 라. <u>마버그열 (현 제4군)</u> 마. <u>페스트 (현 제1군)</u> 바. <u>SARS (현 제4군)</u> 사. <u>두창 (현 제4군)</u></p> <p>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력이 높고 증상을 나타내는 자에 대해서만 제2군 전염병관리시설에 격리입원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p>

<p>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수두)</p> <p>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p> <p>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쯤쯤가무시증 타. 렘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중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p> <p>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p>	<p>가. 콜레라 (현 제1군) 나. 디프테리아 (현 제2군) 다. 파라티푸스 (현 제1군) 라. 폴리오 (현 제2군) 마. 이질 (현 제1군) 바. 장티푸스 (현 제1군)</p> <p>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력이 높지만 필요시에만 일반 전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p> <p>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현 제1군)</p> <p>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력이 낮고 필요시 일반 전염병관리시설에 격리입원 하는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 말한다.</p> <p>가. 탄저 (현 제3군) 나. 보툴리눔독소증 (현 제4군) 다. 브루셀라증 (현 제3군) 라. B바이러스병 마. 콜시디오마이코시스 바. 멧기열 (현 제4군) 사. 에키노코커스증 아. 발진티푸스 (현 제3군) 자. 한타바이러스페증후군 차. 신중후군출혈열 (현 제3군) 카. A형 간염 (현 제5군) 타. E형 간염 파.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 하. 일본뇌염 (현 제2군) 거. Jap. spotted fever 너. 레지오넬라증 (현 제3군)</p>
--	---

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수(인수)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더. 렙토스피리증 (현 제3군)

러. 라임병

머. 리사바이러스감염증

버. 말라리아 (현 제3군)

서. monkey pox

어.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저. 앵무병

처. Q 열

커. 공수병 (현 제3군)

터. 재귀열

피. 썩썩가무시증 (현 제3군)

허. 들라레미아

고. 웨스트나일열

노. 황열 (현 제4군)

5. “제5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력이 낮고 필요시 일반 격리병원에 격리입원 하며 7일 이내 신고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 말한다.

가. AIDS (현 제3군)

나. 급성뇌염

다. 아메바성이질

라. 선천성 루벨라 증후군

마. CJD (현 지정)

바. 크립토스포리디움증 (현 제4군)

사. 전격성 연쇄상구균감염증

야. 지알디아증

자. 수막구균성수막염 (현 제3군)

차. 매독 (현 제3군)

카. 파상풍 (현 제2군)

타. VRE

파. VRSA (현 지정)

<p>② “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p> <p>③ “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p> <p>④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병원체보유자”라 한다)라 함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⑤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 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p>	<p>하. 바이러스성 간염</p> <p>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7. “인수(인수)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p> <p>② “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10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p> <p>③ “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10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p> <p>④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병원체보유자”라 한다)라 함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⑤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 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p>
---	---

<p>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⑥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p> <p>⑦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⑥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p> <p>⑦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⑧ “전염병관리시설”이라 함은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요양기관을 말한다.</p>
---	--

- 다음은 일본, 중국, 유럽연합,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법을 살펴 본 결과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분류체계를 따르는 제2안임.
- 국가 내 주요 전염병 관리 대상이 될 만한 질환을 모두 법에 지정 한 후, 사업마다 해당 질병을 명시하는 방안이나, 이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제2안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p> <p>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p> <p>1. 콜레라</p>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페스트
- 다. 장티푸스
- 라. 파라티푸스
- 마. 세균성이질
-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 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 가. 디프테리아
- 나. 백일해
- 다. 파상풍
- 라. 홍역
- 마. 유행성이하선염
- 바. 풍진
- 사. 폴리오
- 아. B형간염
- 자. 일본뇌염
- 차. 수두(수두)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 가. 말라리아
- 나. 결핵
- 다. 한센병

- 2. 페스트
- 3. 장티푸스
- 4. 파라티푸스
- 5. 세균성이질
- 6.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7. 디프테리아
- 8. 백일해
- 9. 파상풍
- 10. 홍역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B형간염
- 15. 일본뇌염
- 16. 수두(수두)
- 17. 말라리아
- 18. 결핵
- 19. 한센병
- 20. 성병
- 21. 성홍열
- 22. 수막구균성수막염
- 23. 레지오넬라증
- 24. 비브리오패혈증
- 25. 발진티푸스
- 26. 발진열
- 27. 쯔쯔가무시증
- 28. 렙토스피리증
- 29. 브루셀라증
- 30. 탄저
- 31. 공수병
- 32.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p>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쯤쯤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p> <p>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중후군, 재출현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p> <p>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p> <p>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33. 인플루엔자 34.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35. 황열 36. 뎅기열 37. 마버그열 38. 에볼라열 39. 라싸열 40. 리슈마니아증 41. 바베시아증 42. 아프리카수면병 43. 크립토스포리디움증 44. 주혈흡충증 45. 요우스 46. 핀타 47. 두창 48. 보툴리눔독소증 49.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50.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51. 야토병 52. 큐열 53.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중후군</p> <p>②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	--

<p>7. “인수(인수)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p> <p>② “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p> <p>③ “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p> <p>④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병원체보유자”라 한다)라 함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⑤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 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⑥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p>	<p>③ “인수(인수)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p> <p>④ “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10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p> <p>⑤ “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10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p> <p>⑥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병원체보유자”라 한다)라 함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⑦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 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⑧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p>
---	---

<p>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p> <p>⑦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p> <p>⑨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⑩ “전염병관리시설”이라 함은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요양기관을 말한다.</p>
--	--

○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라고 하여 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염병 관리와 같이 인구집단 전체가 대상이 되는 공중보건상황에서 국가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갖는 책무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p>	<p>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 3.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6.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감시 7.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 3.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6.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감시 7.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확보
<p>③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4조의6 (비밀누설금지)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서 건강진단등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p> <p>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서 건강진단등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 국민의 책무와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타 신고자에 의한 신고, 격리, 검진, 감시 등에 관한 국민의 협조를 의무화하였음.
- 국민의 권리로서 전염병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국가의 시책에 대한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권리도 함께 명시하고 있음.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5조 (국민의 책무와 권리)

	<p>① 모든 국민은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주위를 기울이도록 노력하며, 전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전염병발생상황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전염병발생상황과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최대한 향유한다.</p>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업의 추진현황과 관련 사항들을 백서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7조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사·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부의 주요 전</p>

	<u>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추진상황과 전염병 발생 통계자료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	---

- 전염병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범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음.
 -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위의 사항 뿐 아니라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외에도 더 많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봄.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u>제8조 (협력요청)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u>

(2) 신고와 보고

- 제2장의 명칭을 “신고와 보고” 로 변경하고, 제4조부터 제7조의2까지 조항을 포함하되, 조항순서 및 체계를 조정하였음.

- 제1안은 앞의 전염병의 정의에서의 제1안을 따른 것으로 제2조의 전염병의 분류가 바뀌어 신고대상 질병, 신고기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제1안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4조 (의사등의 신고)</p> <p>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 (의사 등의 신고)</p> <p>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 환자 등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 환자 등·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3군·<u>제4군전염병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제5군전염병은 7일 이내</u>에 전염병 환자 등·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현행법에서는 신고기간은 즉시와 7일 이내로 두고 있으나, 국제보건규칙에서는 모든 전염병과 관련한 사례를 국가가 감시하도록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즉시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 제2조의 전염병의 정의에서 제2안일 경우에 해당됨.

제2안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4조 (의사등의 신고)</p> <p>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 (의사 등의 신고)</p> <p>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 환자 등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 환자 등·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u>즉시로 전염병 환자 등·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전염병환자 명부 작성 및 보관에 있어 현재 EDI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전염병 정보관리 프로그램』 이용하여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문서의 사용을 포함시키도록 수정하였음.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7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 보건소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 보건소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주기와 보건소장등의 보고주기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며, 신고 및 보고 주기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현 제도에서는 제3군전염병은 7일 이내 신고, 매주 보고토록 되어 있어, 발생에서 질병관리본부 보고시까지 최장 14일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관리 어려움이 있음.
 - 신고기간을 모든 법정전염병에 대하여 즉시 하도록 수정함.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7조의2 (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시 및 건강진단

- 제7조의3부터 제3장 건강진단의 제9조까지 포함하여 “감시” 라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였음.
-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항에 의료기관의 협조를 명시함.
- 전염병 발생 감시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도 가능함.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7조의3 (전염병 발생감시)</p> <p>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 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 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 관·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 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를 하게할 수 있다.</p> <p>③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시설·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되 는 전염병의 지정 및 표본감시의료기관 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감시 및 건강진단</p> <p>제16조 (전염병 발생감시)</p> <p>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 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 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 관·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 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를 하게할 수 있으며, <u>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③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중 국 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 관·시설·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되 는 전염병의 지정 및 표본감시의료기관 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법정전염병 발생 시 뿐만 아니라 국가공중보건위기 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함.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7조의4 (역학조사)</p> <p>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 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p> <p>③ 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역학조사)</p> <p>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u>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국민건강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p> <p>③ 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4) 예방접종

- 예방접종심의위원회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이 구분되므로 에 대한 사항을 분리하여 2개의 조로 나누어 규정하도록 함.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4장 예방접종	제4장 예방접종

<p>제10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법의학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 (예방접종심의위원회)</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u></p> <p><u>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u> <u>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 등의 심의</u> <u>3. 기타 필요한 사항</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법의학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54조의2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조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조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대상 질병 중 두창은 치명율(30% 이상) 높고 전파가 용이하며 적절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만이 유일한 수단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대응 시에 사용될 예방의약품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생산과 구매가 바로 이루어져 생물테러전염병으로 인해 국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25조 (생물테러전염병 예방·치료의약품의 계획생산)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26조 및 제26조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생물테러전염병 예방·치료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

(5) 격리 및 방역조치

- 제23조 제1항의 부분은 전염병예방시설의 정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명칭을 전염병 격리치료 및 예방까지 모두 포괄하는 시설이므로 “전염병관리시설”로 변경하였음.
 - 예방과 치료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전염병관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설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둬.
- 제1안의 전염병의 분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제1군, 제2군, 일반 전염병관리시설로 분류하여 제1안을 규정함.

제1안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5장 예방시설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1절 전염병관리시설
<p>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u>전염병예방시설</u>”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 (전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등)</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1. 제1군 전염병관리시설</p> <p>2. 제2군 전염병관리시설</p> <p>3. 일반 전염병관리시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u>전염병관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u>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u>전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 제2안은 현행 법과 같이 전염병관리시설의 구분 없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나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둠.

제2안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u>전염병예방시설</u>”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 (전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등)</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전염병관리시설</u>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u>전염병관리시설</u>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u>전염병관리시설</u>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5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응)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응할 수 있다.</p>	<p>제32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응)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동안 <u>전염병관리시설</u>로 대응할 수 있다.</p>
<p>제27조 (제1군전염병환자 등의 입소거절금지) 전염병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군전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p>	<p>제33조 (전염병환자 등의 입소거절금지) <u>전염병관리시설</u>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전염병환자</u> 등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p>
<p>제28조 (예방시설의 관리방법)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비와 관리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p>	<p>제34조 (전염병관리시설의 관리방법) <u>전염병관리시설</u>의 설비와 관리방법은 보건복지부</p>

정한다.	령으로 정한다.
------	----------

- 전염병환자의 분류와 관계없이 공중보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염병관리시설 등에 격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국가에게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둠.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6장 환자 및 방역조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2절 환자에 대한 조치
<p>제29조 (격리환자)</p> <p>① 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p> <p>④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 (전염병환자등의 격리)</p> <p>① 전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염병관리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p> <p>②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다루고 있는 전염병환자 이외에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 및 관리시설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격리를 요하는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항을 피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38조 (격리의 통보 등)</p> <p>①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격리수용한 때에는 그 사실을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통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는 제1군 전염병만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기타 법정 전염병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1군전염병에 국한되던 방역조치를 법정 전염병 전체로 확대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제37조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 	<p>제3절 방역조치</p> <p>제41조 (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

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	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
--	--

(6) 예방조치

○ 제1군전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조항이 현행 법 제39조와 제43조에 중복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39조에 관한 것은 제1군전염병 뿐 아니라 다른 법정 전염병에도 포괄적용하도록 하였음.

현행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예방조치</p> <p>제39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하는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예방조치</p> <p>제43조 (전염병예방조치)</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 예방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 기차, 자동차,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의 배치 또는 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유행기간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콜레라·페스트의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 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 기차, 자동차,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의 배치 또는 예방 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

<p>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p> <p>②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p>	<p>시키는 것</p> <p>②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p>
--	---

제4절 검역법의 개정방안

1. 현행 검역법 체계의 문제점

- 지금의 검역법은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해공항검역규칙(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이 폐지되고 1954년 해외로부터 전염병이 전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해공항에 내항하는 승객·승무원·선박·항공기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해공항검역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963년 이 법의 명칭을 검역법으로 바꾸어 개정한 후, 약 12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짐.
- 현재의 검역법은 일본의 검역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초기 제정 당시부터 항만 및 선박검역을 위주로 제정되었고, 이후 항공기, 도보검역 등이 추가되어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한 조항에 선박, 항공기, 여행자, 도보검역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검역기준의 혼동을 야기시킴.
- 현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 하에 국립검역소를 두고 있으므로 검역법 상 이루어지는 업무가 질병관리본부장의 소관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검역소장의 권한 및 한계의 범위가 미흡함.
- 다른 법과는 달리 제2조는 “검역전염병의 정의” 라고 규정되어 검역전염병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미비함.
 - 검역, 검역장소, 검역구역, 오염지역 또는 감염지역(위험지역), 매개동물, 검역대상운송수단 등

○ 의심, 감염환자의 격리 및 이송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2. 검역법의 개정방향

○ 기본적으로 검역의 관리 당국이 질병관리본부이며, 이에 대한 행정관리에 대한 구도가 나타나야 하며, 이와 함께 검역소장의 업무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임.

○ 각 검역소에게 재량으로 맡겨져 왔던 업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지역(감염지역)의 지정 등의 검역 업무

○ 다양해진 운송수단에 맞추어 각각의 검역조사 및 조치를 규정하여야 함.

- 선박, 항공기, 육로, 여행자 등

○ 검역조치 이외의 공중보건조치에 있어 검역소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구분하고,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감시 및 대응체계와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의심, 감염환자의 격리 및 이송 절차에 있어 검역소의 역량을 파악하여 담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기타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서식을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예시하고 있는 서식의 명칭 및 형식대로 국내 서식도 개정하여야 하며, 실제 통용될 수 있는 서식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법 증명서

- 해항보건상태신고서

- 항공기종합신고서 보건부문
- 선박위생증명서

3. 검역법 개정안

- 검역법의 경우에도 앞서 전염병예방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선 법률 전체의 구조와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음.
 - 검역법에는 총칙이 단지 목적 및 정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책무, 권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 검역조치에 관하여는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와 사람에 대한 조치를 나누어 규정하도록 하여, 검역업무가 법률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무엇보다도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지점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법률에 잘 표현될 뿐 아니라, 검역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가. 목 차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검역전염병의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삭제	제3조 (책무)
	제4조 (권한의 위임)
제2장 검역조사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 (군용운송수단)	제7조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조 (검역통보)	제8조 (검역조치)
제7조 (검역장소)	제9조 (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제8조 (검역시각)	
제9조 (검역조사)	제2장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제10조 (검역전의 승선 또는 탑승)	
제11조 (검역조치)	제10조 (검역조사)
제12조 (회항지시)	제11조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
제13조 (격리 또는 감시)	제12조 (군용운송수단)
제14조 (비용부담)	제13조 (검역통보)
제15조 (조건부검역해제)	제14조 (검역장소)
제16조 (수용장소내의 물건반출입금지)	제15조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제17조 (감시의 해제)	제16조 (검역시각)
제18조 (요소독물건의 보관)	제17조 (검역전의 승선 또는 탑승)
	제18조 (수용장소 내의 물건반출입금지)
제3장 검역증	제19조 (오염운송수단의 감시)
제19조 (검역증의 교부)	제20조 (요소독물건의 보관)
제20조 (가검역증)	
제21조 (회항명령)	제3장 사람에 대한 조치
제22조 (무전검역)	제21조 (공중보건조치)
제23조 삭제	제22조 (검역전염병환자 등의 격리)
	제23조 (검역전염병 감염의심자에 대한 감시)
제4장 물품수입에 관한 제한	제24조 (격리 및 감시의 통보 등)
제24조 (물품수입의 제한)	제25조 (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
	제26조 (입국의 금지)
제5장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제25조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4장 검역에 관한 기타 공중보건조치
제26조 (취잡이소독증명서)	제27조 (시체의 반입 및 검사)
	제28조 (소독의 명령 등)

<p>제27조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제28조 (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 제29조 (검역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검역관</p> <p>제30조 (검역관의 임용자격) 제31조 (검역관의 권한) 제32조 (검역관의 제복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실비의 징수등</p> <p>제33조 (수수료의 징수) 제34조 (동전) 제35조 (동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36조 (도보검역) 제37조 (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제38조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제38조의2 (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제38조의3 (권한의 위임)</p>	<p>제29조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30조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제31조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검역문서</p> <p>제32조 (검역증의 교부) 제33조 (가검역증) 제34조 (회항명령) 제35조 (전자검역) 제36조 (선박위생관리 및 면제 증명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검역관</p> <p>제37조 (검역관의 권한) 제38조 (검역관의 제복 등)</p>
--	---

나. 개정안의 내용

(1) 총 칙

- 현행 검역법의 제1조 목적에서 규정된 운송수단에 관한 사항을 정의에 규정하도록 하였고, 법 제36조의 도보검역을 목적에 포함시켜 검역대상을 확대시켰음.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 그 승객·승무원 또는 화물 및 도보로 입국하는 자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도보검역) 육로를 통해 도보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그 지참한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에 앞서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

- 기존의 검역전염병은 개정되기 전의 국제보건규칙을 반영하여 콜레라, 페스트, 황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신종 전염병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인근 주변 국가에 창궐하여 우리나라로의 전파 위험성을 크게 갖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역전염병에 포함시켜 검역조치를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제2조 (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콜레라·페스트·황열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 및 동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검역전염병</u>”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콜레라</u> 2. <u>페스트</u> 3. <u>황열</u> 4. <u>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u> 5. <u>조류인플루엔자</u> 6. <u>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u> ② “<u>운송수단</u>”이라 함은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③ “<u>전염병매개체</u>”라 함은 공중보건위험이 되는 감염성 물질을 주로 전달하는 쥐 또는 위생해충을 말한다. ④ “<u>오염지역</u>”이라 함은 제1항의 검역전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국제공중보건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	--

○ 검역조치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뿐만 아니라 국민도 전염병의 국내·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도록 의무를 두는 근거조항을 둬.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u>제3조 (책무)</u></p> <p>① 국가는 검역전염병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 권리</p>

	<p>를 보호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전염병의 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	---

- 남북한 출입국에 관련하여서도 전염병의 전파 또는 생물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 등의 목적으로 검역이 생략되지 못하도록 검역업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둔다.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역관리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전염병예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개인정보의 보호라 하여 신설함.
- 이 조항에 따라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가지는 자를 검역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 하여 의료인 뿐 아니라 국가 및 보건당국의 공무원 또는 기타 관련 종사자들에게까지 의무를 부여함.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오염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두도록 하여, 신종 전염병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제7조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검역조치의 대상에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도보로 입국하는 자를 추가하여 한 조항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법 제1항 제6호는 시행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치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음.

- 현행 법 제12조의 회항지시의 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함께 규정함.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11조 (검역조치)</p> <p>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운송수단, 그 승무원, 승객이나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송수단을 감시하는 것 2.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p>제8조 (검역조치)</p> <p>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운송수단, 그 승객승무원, 화물, 도보로 입국하는 자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송수단을 감시하는 것 2.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p>격리시키는 것</p> <p>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감시하는 것</p> <p>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는 것</p> <p>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p> <p>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화장하는 것</p> <p>7. 운송수단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안의 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에 소독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건물·물품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명하는 것</p> <p>8. 병원체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p> <p>9. 예방접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시행하는 것</p> <p>제12조 (회항지시) 제9조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에 있어서 당해 검역소로서는 적당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검역구역에 회항(이동을</p>	<p>격리시키는 것</p> <p>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감시하는 것</p> <p>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는 것</p> <p>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p> <p>6. 운송수단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안의 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에 소독을 하고 <u>전염병매개체를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건물·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명하는 것</u></p> <p>7. 병원체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p> <p>8. 예방접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시행하는 것</p> <p>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에 있어서 당해 검역소로서는 적당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u>검역장소에 회항(이동을 포함한다)</u>시킬 수 있다.</p>
---	---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2)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 검역조사가 각 운송수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두었으며, 도보로 입국하는 자도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모든 입출국 대상자들이 검역을 꼭 받도록 하는 하였음.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9조 (검역조사)</p> <p>① 검역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의 경과와 현황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3.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하물·식품·음료수 또는 선용품 4. 검역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의 유무 및 번식상태 <p>② 검역관은 제1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심문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장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p> <p>제10조 (검역조사)</p> <p>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u>검역조사를 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제2호를 제외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의 <u>경과 및 현황</u> 2. 운송수단의 <u>승객 및 승무원</u> 3. 운송수단의 <u>식품 및 화물</u> 4. 검역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u>전염병 매개체의 유무 및 번식상태</u> 5. <u>도보로 입국하는 자</u> <p>② 검역관은 제1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하여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모호하게 규정된 범조항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해 자구수정을 하였음.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4조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p> <p>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이 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외로 출발할 수 없다. 다만,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 2. 외국으로부터 출발하여 항행 또는 운행 중인 운송수단으로부터 사람을 승선 또는 탑승시켰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3. 삭제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유 또는 자재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1조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p> <p>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이 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u>받아야 한다</u>. 다만,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 2. 외국으로부터 출발하여 항행 또는 운행 중인 운송수단으로부터 사람을 승선 또는 탑승시켰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p>② 제1항에 의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u>운송수단은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외로 출발할 수 없다</u>.</p> <p>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유 또는 자재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 현행 법 제5조제2호에서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함.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5조 (군용운송수단) 내외국의 군용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이에 주재하는 군의가 다음의 각호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수단내에 검역전염병환자와 의사환자가 없다는 것 2.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었다는 것 3. 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가 없다는 것 	<p>제12조 (군용운송수단) 검역소장은 <u>군용운송수단에 근무하는 군의가 다음의 각호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u>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수단 내에 검역전염병환자와 의사환자가 없다는 것 2. 운송수단 내에 <u>전염병매개체가 없다는 것</u>

○ 모호하게 규정된 법조항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였음.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6조 (검역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장소에 접근하였을 때는 적의한 방법으로 당해 검역장소의 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에 관하여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제13조 (검역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u>운송수단이 검역장소에 접근하였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해 검역장소를 관할하는</u> 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에 관하여 통보를 하여야 한다.</p>

○ 격리와 감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본 조항은 실제로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고, 이를 삭제함.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15조 (조건부검역해제) ① 검역소장은 재검진 또는 재심문을 조건</p>	<p>(삭제)</p>

<p>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p>	
--	--

- 오염운송수단의 감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감시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둬.
- 현행법에서는 감시에 관한 업무를 법에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감시의 해제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어, 감시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든 후, 이에 대한 해제까지 한 조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음.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17조 (감시의 해제)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오염된 운송수단이 건전상태로 된 때에는 그 감시를 해제하여야 한다.</p> <p>제13조 (격리 또는 감시)</p> <p>⑤ 감시기간은 다음 각호의 1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콜레라 120시간 2. 페스트 144시간 3. 황열 144시간 4. 제2조제2호의 질환은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 	<p><u>제19조 (오염운송수단의 감시)</u></p> <p>① <u>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오염이 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감시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의 대상이 된 오염운송수단이 건전상태로 된 때에는 그 감시를 해제하여야 한다.</u></p> <p>③ <u>감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콜레라 5일</u> 2. <u>페스트 6일</u> 3. <u>황열 6일</u> 4. <u>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0일</u> 5. <u>조류인플루엔자 10일</u> 6. <u>제2조제6호의 질환은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u>

(3) 사람에 대한 조치

- 사람에 대한 조치를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검역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조치의 조항을 신설함.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u>제21조 (공중보건조치) 검역소장은 공중보건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외로 출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행지역에 관한 정보의 요구 2. 건강증명서 심사 3. 공중보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검사 또는 검진의 요구

- 검역전염병환자 등의 격리와 감시조치는 강제력 행사의 정도와 그 관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조항을 각각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음.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u>제13조 (격리 또는 감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검역소,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자가에 격리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 	<p><u>제22조 (검역전염병환자 등의 격리)</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환자 및 의사환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격리병사 또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자가에 격리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

<p>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격리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에 있어서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p> <p>④ 제3항의 격리기간중에는 피격리자는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p>	<p>조치(이송을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격리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에 있어서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p> <p>④ 제3항의 <u>격리기간</u> 중 피격리자는 검역소장의 <u>허가 없이</u>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p>
---	---

- 감염의심자에 대한 감시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심자에 대한 감시조치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특히 보건소와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u>제23조 (검역전염병 감염의심자에 대한 감시)</u></p> <p>① <u>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 감염이 의심되어 감시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국 후 거주 또는 체류하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 의심되는 검역전염병의 감시기간 동안 감염의심자의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한다.</u></p>

	<p>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함에 있어 감염의심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 현행 검역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격리 및 감시의 통보를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강제력 행사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음.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24조 (격리 및 감시의 통보 등)</p> <p>① 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격리수용한 때에는 그 사실을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검역소장은 감시를 요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피감시자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통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도 공중보건비상사태 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법에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 이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함.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제26조 (입국의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전염병환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검역에 관한 기타 공중보건조치

- 그 동안 검역업무에 있어 법적인 근거가 아니 지침에 의하여 행하여 오던 조치 중 하나인 시체의 반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 조항을 둬.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제24조 (물품수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하지 못한다. 4.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제27조 (시체의 반입 및 검사)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과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반입을 허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체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독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독의 명령에 불이행했을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11조 (검역조치)</p> <p>③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소독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8조 (소독의 명령 등)</p> <p>①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수단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내 시설·건물·물품 및 기타 장소에 소독을 하고 전염병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u>소독업무대행자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무대행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명령과 소독업무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5) 검역문서

- 가검역중의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출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20조 (가검역중)</p> <p>① 검역조사의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당해 조건을 명기한 가</p>	<p>제33조 (가검역중)</p> <p>① 검역조사의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당해 조건을 명기한 가</p>

<p>검역증을 교부한다.</p> <p>② 가검역증이 교부된 운송수단이 당해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가검역증을 거두고 검역증을 교부한다.</p>	<p>검역증을 교부한다.</p> <p>② 가검역증이 교부된 운송수단이 당해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가검역증을 <u>회수하고</u> 검역증을 교부한다.</p> <p>③ <u>검역소장은 제1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검역소장은 출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	--

- 기존에 무전으로 이루어지던 무전검역이 현재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전자검역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전산으로 접수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중에 확인된 경우 및 전자검역이 완료된 선박 중 필요한 경우에는 승선검역 및 기타 보건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둬.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22조 (무전검역)</p> <p>①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으로 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무전으로 접수한 선박,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등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입항전에 검역절차의 완료를 통보하고, 입항후에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무전으로 접수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검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의 절차</p>	<p>제35조 (전자검역)</p> <p>①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u>전산으로</u> 검역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선박, 그 <u>승객·승무원·화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u> 등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u>입항 전에</u> 검역절차의 완료를 통보하고, 입항 후에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으로 접수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및 전자검역이 완료된 선박 중 필요한 경우에는 승선검역 및 기타 보건위생관</u></p>

<p>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검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

- 기존의 쥐잡이소독증명서를 국제보건규칙(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박위생관리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대해 위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였음.

<p>현행 검역법</p>	<p>검역법 개정안</p>
<p>제26조 (쥐잡이소독증명서)</p> <p>① 검역소장은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쥐잡이 소독이 이행되었을 때에는 6월간 유효한 쥐잡이소독증명서를 교부한다.</p> <p>② 위생검사의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역소장은 6개월간 유효한 쥐잡이소독면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③ 선박이 그 선적지에 귀항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쥐잡이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제36조 (선박위생관리 및 면제 증명서)</p> <p>① 검역소장은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매개체에 대한 소독이 이행되어 이에 대한 증명서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6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증명서를 교부한다.</p> <p>②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의 결과 전염병매개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검역소장은 6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 교부한다.</p> <p>③ 선박이 그 선적지에 귀항할 때 또는 필수적인 조사나 관리조치를 항만에서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④ 검역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교부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소독 등 위생관리조치를 취해</p>

	야 한다.
--	-------

(6) 검역관

- 검역관의 임용자격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이 법에서는 삭제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이었음.
- 검역관이 승선하는 검역선과 검역차에는 검역 표식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역기를 다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함.

현행 검역법	검역법 개정안
<p>제30조 (검역관의 임용자격)</p> <p>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공무원을 둔다.</p> <p>②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써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 검역관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p> <p>③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삭제)
<p>제31조 (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p>	<p>제37조 (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p>
<p>제32조 (검역관의 제복등)</p> <p>①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은</p>	<p>제38조 (검역관의 제복 등)</p> <p>①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은</p>

<p>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복을 착용하며 또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검역관이 검역사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 또는 승차하는 검역선이나 검역차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기를 계양하여야 한다.</p>	<p>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복을 <u>착용</u>하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

4. 제도적 개선 방안

- 항만의 경우 여행목적으로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검역이 필요함.
 - 현재 여행목적의 여행자에게 검역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오염지역에서 여행한 후 비오염지역에서 운송수단을 타고 오는 여행자의 경우 전염병 등의 유입 가능성이 잔재함.
 - 따라서 운송수단 뿐 아니라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역관련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정기선박의 경우 무전 검역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
 - 정기선박이라 함은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을 항구에 정박하며, 수시로 국내외를 입출항하는 선박
 -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검역이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정기선박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기선박에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의 검역소에서 이슈로 삼고 있는

부분임.

- 통계표 등의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단어를 정의하고, 검역부분은 무전검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검역구역에 관련된 부분

- 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국 테러 이후 높아졌음.
 - ☞ 국내의 경우 검역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낮은 상태임.
 - ☞ 특히 항만에서는 검역구역을 확보하기도 힘든 실정임.
- 가장 이상적인 구역의 분할은 검역(Quarantine)→입국심사(Immigration)→세관검사(Customs) 순으로 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항만에도 공항과 동등한 검역구역을 설정하고, 검역대를 설치하여야 함.
 - ☞ 검역구역에는 열감지 카메라, 사진·문진 등이 가능한 간이 진료실, 규정된 검역대가 필요함.
 - ☞ 사진 및 문진이 가능한 간이 진료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 환기시설이 독립된 진료실이 필요함.
 - ☞ 격리병사도 두어야 할 것임.

○ 소독조치

- 소독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훈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령하고 있는 실정임.
- 무전검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쥐, 바퀴벌레 등 엄청난 양의 전염병매개체가 나옴.
- 가장 좋은 방법은 소독을 하는 경우에 모든 전염병매개체가 박멸이 되도록 하는 훈증소독이 유용함.
- 소독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실정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역 측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소독

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예방접종

- 비용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에 대한 가격 책정이 필요함.
- 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에 있어 예방접종지정기관(의료원 혹은 각 시도의 국·공립 병원 등)에서 콜레라, 황열, 예방접종 후 검역소 방문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중 불편의 해소 방안을 고려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검역소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격리 및 치료시설

- 전염병 유행 시 혹은 전염병 환자 치료 시, 각 병원 시설의 음압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수가의 차등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국립 치료 기관의 음압 시설 구축이 필요함.

○ 검역소의 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

- 숙련된 인력은 있으나, 인력은 부족함.
 - ☞ 현재 인력 부족으로 직접 현장 검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출된 결과시트지만을 참고하여 검역을 하고 있는 실정임.
 - ☞ 선박으로 이송되는 물품의 경우 전염병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검역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 생물테러전염관련 전문 인력 향상 및 교육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전염성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간 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함.

제 4 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각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규칙의 자발적 적용을 함에 있어 근거 자료 및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법률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염병관리 및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선진 전염병관리체계 및 검역체계의 수립방안과 관련 법령을 개정에 반영할 수 있음.

- 국내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제도 마련하고자 함.

- 전염병 등 공중보건상의 위기사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체계를 완전히 갖추게 됨.

- 일부의 연구 분야(전염병 분류 등)는 연구진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연구가 요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정 전염병의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역학 및 감염의학 전문가들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각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규칙의 자발적 적용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가능하며, 특히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및 입국지점의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 결과는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연구결과로서 완성되는 정책안을 시행하고 법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 및 토대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함.
- 연구결과로서 완성되는 정책안을 시행하고 법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 및 토대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함.
-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의 향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 관련 수행되어야할 연구과제를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5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2005.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5년 전염병관리사업지침. 2005.
- 국립보건원. 사스(SARS) 관리지침. 2003.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지침. 2004.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업무 안내. 2005.
-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Power, Duty, Restrai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and Eth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이덕형, 박기동. “국제보건규칙의 개정과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 개선의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8월호. 2005.
- 이덕형, 박기동.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예방의학회지. 제38권 48호. 2005.
- 박기동. “전염병예방법 국제비교 연구 - 신고대상전염병의 종류와 분류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5.
- 황창용 외. “전염병관리 관련 법령의 변화추이 분석 및 향후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1997.
- Allen kachalia, Niteesh K., Choudhry, David M. Studdert. Physician Responses to the Malpractice Crisis: From Defense to Offense.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146-428
- Bethany J. Spielman. Bioethics Testimony: Untangling the Standards and Testing their Reliability.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 33(3): 222-233
- Bonnie Steinbock. Payment for Egg Donation and Surrogacy. The Mount Sinal Journal of Medicine 2004;71(4):255-265
- Daniel M. Fox. Populations and the Law: The Changing Scope of

- health Policy.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3;31(4):607-614
- Daniel Markovits. Quarantines and Distributive Justice.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2):323-344
 - Daniel W. Fitzgerald, Angela Wasunna. Away from Exploitation and Towards Engagement: An Ethical Compass for Medical Researchers Working in Resource-Poor Countries.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 559-565
 - Davide B Resnik. regulating the Market for Human Eggs. *Bioethics* 2001;15:1-25
 - Dean M. Harris, Shien-Chang Wu. Medical Malpracti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2002 Regulation on the Handling of Medical Accidents.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456-477
 - Fiona Tito Wheatland. Medical Indemnity Reform in Australia: "First Do No Harm".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429-443
 - James C., Mohr, PhD. America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n Hospital Perspective. *JAMA* 2000;13:1731-1737
 - Kathleen Cranley Glass, Duff Waring. The Physician/ Investigator's Obligation to Patients Participating in Research: The Case of Placebo Controlled Trials.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575-585
 - Kay Wheat. Is there Medical Malpractice Crisis in the UK?.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444-455
 - Kazue Nakajima, Catherine Keyes, Tatsuo Kuroyanagi, Kozo Tatara. Medical Malpractice and Legal Resolution System in Japan. *JAMA* 2001; 285(12): 1632-1640
 - Lawrence J. Nelson. Is there any Indication for Ethics Evidence? An Argument for the Admissibility of some Expert Bioethics Testimony.

-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248-263
- Matthew Weed. Ethics, Regulation, and Biomedical Research.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2004;14(4):361-368
 - Paul C. Giannelli. Forensic Science.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535-544
 - Paul Litton, Franklin G. Miller. A Normative Justification for Distinguishing the Ethics of Clinical Research from the Ethics of Medical Care.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566-574
 - Robert Steinbrook. Science, Politics, and Federal Advisory Committee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4;350(14):1454-1460
 - Robin Williams and Paul Johnson. Inclusiveness, Effectiveness and Intrusiveness: Issues in the Developing Uses of DNA Profiling in Support of Criminal Investigations.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545-558
 - Ronald Cranford. Facts, Lies, and Videotapes: The Permanent Vegetative State and the sad Case of Terri Schiavo.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2):363-371
 - Solomon R. Benatar. Towards Progress in Resolving Dilemmas in International Research Ethics.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3):574-582
 - Stephen J. Zienbler.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Criminal Prosecution: Are Physicians at Risk?.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5;33(2): 349-358

[부록 1]

일본 전염병 예방법(1999년)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기본 지침등(제9조-제11조)

제3장 감염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표(제12조-제16조)

제4장 건강진단, 취업 제한 및 입원(제17조-제26조)

제5장 소독 그 외의 조치(제27조-제36조)

제6장 의료(제37조-제44조)

제7장 신감염증(제45조-제53조)

제8장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조치(제54조-제56조)

제9장 비용부담(제57조-제63조)

제10장 잡칙(제64조-제66조)

제11장 벌칙(제67조-제69조)

전문

인류는 지금까지 질병, 특히 감염증에 의해 막대한 고난을 경험해 왔다. 페스트, 두그렇게, 콜레라 등의 감염증의 유행은 가끔 문명을 존망의 위기에 쫓아버려, 감염증을 근절하는 것은 정말로 인류의 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의학 의료의 진보나 위생 수준의 현저한 향상에 의해, 많은 감염증이 극복되어왔지만, 새로운 감염증의 출현이나 기존의 감염증의 재흥에 의해, 또 국제 교류의 진정 등에 수반해 감염증은 새로운 형태로 지금 더 인류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과거에 문둥병,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 등의 감염증의 환자 등에 대한 까닭이 없는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것을 교훈으로서 향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염증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나 감염증의 환자 등이 높아져 온 상황을 근거로 해 감염증의 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양질이고 적절한 의료의 제공을 확보해, 감염증에 신속하고 정확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시점에 서서, 지금까지의 감염증의 예방에 관한 시책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해,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계되어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 및 그 만연의 방지를 도모해 따라서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감염증의 발생의 예방 및 그 만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해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시책은, 보건의료를 둘러싸는 환경의 변화, 국제 교류의 진전 등에 즉응해, 신감염증 그 외의 감염증에 신속하고 정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증의 환자 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을 깊게 인식해, 이러한 사람의 인권에게 배려하면서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한 감염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 감염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 감염증에 관한 연구의 추진, 감염증의 병원체 등의 검사 능력의 향상 및 감염증의 예방과 관련되는 인재의 양성 및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감염증의 환자가 양질이고 적절한 의료를 받

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는 감염증의 환자 등의 인권 보호에 배려해야 한다.

2.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는 감염증의 예방에 관한 시책이 종합적인 동시에 신속히 실시 되도록 서로 제휴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나라는 감염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연구 및 감염증과 관련되는 의료를 위한 의약품의 연구개발의 추진, 감염증의 병원체 등의 검사의 실시 등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해, 국제적인 제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2항의 책무가 충분히 완수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원조를 주는 것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감염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 그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감염증의 환자 등의 인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의사 등의 책무)

1. 의사 그 외의 의료 관계자는 감염증의 예방에 관계되어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시책에 협력해 그 예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감염증의 환자 등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깊게 인식해, 양질이고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병원, 진료소, 노인 복지 시설 등의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감염증이 발생 또는 만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조 (정의)

1. 이 법률에 대해 「감염증」이란, 동류 감염증, 2류 감염증, 3류 감염증, 4류 감염증, 지정 감염증 및 신감염증을 말한다.
2. 이 법률에 대해 「동류 감염증」이란, 에볼라 출혈열, 크리미아콩고 출혈열, 페스트, 마르부르그병 및 라사열을 말한다.
3. 이 법률에 대해 「2류 감염증」이란, 급성회백골수염, 콜레라, 세균성 이질,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및 패러티푸스를 말한다.

4. 이 법률에 대해 「3류 감염증」이란, 장관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말한다.
5. 이 법률에 대해 「4류 감염증」이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간염, 황열, Q열, 광견병, 크립토포리지움증,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 성기 chlamydia infection, 매독, 홍역, 말라리아, 메치시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증 그 외의 이미 알려져 있는 감염성의 질병이며,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이 법률에 대해 「지정 감염증」이란, 이미 알려져 있는 감염성의 질병(동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및 3류 감염증을 제외하다.)에서 만나며, 제3장으로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이 법률에 대해 「신감염증」이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한다고 인정되는 질병이며, 이미 알려져 있는 감염성의 질병과 그 병상 또는 치료의 결과가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해당 질병 가쓰타 경위의 병상의 정도가 시게아츠이며, 한편 해당 질병의 만연에 의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8. 이 법률에 대해 「의사증 환자」란, 감염증의 의사증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이 법률에 대해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란,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해당 감염증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말한다.
10. 이 법률에 대해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란,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및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을 말한다.
11. 이 법률에 대해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란,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및 제2종 감염증 지정의료 기관을 말한다.
12. 이 법률에 대해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란, 동류 감염증 또는 2류 감염증의 환자의 입원을 담당시키는 의료 기관으로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13. 이 법률에 대해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란, 2류 감염증의 환자의 입원을 담당시키는 의료 기관으로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제7조 (지정 감염증에 대한 이 법률의 준용)

1. 지정 감염증에 대해서는 일 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정해, 정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다음조 제3장으로부터 제6장까지 및 제8장으로부터 제10장까지의 규정의 정부 또는 일부를 준용한다.
2. 전항의 정령으로 정해진 기간은 해당 정령으로 정해진 질병에 대해 동항의 정령에 의해 준용하는 것으로 된 규정을 해당 기간의 경과 후 더 준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 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다.
3. 후생 장관은 전 2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공중위생 심의회 의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조 (의사증 환자 및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1. 동류 감염증의 의사증 환자 또는 2류 감염증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의사증 환자에 대해서는 각각 동류 감염증의 환자 또는 2류 감염증의 환자로 간주하고,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동류 감염증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에 대해서는 동류 감염증의 환자로 간주하고,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기본 지침 등

제9조 (기본 지침)

1. 후생 장관은 감염증의 예방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하 「기본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기본 지침은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감염증의 예방의 추진의 기본적인 방향
 - (2) 감염증의 발생의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3) 감염증의 만연의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4) 감염증과 관련되는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확보에 관한 사항
 - (5) 감염증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6) 감염증과 관련되는 의료를 위한 의약품의 연구 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감염증의 병원체 등의 검사의 실시 체제 및 검사 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 (8) 감염증의 예방에 관한 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 (9) 감염증에 관한 계방 및 지식의 보급 및 감염증의 환자 등의 인권의 배려에 관한 사항
- (10) 긴급 시에 있어서의 나라와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공공단체 상호간의 연락 체제에 관한 사항
- (11) 그 외 감염증의 예방의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 3. 후생 장관은 적어도 5년마다 기본 지침에 재검토를 더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 4. 후생 장관은 기본 지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협의하는 것과 동시에 공중위생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5. 후생 장관은 기본 지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고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제10조 (예방 계획)

- 1. 도도부현은 기본 지침에 입각해서 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하 이조에 대해 「예방 계획」 이라고 한다.)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예방 계획은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감염증의 발생의 예방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2) 지역에 있어서의 감염증과 관련되는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확보에 관한 사항
 - (3) 긴급 시에 있어서의 나라와의 제휴 및 지방공공단체 상호간의 연락 체제의 확보에 관한 사항
 - (4) 감염증에 관한 연구의 추진, 인재의 양성, 지식의 보급 그 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
- 3. 도도부현은 기본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예방 계획에 재검토를 더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 4. 도도부현은 예방 계획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시읍면 및 진료에 관한 학식 경험자의 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5. 도도부현은 예방 계획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후생 장관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특정 감염증 예방 지침)

1. 후생장관은 감염증 가운데 특히 종합적으로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감염증과 관련되는 원인의 구명, 발생의 예방 및 만연의 방지, 의료의 제공, 연구 개발의 추진, 국제적인 제휴 그 외 해당 감염증에 응한 예방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다음 방향에 대해 「특정 감염증 예방 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2. 후생 장관은 특정 감염증 예방 지침을 작성해 또는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공중위생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장 감염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표

제12조 (의사의 신고)

1. 의사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람을 진단했을 때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즉시/ 이름, 연령, 성별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7일 이내/ 연령, 성별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처의 보건소장을 경유해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1류 감염증의 환자,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환자 또는 무증상 보균자 및 신가염 증으로 의심되는 사람
 - (2) 4류 감염증 가운데 AIDS, 매독, 말라리아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환자(AIDS, 매독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감염증의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를 포함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는 동항 제1호로 내거는 사람과 관련 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동항 제2호로 내거는 사람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후생 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신고의 내용을 후생 장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그 관할하는 구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는 해당신고의 내용을 그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4. 전 3항의 규정은 의사가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감염증에 의해 사망한 사람(해당 감염증에 의해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시체를 검안했을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제13조 (수의사의 신고)

1. 수의사는 에볼라 출혈열, 마르부르그병 그 외의 동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 정령으로 정하는 감염증마다 해당 감염증을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원숭이 그 외의 동물에 대해서, 해당 동물이 해당 감염증에 걸려, 또는 걸려 있는 혐의가 있다고 진단했을 때는 즉시, 해당 동물의 소유자(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람. 이하 이조에 대해 같다.)의 이름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처의 보건소장을 경유해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하고 해당 동물의 동향의 정령으로 정하는 감염증에 걸려, 또는 걸려 있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동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는 즉시, 해당 신고의 내용을 후생 장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그 관할하는 구역 외에 있어 사육되고 있던 동물에 대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는, 해당 신고의 내용을, 해당 동물이 사육되고 있던 장소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5. 제1항 및 전 2항의 규정은 수의사가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시체에 대해 해당 동물이 동향의 정령으로 정하는 감염증에 걸려, 또는 걸려 있던 혐의가 있으면 검안했을 경우에 대해서, 전 3항의 규정은 소유자가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시체에 대해 해당 동물이 동향의 정령으로 정하는 감염증에 걸려, 또는 걸려 있던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대해 준용 한다.

제14조 (감염증의 발생의 상항 및 동향의 파악)

1.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개설자의 동의를 얻고, 4류 감염증 중 후생성령으로 정한 것의 발생상황 신고를 담당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이하 이 조에 대해 「지정 신고 기관」 이라고 한다.)을 지정한다.
2. 지정 신고 기관의 관리자는 해당 지정 신고 기관의 의사가 전 항의 후생성령으로 정

하는 4류 감염증의 환자(후생성령으로 정하는 4류 감염증의 무증상 보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 같다.)를 진단해, 또는 전항의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4류 감염증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검안했을 때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데 보다, 해당 환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연령, 성별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정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해당 신고의 내용을 후생 장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지정 신고 기관은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마련하고 그 지정을 사퇴할 수 있다.
5.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신고 기관의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도는 지정 신고 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담당하는 데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르렀을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감염증의 발생의 상황, 동향 및 원인의 조사)

1. 도도부현 지사는 감염증의 발생의 상황, 동향 및 원인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직원에게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3류 감염증 혹은 4류 감염증의 환자, 의사증 환자 및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도는 신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외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3류 감염증 혹은 4류 감염증의 환자, 의사증 환자 및 무증상 보균자 또는 신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외 관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필요한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해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해야 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된 질문 또는 필요한 조사의 결과를 후생 장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후생 장관에게 감염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의 파견 그 외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3항의 규정은 정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된 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7. 제3항의 증명서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후생성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정보의 공표)

1. 후생장관 및 도도부현 지사는 제12조로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수집한 감염증에 관한 정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 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2. 전항의 정보를 공표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제4장 건강진단

제17조 (건강진단)

1.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인정될 때는 해당 감염증이 의심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해당 감염증에 걸려 있는지 어떤지에 관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람이 해당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해당 권고와 관련되는 감염증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해당 직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건강진단의 권고,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건강진단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동시에 해당 권고를 해서 해당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건강진단의 권고, 또는 건강진단의 조치를 실시해야 할 박두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건강진단의 권고 또는 조치 뒤, 상당한 기간 내에 동항의 이유 그 외의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 (취업 제한)

1.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의 환자 및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환자 또는 무증상 보균자와 관련 되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해, 해당 신고의 내용 그 외의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

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환자 및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또는 그 보호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감염증을 유행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로 후생성령으로 정한 업무에 그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으로 감염증보다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전항의 규정의 적용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동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동항의 대상자는 아니게 된 것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 동항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되는 감염증의 환자 혹은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가 아닌지 어떤지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제19조 (입원)

1. 도도부현 지사는 동류 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감염증의 환자에 대해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혹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입원해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해 해당 환자를 입원시켜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 그 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혹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병원 혹은 진료소에서 만나며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적당으로 인정하는 것에 입원해 또는 해당 환자를 입원시켜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람이 해당 권고에 다르지 않을 때는 해당 권고와 관련되는 환자를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동항 다만 책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다르지 않을 때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혹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만나며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적당으로 인정하는 것에 입원시킬 수 있다.
3. 전 2항의 규정과 관련되는 입원의 기간은 7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긴급 그 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해당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또는 진료소 이외

의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만나며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적당으로 인정하는 것에 입원 시킬 수 있다.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과 관련되는 입원의 기간과 전항의 규정과 관련되는 입원의 기간을 합산 한 기간은 7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20조

1.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감염증의 환자이며 전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혹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입원해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해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환자를 입원시켜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 그 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혹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병원 혹은 진료소에서 만나며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적당으로 인정하는 것에 입원해 도는 해당 환자를 입원시켜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람이 해당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해당 권고와 관련되는 환자를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도는 제1종 의료 기관 혹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동항 다만 책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혹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만나며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하는 곳에 입원시킬 수 있다.
3. 도도부현 지사는 긴급 그 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했을 때로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해당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또는 진료소 이외의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만나며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하는 곳에 입원시킬 수 있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 3항의 규정과 관련되는 입원의 기간의 경과 후,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환자에 대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입원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연장과 관련되는 입원의 기간의 경과 후, 이것을 더욱 연장하려고 할 때도, 같이 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또는 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대해 놓여진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21조 (이송)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전 2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는 환자를 입원할 병원 또는 진료소에 이송해야 한다.

제22조 (퇴원)

1. 도도부현 지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대해서,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1류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해당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자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환자 에 대해서,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1류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도도부현 지사에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3. 제19조 혹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해당 환자의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환자에게 대해서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동류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지의 확인을 해야 한다.

제23조 (서면에 의한 통지)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가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입원의 권고, 제19조 제2항 및 제4항 및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입원의 조치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입원의 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제24조 (감염증의 진단에 관한 협의회)

1. 도도부현 지사의 자문에 따라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외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시키기 위해, 각 보건소에 감염증의 진단에 관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 대해 「협의회」 라고 한다.)를 둔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2 이상의 보건소를 설치하는 도도부현에 대하고, 특히 필요

라 있다고 인정할 때는, 2 이상의 보건소에 대해 1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협의회는 위원 세 명 이상으로 조성한다.
4. 위원은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의사, 감염증의 의료에 관계되어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의사를 제외한다.) 및 의료 이외의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도도부현 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의사여야 한다.
5.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심사청구의 특례)

1. 제20조 제2항 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으면서 해당 입원의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입원의 조치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후생 장관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 같다.)를 할 수 있다.
2. 후생 장관은 전항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는 해당 심사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계산해 5일 이내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한다.
3. 제20조 제2항 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환자이며 해당 입원의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 불복 심사법(쇼와 37년 법률 제160호)에 근거해 후생 장관에 심사청구를 했을 때, 후생 장관은 해당 심사청구에 관련된 입원환자가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한다.
4. 제20조 제2항 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환자이며 해당 입원의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근거해 도도부현 지사에 심사청구를 한동안, 해당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이 30일을 넘었을 때, 도도부현 지사는 즉시 사건을 후생 장관에 이송하는 한편 그 취지를 심사청구인에 통지해야 한다.
5.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사건이 이송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후생 장관에 심사청구가 있던 것으로 간주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후생 장관은 제2항의 재결 또는 제3항의 재결(입원의 기간이 30일을 넘는 환자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을 하려고 할 때 미리 공중위생 심의회의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준용) 제19조로부터 제23조까지 및 전조의 규정은 2류 감염증의 환자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고,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20조 제1항, 제2항 중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혹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라고 있어,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중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라고 있는 것은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라고,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중 「1류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 이라고 있는 것은 「2류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 또는 해당 감염증의 증상이 소실한 것」 이라고, 동조 제4항 중 「1류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지」 라고 있는 것은 「2류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지, 또는 해당 감염증의 증상이 소실했는지」 라고 읽어 바꾸는 것 외에 이러한 규정에 관계되어 필요한 기술로 바꾸는 것을 정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독 그 외의 조치

제27조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

1.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해 또는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해당 감염증의 환자가 있는 장소 또는 입은 장소, 해당 감염증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시체가 있는 장소 또는 있던 장소 그 외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오염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고, 해당 환자 혹은 그 보호자 또는 그 자리소의 관리를 하는 사람 혹은 그 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명령에 따라서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해, 또는 그 만연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이라고 인정할 때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해당 감염증의 환자가 있는 장소 또 입은 장소, 해당 감염증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시체가 있는 장소 또는 있던 장소 그 외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오염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고, 시읍면에 소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8조 (설치류, 곤충 등의 구제)

1.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해 또는 그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인정될 때,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설치류, 곤충 등을 구제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명령에 따라서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해 도는 유행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설치류, 곤충 등이 존재하는 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읍면에 해당 설치류, 곤충 등을 제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9조 (물건과 관련되는 조치)

1.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해 또는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어 또는 오염된 혐의가 있는 음식물, 의류, 침구 그 외의 물건에 대해서, 그 소지자에 대해, 해당 물건의 이동을 제한, 금지, 소독, 폐기 그 외 해당 감염증의 발생 또는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을 명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명령에 따라서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발생 도는 유행을 예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어 또는 오염된 혐의가 있는 음식물, 의류, 침구 그 외의 물건에 대해서, 시읍면에 소독하도록 지시해, 또는 해당 도도부현의 직원에게 폐기 그 외 해당 감염증의 발생 또는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시체의 이동 제한 등)

1.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해 또는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시체의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2.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시체는 화장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소독을 실시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매장할 수 있다.

3.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시체는 24시간 내 화장 또는 매장할 수 있다.

제31조 (생활용수의 사용 제한 등)

1.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생활용수의 관리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고 그 사용 또는 급수를 제한 또는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시읍면은 도도부현 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생활용수로 제공되는 물의 사용 또는 급수를 제한 또는 금지를 명했을 때는,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 중, 도도부현 지사의 지사에 따라, 해당 생활용수의 사용자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제32조 (건물과 관련되는 조치)

1.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건물에 대해서, 해당 감염증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독으로 통제가 어려울 때는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기간을 정하고 해당 건물에의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에 의해도 동류 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할 수 없으면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건물에 대해 봉쇄, 또는 그 외 해당 감염증의 만연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33조 (교통의 제한 또는 차단) 도도부현 지사는 1류 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소독에 의한 조절이 어려울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72시간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해당 감염증의 환자가 있는 장소 그 외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장소의 교통을 제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제34조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 제27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조치는 감

염증의 발생 또는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제35조 (질문 및 조사)

1. 도도부현 지사는 제27조로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혹은 3류 감염증의 환자가 있는/있던 장소, 해당 감염증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시체가 있는/있던 장소, 그 외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혹은 3류 감염증의 환자, 의사중 환자 혹은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그 외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서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 전 3항의 규정은 시읍면장이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또는 제3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5. 제2항의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성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서면에 의한 통지)

1. 도도부현 지사는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하거나 또는 해당 직원에게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인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해, 해당 조치를 실시하는 취지 및 그 이유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서면에 의해 통지하지 않고 조치를 실시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 다만 책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를 실시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실시한 취지, 이유, 그 외 동향의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조치의 수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제32조 또는 제3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 또는 해당 직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해당 조치를 실시하는 취지 및 그 이유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읍면장이 해당 직원에게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시키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제6장 의료

제37조 (입원 환자의 의료)

1.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지사가 제19조 혹은 제20조 (이러한 규정을 제26조에 대해 중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권고 또는 입원조치를 실시했을 경우에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환자(신감염증의 소견이 어떤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 대해 같다.)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염증지정 의료 기관에 청구되는 의료비용을 부담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3) 의학적 처치, 수술 및 그 외의 치료

(4) 병원에서의 입원 및 그 요양에 수반하는 도움 그 외의 간호

2. 도도부현은 전항에 규정하는 환자 혹은 그 배우자 또는 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 제 877조 제1항에 정하는 부양 의무자가 전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한도에 대한 동항의 규정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3. 제1항의 신청은 해당 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해 도도부현 지사에 해야 한다.

제38조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1.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은 그 개설자의 동의를 얻고 해당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한 후 후생 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및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은 후생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는 병원에 해당하며 그 개설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은 후생 장관이 정하는데 보다 전조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비용을 부담하는 감염증의 환자 및 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의 의료를 담당해야 한다.

4.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은 전조 제1항 각 호로 내거는 의료 중 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 및 1류 감염증 및 2류 감염증의 환자와 관련 되는 의료에 대해서 후생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은 전조 제1항 각 호로 내거는 의료 중 동류 감염증 및 2류 감염증의 환자와 관련되는 의료에 대해서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6.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은 전조 제1항 각 호로 내거는 의료 중 2류 감염증의 환자와 관련 되는 의료에 대해서 후생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7.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은 그 지정을 사퇴하려고 할 때는 사퇴의 날의 1년 전까지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인 경우에는 후생 장관에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및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인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에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 제3항으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 외 전조에 규정하는 의료를 실시하는 데 부적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후생 장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및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용의 부담을 받는 감염증의 환자(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제외)가 건강 보험법(타이쇼 11년 법률 제70호), 국민건강보험법(쇼와 33년 법률 제192호), 선원 보험법(쇼와 14년 법률 제73호),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쇼와 22년 법률 제50호), 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법(쇼와 33년 법률 제128호, 다른 법률에 대해 준용해 또는 예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 공무원등 공제 조합법(쇼와 37년 법률 제152호) 또는 노인 보건법(쇼와 57년 법률 제80호)의 규정에 의해 의료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 때는, 도도부현은 그 한도에 대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40조 (진료 보수의 청구, 심사 및 지불)

1.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은 진료 보수 가운데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부담하는 비용을 도도부현에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도도부현은 전항의 비용을 해당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진료 내용 및 진료 보수의 청구를 수시 심사하여야 하며, 한편,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는 진료 보수의 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은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진료 보수의 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법(쇼와 23년 법률 제129호)에서 규정하는 심사 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 보수 심사 위원회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심사 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6. 도도부현은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한 진료 보수의 지불에 관한 사무를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보수의 액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 불복 심사법에 따르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1조 (진료 보수의 기준)

1.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 실시하는 제37조 제1항 각 호로 내거는 의료에 관한 진료 보수는 건강 보험의 진료 보수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진료 보수의 예에 의할 수 없을 때나 여기에 따른 일에 대한 적합한 예를 찾을 수 없을 때의 진료 보수는 후생 장관이 공중위생 심의회에 지문해 정한다.

제42조 (긴급 시 등의 의료와 관련되는 특례)

1. 도도부현은 제19조 혹은 제20조(이러한 규정을 제26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한 환자(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 같다.)가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로 제37조 제1항 각 호로 내거는 의료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의료비용에 대해 해당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동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액의 예에 의해 산정한 액의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이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으로부터 동항 각 호로 내거는 의료를 받았을 경우에 적용하고 해당 의료가 긴급 그 외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동항의 신청을 하지 않고 행해진 것일 때로 같이 한다.

2. 제37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3. 제1항의 요양비는 해당 환자가 해당 의료를 받은 당시 그것이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 (보고의 청구 및 검사)

1. 후생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3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용의 부담을 적정한 것으로 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관리자에 대해서 필요한 보고를 요구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 그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현자에 진찰록 그 외의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2.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전항의 보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해 또는 동항의 동의를 거절했을 때는 후생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한 진료 보수의 지불을 한 때 금지할 수 있다.

제44조 (후생성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의 외 제37조 제1항의 신청의 수속, 제40조의 진료 보수의 청구 및 지불 및 그 사무의 위탁의 수속 그 외 이 장으로 규정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후생성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신감염증(제45조-제53조)

제45조 (신감염증과 관련되는 건강진단)

1. 도도부현 지사는 신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신감염증에 걸려 있음을 의심하기에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해당 신감염증에 걸려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그 보호자로 하여금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람이 해당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해당 권고와 관련되는 신감염증에 걸려 있음을 의심하기에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해당 직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가 제1항에 규정하는 건강진단의 권고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건강진단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제46조 (신감염증의 소견이 어떤 사람의 입원)

1. 도도부현 지사는 신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감염증 소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입원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보호자로 하여금 신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그 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병원에서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해당 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입원시켜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람이 해당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해당 권고와 관련되는 신감염증의 소견이 어떤 사람을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동항 다만 책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병원에서 만나며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적당으로 인정하는 곳)에 입원시킬 수 있다.
3. 도도부현 지사는 긴급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신감염증의 소견이 어떤 사람을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했을 때로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해당 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 이외의 병원 중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입원시킬 수 있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 3항의 규정과 관련되는 입원의 기간의 경과 후,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연장과 관련되는 입원의 기간의 경과 후, 이것을 더욱 연장하려고 할 때도 동일하다.

제47조 (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의 이송)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는 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48조 (신감염증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의 퇴원)

1. 도도부현 지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신감염증을 공중에 만연시킬 우려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해당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퇴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 병원의 관리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신감염증을 공중에 만연시킬 우려가 없는 취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해당 입원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입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해당 입원과 관련되는 신감염증을 공중에 만연시킬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의 확인을 해야 한다.

제49조 (신감염증의 소견이 어떤 사람의 입원과 관련되는 서면에 의한 통지)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가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입원의 권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입원의 조치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입원의 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제50조 (신감염증과 관련되는 소독 그 외의 조치)

1. 도도부현 지사는 신감염증의 발생 또는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신감염증을 1류 감염증으로 간주하고 제27조로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실시할 수 있다.
2.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직원에게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시키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3.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제27조 제1

- 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실시시키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4. 제36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제32조 또는 제3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실시시키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5. 시읍면장은 신감염증의 발생 또는 만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신감염증을 동류 감염증으로 간주하고 제35조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해당 직원에게 실시시킬 수 있다.
 6. 제35조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직원에게 동조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시키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7. 제36조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지사의 지시에 따라 시읍면장이 해당 직원에게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시키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8.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조치는 신감염증의 발생을 예방 또는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제51조 (후생 장관의 기술적 지도 및 조언)

1. 도도부현 지사는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47조 혹은 제48조 제1항 혹은 제4항에 규정하는 조치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혹은 제3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실시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조향타제, 해당 조치의 내용 및 해당 조치를 실시하는 시기 그 외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후생장관에 통보해 후생 장관과 밀접한 제휴를 도모한 다음 해당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후생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제45조로부터 제48조까지 및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적정한 것으로 하기 위해,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한다.
3. 후생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공중위생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4. 전 3항의 규정은 시읍면장이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35조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해당 직원에게 실시시키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제52조 (신감염증과 관련되는 경과외의 보고)

1. 도도부현 지사는 제45조로부터 제48조까지 또는 제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실시시켰을 경우는 그 내용 및 그 후의 경과를 순서대로 후생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3조 (신감염증의 정령에 의한 지정)

1. 나라는 신감염증과 관련되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의해 해당 신감염증의 고유의 병상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해서 감나무 조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정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신감염증 및 신감염증의 소견이 어떤 사람을 일 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정해 각각 동류 감염증 및 동류 감염증의 환자로 간주해 제3장으로부터 전장까지 및 차장으로부터 제10장까지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정령으로 정해진 기간은 해당 정령으로 정해진 신감염증에 대해 동항의 정령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된 규정을 해당 기간의 경과 후 더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 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연장과 관련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후 이것을 더욱 연장하려고 할 때도 동일하다.
3. 후생 장관은 전 2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공중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조치

제54조 (수입 금지) 사람이나 제13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동물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 동물」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의 후생성령,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고, 후생 장관 및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

는 예외이다.

1.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염증의 발생의 상황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해 지정 동물마다 후생성령,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부터 발송된 것
2. 전호의 후생성령,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징역을 경유한 것

제55조 (수입검역)

1. 지정 동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은 수출국에 있어서의 검사의 결과, 제13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감염증 중 지정 동물 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걸리지 않은 취지 또는 걸려 있는 혐의가 없는 취지 그 외 후생성령,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수출국의 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지정 동물은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항구 또는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입해서는 안 된다.
3. 수입자는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해당 지정 동물의 종류 및 수량, 수입의 시기 및 장소 그 외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동물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고, 동물 검역 소장이 다음 방향의 검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신고와 관련되는 수입의 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입자는 동물 검역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항구 혹은 비행장 내의 가축 방역관이 지정한 장소에 있고 지정 동물에 대해서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감염증에 걸려 있는지 어떤지 또는 그 혐의가 있을지에 대한 가축 방역관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지정하는 그 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가축 방역관은 전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검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6. 전 각 항에 규정하는 것의 외 지정 동물의 검역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제56조 (검사에 근거하는 조치)

1. 가축 방역관이 전조 제4항의 검사에 해당하고, 제13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감염 중에 걸려 또는 걸려 있는 혐의가 있는 지정 동물을 발견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동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 검역 소장은 즉시 해당 지정 동물의 수입자의 이름 그 외 동항의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처의 보건소장을 경유해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는 즉시, 해당 통지의 내용을 후생 장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동물 검역 소장은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 동물에 대해서,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가축 방역관에 격리, 소독, 도살 처분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비용부담

제57조 (시읍면의 지변해야 할 비용) 시읍면은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이 실시하는 소독(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로 하는 비용
2.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이 실시하는 설치류, 곤충 등의 구제(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로 하는 비용
3.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이 실시하는 소독(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로 하는 비용
4.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이 실시하는 생활의용으로 제공되는 물의 공급(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로 하는 비용

제58조 (도도부현의 지변해야 할 비용) 도도부현은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변해야 한다.

1. 제14조로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사무에 필요로 하는 비용
2. 제1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필요로 하는 비용
3. 제18조 제4항, 제22조 제4항(제26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필요로 하는 비용
4. 제21조(제26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필요로 하는 비용

5.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로 하는 비용
6.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관련되는 조치(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로 하는 비용
7.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의 제한 또는 차단(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로 하는 비용
8.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비용
9.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에 필요로 하는 비용

제59조 (도도부현의 부담) 도도부현은 제57조의 비용에 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그 3분의 2를 부담한다.

제60조 (도도부현의 보조) 도도부현은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설치자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1조 (나라의 부담)

1. 나라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검역에 필요로 하는 비용(수입 검역중의 지정 동물의 사육 관리비를 제외한다.)를 부담해야 한다.
2. 나라는 제58조 제8호 및 제9호의 비용에 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그 4분의 3을 부담한다.
3. 나라는 제58조 제1호로부터 제7호까지 및 제59조의 비용에 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그 2분의 1을 부담한다.

제62조 (나라의 보조)

1. 나라는 제60조의 비용에 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그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2. 나라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설치자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데 보다,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 (비용의 징수)

1. 시읍면장을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직원에게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혹은 3류 감염증의 환자가 있는 장소 또는 입은 장소, 해당 감염증과 관련되는 시체가 있는 장소 또는 있던 장소 그 외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오염된 혐의가 있는 장소를 소독시켰을 경우(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었을 경우를 포함한다.)는 해당 환자 혹은 그 보호자 또는 그 자리소의 관리를 하는 사람 혹은 그 대리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소독에 필요로 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시읍면장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직원에게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어 또는 오염된 혐의가 있는 설치류, 곤충동물 구제시켰을 경우(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었을 경우를 포함한다.)는 해당 설치류, 곤충 등이 존재하는 구역의 관리를 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쥐족, 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로 한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3. 시읍면장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직원에게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또는 3류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어 또는 오염된 혐의가 있는 음식물, 의류, 침구 그 외의 물건을 소독시켰을 경우(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었을 경우를 포함한다.)는 해당 음식물, 의류, 침구 그 외의 물건의 소지자로부터 소독에 필요로 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장 잡칙

제64조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

1.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에 있어서는 제3장으로부터 전장까지의 규정(제14조 제1항 및 제5항, 제25조 제4항(제26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제40조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제43조 및 제60조를 제외하다.) 안 「도도부현 지사」라고 있는 것은 「시장」 또는 「구장」이라고, 「도도부현」이라고 있는 것은 「시」 또는 「구」라고 한다.

2. 특별구에 있어서는 제31조 제2항 및 제57조(제4호의 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안 「시읍면」이라고 있는 것은 「도」라고 한다.

제65조 (재심사청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장이 실시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재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후생 장관에 대해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경과 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명령을 제정해 또는 개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해 합리적으로 필요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 있고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67조

1. 의사가 감염증의 환자(의사증 환자 및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및 신감염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음 조에 있어 같다.) 일지에 관한 건강진단 또는 해당 감염증의 치료에 임하여 파악한 사람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가 없게 흘렸을 때는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이러한 규정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동조 제2항의 정령에 의해, 동조 제1항의 정령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동조 제2항의 정령에 의해 동조 제1항의 정령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신고의 수리, 제15조(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 혹은 조사, 제17조(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제유우쿠쵸, 제20조 혹은 제26조에 대해 준용하는 제19조 혹은 제20조의 규정(이러한 규정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 또는 제27조로부터 제33조까지 혹은 제35조의 규정(이러한 규정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조치(제50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물에 종사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자가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해서 파악한 사람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가 없게 흘렸을 때도, 정향과 마찬가지로 한다.

3. 직무 결석항의 비밀을 파악한 다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인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비밀을 흘렸을 때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68조 감염증의 환자의 비밀을 업무상 파악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비밀을 흘렸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제6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1. 제12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이러한 규정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고(신감염증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하지 않았던 의사
2. 제1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5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이러한 규정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는 수의사
3. 제18조 제1항(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제18조 제2항(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4.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이러한 규정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도도부현지사(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및 특별구의 장을 포함한다.)의

- 명령(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
5. 제30조 제2항(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6. 제35조 제1항(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제50조 제1항 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서 허위의 답변을 해 또는 동향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관계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제50조 제1항 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조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한 사람
 7. 제54조 또는 제55조 제1항, 제2항 혹은 제4항의 규정(이러한 규정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관계되어 준용되는 경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위반해 지정 동물을 수입한 사람.

부칙

제1조 (시행 기일) 이 법률은 해세이 11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로 내거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13조의 규정
공포의 날
2. 제8장의 규정, 제61조 제1항 및 제69조 제7호의 규정 및 부칙 제34조의 규정
공포의 날로부터 계산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검토)

1.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서 감염증의 유행의 상황, 의학 의료의 진보의 추이, 국제 교육의 진전, 감염증에 관한 지식의 보급의 상황 그 외 이 법률의 시행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제6조에 규정하는 감염증의 범위 및 그 유형에 대해서는 적어도 5년마다 의학 의료의 진보의 추이, 국제 교류의 진정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전염병 예방법 등의 폐지) 다음으로 내거는 법률은 폐지한다.

1. 전염병 예방법(메이지 30년 법률 제36호)
2. 성병 예방법(쇼와 23년 법률 제167호)
3.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의 예방에 관한 법률(헤세이 원년 법률 제2호)

제4조 (전염병 예방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이 법률의 시행의 날(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 전에 행해진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과 관련되기 전 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전의 전염병 예방법(이하 「구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한다.) 제3조 및 제3조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시행 히쿠마에 행해진 구 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간주한다.

제6조 시행 히쿠마에 행해진 조치와 관련되는 구 전염병 예방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비용에 대한 시읍면의 지번, 도도부현의 지출 및 국고의 부담 및 구 전염병 예방법 제22조 및 제22조 2에 규정하는 비용에 대한 도도부현 또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지번 및 국고의 부담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시행 히쿠마에 행해진 조치와 관련되는 구 전염병 예방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비용의 추징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의 특례)

1.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지역에 있어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 부족해 감염증의 만연의 방지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법률의 시행 때 실제로 간직하는 구 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전염병

원 또는 격리병사에서 해당되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1회 한정해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시행일부터 5년을 경과했을 때는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다.
3. 시읍면은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이 충족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지사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9조 (성병 예방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시행 히쿠마에 행해진 의사의 진단과 관련되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전의 성병 예방법(다음 조에 있어 「구 성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 히쿠마에 행해진 조치와 관련되는 구 성병예방법 제17조 각 호로 내거는 비용에 대한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지변 및 국고의 부담 및 구 성병 예방법 제18조에 규정하는 비용에 대한 시읍면의 지변 및 국고의 부담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의 예방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시행 히쿠마에 행해진 의사의 진단과 관련되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의 예방에 관한 법률(다음 조에 있어 「구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의 예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시행 히쿠마에 행해진 구 후천성 면역부전 증후군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여겨진 구 전염병 예방법 제22조 및 제22조 2에 규정하는 조치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한 도도부현 또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지변 및 국고의 부담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 후생 장관은 제9조에 규정하는 기본 지침 또는 제11조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 예방 지침을 정하려고 할 때는, 시행 히쿠마에 있어도 공중위생 심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라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시행 히쿠마로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부칙에 대해 더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시행 후로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록 2]

캐나다 검역법

<p>Quarantine Act [2005, c. 20] [Assented to May 13, 2005]</p> <p>An Act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communicable diseases</p> <p>Her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of Canada, enacts as follows:</p> <p>SHORT TITLE</p> <p>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Quarantine Act.</p> <p>INTERPRETATION</p> <p>2.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in this Act.</p> <p>“communicable disease” means a human disease that is caused by an infectious agent or a biological toxin and poses a risk of significant harm to public health, or a disease listed in the schedule, and includes an infectious agent that causes a communicable disease.</p>	<p>검역법 [2005, c. 20]</p> <p>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p> <p>국왕은 캐나다 상원과 하원의 권고와 동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소제목</p> <p>1. 이 법은 “검역법”이라 할 수 있다.</p> <p>정의</p> <p>2. 이 법에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p> <p>“전염병”이라 함은 감염성 물질 또는 생물학적 독성물질로 인해 유발되며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인간의 질병, 또는 별표에 포함된 질병으로서 전염병을 유발하는 감염성 물질을 포함한다.</p>
---	---

<p>“conveyance” means a watercraft, aircraft, train, motor vehicle, trailer or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including a cargo container, that arrives in Canada or is in the process of departing from Canada.</p>	<p>“운송수단”이라 함은 캐나다에 도착하거나 캐나다를 출발하는 과정에 있는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의미한다.</p>
<p>“departure point” means any point designated by the Minister under section 10.</p>	<p>“출발지점”은 제10조에 의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모든 지점을 의미한다.</p>
<p>“entry point” means a point designated by the Minister under section 9 or a point where a customs office,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2(1) of the Customs Act, is located.</p>	<p>“입국지점”이라 함은 제9조에 의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지점 또는 세관법 제2조제1항의 세관사무소가 위치한 지점을 의미한다.</p>
<p>“health assessment” means an evaluation of the relevant medical history and the travel history of a traveller and a physical examination, including an examination of the traveller’s head, neck and extremities and the measurement of vital signs such as the traveller’s temperature, heart rate and respiratory rate.</p>	<p>“건강평가”라 함은 여행자의 관련된 병력과 여행역사의 평가 및 여행자의 머리, 목과 사지의 검사와 체온·맥·호흡 등의 생명징후의 측정을 포함하는 신체검사를 의미한다.</p>
<p>“medical examination” includes ascertaining the relevant medical history and the travel history of the person being examined, the conduct of a physical examination and any laboratory tests or radiographic or diagnostic tests that are</p>	<p>“검진”이라 함은 피검사자의 병력과 여행 역사를 확인하고 신체검사 및 피검사자의 전염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실험실 검사 또는 방사선·진단 검사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p>

<p>required to make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person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p>	
<p>"medical practitioner" means a person who is entitled to practise medicine by the laws of a province.</p>	<p>"의료인"이라 함은 주(州)법에 의하여 의술을 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p>
<p>"Minister" means the Minister of Health.</p>	<p>"장관"이라 함은 보건부 장관을 의미한다.</p>
<p>"operator" means any person in charge of a conveyance, and includes the conveyance crew.</p>	<p>"운영자"라 함은 운송수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며 운송수단 승무원을 포함한다.</p>
<p>"owner", other than in section 43, includes a lessee.</p>	<p>"소유자"라 함은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43조 제외)</p>
<p>"peace officer" means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s (c) and (g) of the definition "peace officer" in section 2 of the Criminal Code.</p>	<p>"보안관"이라 함은 형법 제2조의 "보안관"의 정의 제(c)·(g)항에서의 사람을 의미한다.</p>
<p>"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egulation.</p>	<p>"규정된"이라 함은 법규에 의해 규정됨을 의미한다.</p>
<p>"quarantine facility" means any place that is used for the detention of a traveller.</p>	<p>"검역시설"이라 함은 여행자의 구류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p>
<p>"quarantine station" means any place that is used for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Act.</p>	<p>"검역소"라 함은 이 법의 집행·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p>

<p>“screening officer” means a person designated as a screening officer under subsection 5(1) or an officer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2(1) of the Customs Act.</p>	<p>“선별검사관”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별검사관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관세법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의 세관원을 의미한다.</p>
<p>“traveller” means a person, including the operator of a conveyance, who arrives in Canada or is in the process of departing from Canada.</p>	<p>“여행자”라 함은 캐나다에 도착하거나 캐나다를 출발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운송수단 운영자를 포함한다.</p>
<p>“vector” means an insect or animal capable of transmitting a communicable disease.</p>	<p>“매개체”라 함은 전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곤충 또는 동물을 의미한다.</p>
<p>BINDING ON HER MAJESTY 3. This Act is binding on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or of a province.</p>	<p>국왕에 의한 구속력 3. 이 법은 캐나다 또는 주(州)의 권리로 국왕에 의하여 구속력이 있다.</p>
<p>PURPOSE 4.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public health by taking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communicable diseases.</p>	<p>목적 4. 이 법은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사용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POWERS OF MINISTER 5. (1) The Minister may designate qualified persons, or classes of qualified persons, as analysts, screening officers or environmental health officers. (2) The Minister may designate medical</p>	<p>장관의 권한 5. (1) 장관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들을 분석가, 선별검사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장관은 의료인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p>

<p>practitioners or other qualified health care practitioners, or classes of such persons, as quarantine officers.</p> <p>(3) The Minister may designate medical practitioners as review officers.</p> <p>(4) The Minister shall give a certificate of designation to every screening officer who is not also a customs officer, to every quarantine officer and to every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An officer to whom a certificate has been given shall produce it, on request, to the person in charge of a place or conveyance that the officer inspects and to any person that the officer questions.</p>	<p>보건의료인, 또는 이들의 집단들을 검역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3) 장관은 의료인을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4) 장관은 모든 세관원이 아닌 선별검사관, 검역관 및 환경보건관리자 모두에게 지정 증표를 수여하여야 한다. 증표를 받은 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가 검사하는 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과 그가 조사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6. (1) The Minister may establish a quarantine station at any place in Canada.</p> <p>(2) The operator of a facility in which a customs office,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2(1) of the Customs Act, is located shall, when required in writing by the Minister, provide and maintain free of charge any area or facility, along with its fixtures, that the Minister consid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quarantine station.</p>	<p>6. (1) 장관은 캐나다 어느 곳이나 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2) 관세법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의 세관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자는 장관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검역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장관이 고려하는 모든 지역 또는 시설 및 내부 시설을 무료로 제공·유지하여야 한다.</p>
<p>7. The Minister may by order designate</p>	<p>7. 장관은 명령으로 캐나다 어느 장소든지</p>

<p>any place in Canada as a quarantine facility and amend, cancel or reinstate the designation.</p>	<p>검역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개정·취소·복위할 수 있다.</p>
<p>8. (1) Any person in charge of a place shall, at the request of the Minister, provide that place to the Minister if, in the opinion of the Minister, the temporary use of the place as a quarantine facility i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health.</p> <p>(2) The place is deemed to be designated as a quarantine facility.</p> <p>(3) The Minister may compensate any person for the Minister's use of the place.</p> <p>(4) The Minister shall consult with the provincial public health authority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place is situated before taking possession of it.</p>	<p>8. (1) 장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장관의 견해로 그 장소를 일시적으로 검역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장관에게 그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p> <p>(2) 이 장소는 검역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p> <p>(3) 장관은 장관이 장소를 사용한 것에 대해 누구든지에게 보상할 수 있다.</p> <p>(4) 장관은 이 장소를 점유하기 전에 장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州)의 지방공중보건당국과 협의할 것이다.</p>
<p>9. The Minister may by order designate any point in Canada as an entry point.</p>	<p>9. 장관은 명령으로 캐나다 어느 장소든지 입국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0. The Minister may by order designate any point in Canada as a departure point if, in the opinion of the Minister, the order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a communicable disease.</p>	<p>10. 장관은 장관의 견해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명령이 필요하다면, 명령으로 캐나다 어느 장소든지 출국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1. The Minister may enter into an</p>	<p>11. 장관은 이 법 또는 주(州)법의 집행·시행</p>

<p>agreement with a department or an agency of the Government of Canada or of a province, or with a public health authority, respecting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Act or of an Act of a province.</p>	<p>을 존중하면서 캐나다 정부나 주(州)정부의 부서·기관 또는 공중보건당국과 협정을 설립할 수 있다.</p>
<p>TRAVELLERS</p>	<p>여행자</p>
<p>12. Every person who is subject to subsection 11(1) of the Customs Act and enters Canada shall, immediately after entering, present themselves to a screening officer at the nearest entry point.</p>	<p>12. 관세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하는 즉시 가장 가까운 입국지점의 선별검사관에게 자신을 보여야 한다.</p>
<p>13. Every person who leaves Canada through a departure point shall, immediately before leaving, present themselves to a screening officer or quarantine officer at the departure point.</p>	<p>13. 출발지점을 통해 캐나다를 출발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지점의 선별검사관 또는 검역관에게 자신을 보여야 한다.</p>
<p>14. (1) Any qualified pers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may, to determine whether a traveller has a communicable disease or symptoms of one, use any screening technology authorized by the Minister that does not involve the entry into the traveller's body of any instrument or other foreign body.</p>	<p>14. (1) 장관이 인정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행자가 전염병을 가졌거나 전염병의 증상을 보이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구 또는 기타 외부물질이 여행자의 신체에 삽입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장관이 인정한 선별검사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p>
<p>(2) If a traveller refuses to be screened with the screening technology and the</p>	<p>(2) 여행자가 선별검사기술을 사용하여 선별검사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기술을</p>

<p>person using it is not a screening officer or quarantine officer, the person shall immediately inform a screening officer or quarantine officer of the refusal.</p>	<p>사용하는 사람이 선별검사관 또는 검역관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즉시 선별검사관 또는 검역관에게 거절에 대해 알려야 한다.</p>
<p>15. (1) Every traveller shall answer any relevant questions asked by a screening officer or quarantine officer and provide to the officer any information or record in their possession that the officer may reasonably require in the performance of a duty under this Act.</p>	<p>15. (1) 모든 여행자는 선별검사관 또는 검역관이 하는 모든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선별검사관 또는 검역관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 Any traveller who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y have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listed in the schedule or are infested with vectors, or that they have recently been in close proximity to a person who has, or is reasonably likely to have, a communicable disease listed in the schedul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shall disclose that fact to a screening officer or quarantine officer.</p>	<p>(2) 별표에 포함된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가 있거나, 별표에 포함된 전염병이 있거나 정당하게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근에 근접하였던 사람은 선별검사관 또는 검역관에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p>
<p>(3) Every traveller shall comply with any reasonable measure ordered by a screening officer or quarantine officer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a</p>	<p>(3) 모든 여행자는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별검사관 또는 검역관에 의해 명령되는 정당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p>

<p>communicable disease.</p> <p>16. (1) A screen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inform a quarantine officer, and follow any directive of that officer respecting the traveller, if</p> <p>(a) the screening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a traveller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or has recently been in close proximity to a person who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p> <p>(b) a traveller has refused to be screened by the screening officer under subsection 14(1), or a person authorized to use the screening technology has informed the screening officer that a traveller has refused to be screened under that subsection;</p> <p>(c) a traveller has contravened subsection 15(1) by refusing to answer a question asked by the screening officer or by refusing to provide information or a record that the screening officer required; or</p> <p>(d) a traveller has contravened subsection 15(3) by refusing to comply with a measure ordered by the screening officer.</p>	<p>16. (1) 선별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여행자에 관한 검역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p> <p>(a) 선별검사관이 여행자가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또는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근에 근접하였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p> <p>(b) 여행자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선별검사관에 의해 선별검사를 받을 것을 거절하거나 선별검사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선별검사관에게 여행자가 동조동향에 의하여 선별검사를 받을 것을 거절하였다고 알렸다.</p> <p>(c) 여행자가 선별검사관이 하는 질문에 답할 것을 거절하거나 선별검사관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기록을 제공할 것을 거절함으로써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p> <p>(d) 여행자가 선별검사관이 명령하는 조치를 준수할 것을 거절함으로써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였다.</p>
---	--

<p>(2) The screening officer may, without directives from a quarantine officer, isolate the traveller, individually or within a group, until the traveller is assessed by a quarantine officer.</p>	<p>(2) 선별검사관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 여행자가 검역관에 의해 평가될 때까지 여행자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격리할 수 있다.</p>
<p>17. A screening officer or quarantine officer who takes any action in respect of a traveller under this Act shall, if reasonably possible, inform the traveller of the measure before it is taken.</p>	<p>17. 이 법에 의해 여행자에게 조치를 취하는 선별검사관 또는 검역관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여행자에게 수단에 대해 알려야 한다.</p>
<p>18. A peace officer may, at the request of a screening officer or quarantine officer, arrest without a warrant and bring to a quarantine officer any traveller who the peac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has refused to be isolated or refuses to comply with a measure under subsection 15(3).</p>	<p>18. 보안관은 선별검사관 또는 검역관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없이 여행자가 격리를 거절하거나 제15조제3항의 조치를 준수할 것을 거절하였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 이를 구속하여 검역관에게 데려올 수 있다.</p>
<p>19. (1) A quarantine officer may require a traveller to undergo a health assessment if</p> <p>(a) th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traveller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or has recently been in close proximity to a person who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p>	<p>19. (1)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건강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p> <p>(a) 검역관이 여행자가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또는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근에 근접하였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p>

<p>with vectors;</p> <p>(b) the traveller has refused to be screened under subsection 14(1); or</p> <p>(c) the traveller has contravened subsection 15(1) or (3).</p> <p>(2) The health assessment shall be undertaken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but in any case within 48 hours after the quarantine officer requires the traveller to undergo it.</p> <p>20. (1) A quarantine officer may require any person at an entry or departure point to undergo a health assessment if the quarantin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person has recently been in close proximity to a person who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who is infested with vectors.</p> <p>(1.1) The health assessment shall be undertaken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but in any case within 48 hours after the quarantine officer requires the traveller to undergo it.</p> <p>(2)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21 to 33.1, "traveller" includes any person required to undergo a health assessment under subsection (1).</p> <p>21. (1) A quarantine officer may require a traveller, their clothing and their</p>	<p>(b) 여행자가 제14조제1항에 의한 선별검사를 거절하였다.</p> <p>(c) 여행자가 제15조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였다.</p> <p>(2) 건강평가는 여행자에게 평가를 요구한 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48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p> <p>20. (1) 검역관은 입국 또는 출발지점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에게 이 사람이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근에 근접하였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건강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p> <p>(1.1) 건강평가는 여행자에게 평가를 요구한 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48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p> <p>(2) 제21조 내지 제33.1조의 목적 상 "여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건강평가가 요구되는 사람을 포함한다.</p> <p>21. (1) 검역관은 여행자의 건강평가 이후 여행자에 매개체가 서식한다고 생각할 정</p>
---	---

<p>personal belongings to be disinfested if, after a health assessment of the traveller, the quarantin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traveller is infested with vectors.</p>	<p>당한 근거가 있다면 여행자와 그의 류 및 소지품으로부터 해충을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2) A quarantine officer or a person acting on their behalf may detain and disinfest any baggage if the quarantin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baggage is infested with vectors.</p>	<p>(2) 검역관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수화물에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는 수화물을 구류하고 해충을 없앨 수 있다.</p>
<p>(3) A quarantine officer or a person acting on their behalf may enter and disinfest any place at an entry or departure point if a traveller or baggage that was or may be disinfested under subsection (1) or (2) has been in or at that place and the quarantin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lace is infested with vectors.</p>	<p>(3) 검역관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입국 또는 출발지점의 어떤 장소이든 이 장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해충을 없앤 여행자 또는 수화물이 있었고 검역관이 이 장소에 매개체가 서식한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출입하여 해충을 없앨 수 있다.</p>
<p>22. (1) If a quarantin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traveller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or has recently been in close proximity to a person who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the officer may require the traveller</p>	<p>22. (1) 검역관은 여행자가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사람과 최근에 근접하였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여행자에게 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p>

<p>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p> <p>(2) The medical examination shall be conducted by a medical practitioner and undertaken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but in any case within 48 hours after the quarantine officer requires the traveller to undergo it.</p>	<p>(2) 검진은 의료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검역관이 여행자에게 검진을 요구한 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48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p>
<p>23. (1) At any time, a traveller may request an examination by a medical practitioner of their choice in addition to a medical examination conducted under subsection 22(1). The quarantine officer shall inform the traveller of this right.</p> <p>(2) The quarantine officer shall accept the request if, in the opinion of the officer, the examination would not unduly delay any measures taken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p> <p>(3) The examination shall be at the traveller's expense and shall be conducted in the place where the traveller is detained.</p>	<p>23. (1) 여행자는 언제든지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검진 외에 여행자가 선택한 의료인에 의한 추가적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역관은 여행자에게 이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한다.</p> <p>(2) 검역관은 추가검사가 이 법의 집행에서 취하는 조치를 과도하게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라면 이 요청을 수락할 것이다.</p> <p>(3) 검사에 대한 비용은 여행자가 지불해야 하며 여행자가 구류된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p>
<p>24. The Minister shall, if reasonably possible, provide a traveller with an interpreter if the traveller does not ha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at least one of Canada's official languages or has a speech or hearing disability.</p>	<p>24. 장관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여행자가 캐나다의 공식언어 중 최소한 한 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거나 언어 또는 청력 장애가 있다면 여행자에게 통역자를 제공해야 한다.</p>

<p>25. (1) If a quarantine officer, after the health assessment or medical examination of a traveller,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traveller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has recently been in close proximity to a person who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but is of the opinion that the traveller does not pose an immediate risk of significant harm to public health, the officer may order the traveller to report to the public health authority specified in the order.</p> <p>(2) The quarantine officer shall, without delay, send a copy of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1) to the public health authority specified in the order.</p> <p>(3) The public health authority shall inform the quarantine officer,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whether the traveller reports to the authority.</p>	<p>25. (1) 검역관이 여행자의 건강평가 또는 검진 이후에 여행자가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고, 또는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사람과 최근에 근접하였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가 있으나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즉시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라면 검역관은 여행자로 하여금 명령에 명시된 공중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2) 검역관은 즉시 제1항에 의한 명령의 사본을 명령에서 명시한 공중보건당국에게 보내야 한다.</p> <p>(3) 공중보건당국은 명령에 따라 여행자가 당국에 보고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p>
<p>26. If a quarantine officer, after the medical examination of a travell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traveller has or might have a</p>	<p>26. 검역관이 여행자의 검진 이후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또는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사람에 최근에 근접하였</p>

<p>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or has recently been in close proximity to a person who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the quarantine officer may order the traveller to comply with treatment or any other measure for preventing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the communicable disease.</p>	<p>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라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여행자가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기타 조치를 준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27. On an ex parte application by a quarantine officer, a provincial court judg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 of the Criminal Code who is satisfied on information submitted in writing and under oath that a travell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25(1) or section 26 may issue a warrant directing a peace officer to arrest the traveller and take them to a quarantine officer.</p>	<p>27. 검역관의 일방적인 신청에서 형법 제2조의 지방법원 재판관이 여행자가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선서되고 서면으로 제출된 정보에 대해 만족할 때에는 보안관이 여행자를 구속하고 검역관에게 데려 갈 지시를 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p>
<p>28. (1) A quarantine officer may detain any traveller who</p> <p>(a) has refused to be disinfested or to undergo a health assessment;</p> <p>(b) has been required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under subsection 22(1);</p> <p>(c) has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made under section 26;</p>	<p>28. (1)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자를 구류할 수 있다.</p> <p>(a) 해충을 없애거나 건강평가를 받을 것을 거절하는 여행자</p> <p>(b) 제22조제1항에 의해 검진이 요구되는 여행자</p> <p>(c) 제26조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여행자</p>

<p>(d) the quarantin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p> <p>(i)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or has recently been in close proximity to a person who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and</p> <p>(ii) is capable of infecting other people;</p> <p>(e) has been arrested under section 27; or</p> <p>(f) has been arrested without a warrant under section 18.</p> <p>(2) A peace officer may, at the request of a quarantine officer, arrest without a warrant and bring to the quarantine officer any traveller referred to in subsection (1) who resists detention.</p>	<p>(d) 검역관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여행자</p> <p>(i)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또는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사람에 최근에 근접하였다.</p> <p>(ii)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p> <p>(e) 제27조에 의해 구속된 여행자</p> <p>(f) 제18조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구속된 여행자</p> <p>(2) 보안관은 검역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여행자 중 구류에 저항하는 사람을 구속 영장 없이 구속하여 검역관에게 데려올 수 있다.</p>
<p>29. (1) The quarantine officer shall immediately inform a traveller detained under subsection 28(1) of their right to a review of the confirmation of detention.</p> <p>(2) The quarantine officer shall provide the traveller with the opportunity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by a medical practitioner at least every seven days after the day on which</p>	<p>29. (1) 검역관은 제28조제1항에 의해 구류된 여행자에게 구류확인을 심사할 권리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한다.</p> <p>(2) 검역관은 여행자에게 구류가 시작된 후 최소한 7일 이후에 의료인에 의한 검진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the detention begins.</p> <p>(3) A quarantine officer shall confirm, at least every seven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detention begins and on the basis of the most recent medical examination or any other information, that continued detention is necessary if th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traveller poses a risk of significant harm to public health. The quarantine officer shall give the traveller a copy of the confirmation of detention detailing the reasons for the continued detention.</p> <p>(4) A traveller who has received a confirmation of detention under subsection (3) may request a review of the confirmation by transmitting a written request to that effect to a quarantine officer.</p> <p>(5) A quarantine officer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subsection (4) shall immediately send it to a review officer designated under subsection 5(3).</p> <p>(6) The review officer shall, within 48 hour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conduct a review of the confirmation of detention and, if the review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p>	<p>(3) 검역관은 구류가 시작된 후 최소한 7일 이후에 가장 최근의 검진 또는 기타 정보에 바탕하여 여행자가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구류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역관은 구류의 지속의 이유를 상술하는 구류확인서 사본을 여행자에게 주어야 한다.</p> <p>(4) 제3항에 의해 구류확인을 받은 여행자는 검역관에게 서면으로 확인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5) 제4항에 의해 요청을 받은 검역관은 즉시 제5조제3항에 의해 지정된 심사관에게 요청을 보내야 한다.</p> <p>(6) 심사관은 요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 구류 확인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관은 여행자가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여행자의 구류 중단을 명</p>
--	--

<p>that the traveller does not pose a risk of significant harm to public health, order the traveller's release.</p>	<p>령해야 한다.</p>
<p>30. The Minister may, on the Minister's own motion, review any decision of a quarantine officer to detain a traveller and, if the Minister is of the opinion that the traveller does not pose a risk of significant harm to public health, order the traveller's release.</p>	<p>30. 장관은 자진하여 여행자 구류에 대한 검역관의 어떤 결정이든지 심사할 수 있으며 장관이 여행자가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라면 여행자의 구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p>
<p>31. (1) If a quarantine officer detains a traveller referred to in paragraph 28(1)(a), (c), (e) or (f), or a traveller referred to in paragraph 28(1)(b) who has refused to undergo the medical examination, the quarantine officer shall,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pply to a judge of the superior court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traveller is detained, or to a judge of the Federal Court, for an order requiring the travell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o submit to a health assessment; (b) to submit to a medical examination; (c) to be treated; (d) to be disinfested; or (e) to undergo any other measure for preventing or controlling the spread of a communicable disease. 	<p>31. (1) 검역관이 제28조제1항 각호 (a), (c), (e) 또는 (f)의 여행자, 또는 제28조제1항 각호 (b)의 여행자 중 검진을 거절하는 자를 구류하면, 검역관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여행자가 구류된 주(州) 고등법원의 재판관 또는 연방법원의 재판관에게 여행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을 요구하는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건강평가를 받는다. (b) 검진을 받는다. (c) 치료를 받는다. (d) 해충을 없앤다. (e)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관리하는 기타 조치에 응한다.

<p>(2) If a quarantine officer detains a traveller referred to in paragraph 28(1)(b) who has not refused to undergo the medical examination, or a traveller referred to in paragraph 28(1)(d), the quarantine officer may apply to a judge of the superior court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traveller is detained, or to a judge of the Federal Court, for an order referred to in any of paragraphs (1)(b) to (e).</p>	<p>(2) 검역관이 제28조제1항 각호 (b)의 여행자 중 검진을 거절하지 않는 자, 또는 제28조제1항 각호 (d)의 여행자를 구류하면 검역관은 여행자가 구류된 주(州) 고등법원의 재판관 또는 연방법원의 재판관에게 제1항 각호 (b) 내지 (e)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p>
<p>(3) A judge may make an order under this section only if the judge is satisfied that</p> <p>(a) the order is appropriate to prevent or control a risk of significant harm to public health; and</p> <p>(b) other reasonable means are not available to prevent or control the risk.</p>	<p>(3) 재판관은 다음 각호가 충족될 경우에만 동조에 의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다.</p> <p>(a) 명령이 공중보건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관리하는 데 적절하다.</p> <p>(b) 위험을 방지·관리할 기타 수단이 없다.</p>
<p>(4) The traveller may appear before the court by any technological means satisfactory to the court that permits the court and the traveller to communicate simultaneously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use of the technology is necessary or prudent to prevent the spread of a communicable disease.</p>	<p>(4) 기술의 사용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신중하다고 법원이 만족한다면 법원과 여행자의 동시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법원이 만족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법정에서 출두할 수 있다.</p>

<p>32. A quarantine officer shall not detain a traveller if</p> <p>(a) the quarantin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traveller does not pose a risk of significant harm to public health;</p> <p>(b) the traveller is transferred to a public health authority under section 33;</p> <p>(c) the release of the traveller is ordered under subsection 29(6) or section 30; or</p> <p>(d) the quarantin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other reasonable means are available to prevent or control a risk of significant harm to public health.</p>	<p>32. 검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행자를 구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 검역관이 여행자가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p> <p>(b) 여행자가 제33조에 의하여 공중보건당국에 이동되었다.</p> <p>(c) 제29조제6항 또는 제30조에 의하여 여행자의 구류가 중단되었다.</p> <p>(d) 검역관이 공중보건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기타 수단이 있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p>
<p>33. A quarantine officer may at any time transfer a traveller detained by the quarantine officer under subsection 28(1) to a public health authority with the agreement of the authority or the province.</p>	<p>33. 검역관은 언제든지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검역관에 의해 구류된 여행자를 공중보건당국 또는 주(州)의 동의하에 공중보건당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p>
<p>33.1 (1) As soon as practicable, a quarantine officer shall inform the provincial public health authority of any province concerned if</p> <p>(a) the quarantine officer has required a traveller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under subsection 22(1);</p>	<p>33.1 (1) 검역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관계하고 있는 지방공중보건당국에게 알려야 한다.</p> <p>(a) 검역관이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여행자로 하여금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p>

<p>(b) the quarantine officer has ordered the traveller to comply with treatment or any other measure under section 26;</p>	<p>(b) 검역관이 여행자로 하여금 제26조에 의한 치료 또는 기타 조치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다.</p>
<p>(c) a peace officer has arrested a traveller and taken them to the quarantine officer under section 27;</p>	<p>(c) 보안관이 제27조에 의하여 여행자를 구속하였고 검역관에게 데려갔다.</p>
<p>(d) the quarantine officer is detaining a traveller under subsection 28(1); or</p>	<p>(d) 검역관이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여행자를 구류하고 있다.</p>
<p>(e) the quarantine officer does not detain a traveller, for the reasons set out in paragraph 32(d).</p>	<p>(e) 검역관이 제32조 각호 (d)의 근거로 여행자를 구류하지 않는다.</p>
<p>(2) The quarantine officer shall disclose to the provincial public health authority the following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traveller, to the extent that it is known:</p>	<p>(2) 검역관은 여행자의 다음 각호의 개인 정보를 알려진 정도까지 지방공중보건 당국에 밝혀야 한다.</p>
<p>(a) the traveller's name, sex, age and date of birth;</p>	<p>(a) 여행자의 이름, 성별, 나이 및 생년월일</p>
<p>(b) the traveller's itinerary, home address and location;</p>	<p>(b) 여행자의 여행일정, 집주소 및 위치</p>
<p>(c) the communicable disease in question and the state of the traveller's health in respect of that disease; and</p>	<p>(c) 당해 전염병과 이 병과 관련한 여행자의 건강상태</p>
<p>(d) the manner in which the traveller may have acquired the communicable disease or vectors.</p>	<p>(d) 여행자가 전염병 또는 매개체가 생긴 방법</p>
<p>(3) The quarantine officer may disclos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or other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p>	<p>(3) 검역관은 이 법에 의하여 얻은 기밀 사업 정보 또는 기타 개인 정보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p>

<p>under this Act to the provincial public health authority if th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isclosure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a communicable disease.</p>	<p>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지방공중보건당국에게 밝힐 수 있다.</p>
<p>CONVEYANCES</p>	<p>운송수단</p>
<p>34. (1) Before arriving in Canada, the operator of a conveyance used in a business of carrying persons or cargo, or of any prescribed conveyance, shall report to the authority designated under paragraph 63(b) situated at the nearest entry point any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p> <p>(a) any person, cargo or other thing on board the conveyance could cause the spreading of a communicable disease listed in the schedule;</p> <p>(b) a person on board the conveyance has died; or</p> <p>(c) any prescribed circumstances exist.</p> <p>(2) Before departing from Canada through a departure point, the operator shall report to the authority designated under paragraph 63(b) situated at the departure point any circums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s (1)(a) to (c) that exists.</p> <p>(3) If it is not possible for the operator</p>	<p>34. (1)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하는 사업에 사용된 운송수단 또는 규정된 운송수단의 운영자는 가장 가까운 입국지점에 위치한 제63조 각호 (b)에 의하여 규정된 당국에 다음 각호의 1을 의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보고하여야 한다.</p> <p>(a)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화물 또는 기타 물건이 별표에 포함된 전염병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p> <p>(b)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였다.</p> <p>(c) 규정된 상황이 존재한다.</p> <p>(2) 출발지점을 통하여 캐나다를 출발하기 전에 운영자는 제1항 각호 (a) 내지 각호 (c)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출발지점에 위치한 제63조 각호 (b)에 의하여 지정된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3) 캐나다로의 입국 또는 캐나다로부터의</p>

<p>to report before their arrival in or departure from Canada, the report shall be made at the entry or departure point, as the case may be.</p> <p>(4) The authority shall notify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without delay of any report received under this section.</p>	<p>출발 전에 운영자가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보고는 입국 또는 출발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p> <p>(4) 당국은 즉시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에게 동조에 의하여 받은 보고를 신고하여야 한다.</p>
<p>35. The Minister may order the diversion of a conveyance to any place in Canada specified by the Minister if the Minist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doing so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a communicable disease.</p>	<p>35. 장관은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장관이 명시하는 캐나다 내 어느 장소로든지 운송수단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p>
<p>35.1 If the Minister makes an order under section 35, the Minister may order a provider of air navigation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 of the Civil Air Navigation Services Commercialization Act, to relay the order.</p>	<p>35.1 장관은 제35조에 의하여 명령을 하면 장관은 민간항공서비스상업화법의 제2조의 항공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명령을 중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36.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carrying persons or cargo shall, at the request of a screening officer,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communicate or distribute to travellers information or questionnaires provided by the officer.</p>	<p>36.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별검사관,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이들이 제공한 정보 또는 설문지를 여행자들에게 전달·배부하여야 한다.</p>

<p>37. (1) If a screening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a conveyance, its cargo or any other thing on board the conveyance is a source of a communicable disease, the officer shall immediately inform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and follow any directive of that officer respecting the matter.</p> <p>(2) The screening officer may detain the conveyanc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r the conveyance of an operator who does not comply with section 38, take any r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entry to or exit from it or access to it or its contents or take the conveyance to a specified place, until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inspects the conveyance.</p>	<p>37. (1) 선별검사관이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의 화물이나 기타 물건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선별검사관은 즉시 환경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보건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p> <p>(2) 선별검사관은 제1항의 운송수단 또는 제38조를 준수하지 않는 운영자의 운송수단을 환경보건관리자가 검사할 때까지 구류하거나 운영자가 운송수단에 출입하거나 운송수단 또는 내부 물건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운송수단을 가져갈 수 있다.</p>
<p>38. The operator shall answer any relevant questions asked by a screening officer,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and provide the officer with any information or record in the operator's possession that the officer may reasonably require in the performance of a duty under this Act.</p>	<p>38. 운영자는 선별검사관,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가 하는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운영자 소유의 정보 또는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p>
<p>39. (1) If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p>	<p>39. (1) 환경보건관리자가 운송수단 또는 운</p>

<p>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conveyance, its cargo or any other thing on board the conveyance could be the source of a communicable disease, the officer may order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conveyance or any person using it for the business of carrying persons or cargo to</p> <p>(a) take any r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entry to or exit from the conveyance or access to it or its contents;</p> <p>(b) take the conveyance to a specified place;</p> <p>(c) disinfect, disinfest, decontaminate or fumigate the conveyance, its contents or any place where the conveyance or its contents have been, in a manner directed by the officer;</p> <p>(d) destroy or dispose of the conveyance, its contents or any cargo or other thing that has been on board the conveyance;</p> <p>(e) carry out any measures reasonably necessary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a communicable disease; or</p> <p>(f) remove the conveyance and its contents from Canada and present a declaration of health to the</p>	<p>송수단의 화물이나 기타 물건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환경보건관리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나 운영자, 또는 사람·화물을 이동하는 사업을 위하여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을 명령할 수 있다.</p> <p>(a) 운송수단에 출입하거나 운송수단 또는 내부 물건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한다.</p> <p>(b) 운송수단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다.</p> <p>(c) 운송수단, 운송수단의 내부 물건 또는 운송수단이나 내부 물건이 있었던 장소를 환경보건관리자가 지도하는 방법으로 살균하거나 해충을 없애거나 오염을 제거하거나 훈증소독한다.</p> <p>(d) 운송수단, 운송수단의 내부 물건 또는 화물이나 기타 물건을 파괴·처분한다.</p> <p>(e)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다.</p> <p>(f) 운송수단과 그 내부 물건을 캐나다로부터 제거하고 목적국가의 적절한 보건당국에 보건신고서를 제출한다.</p>
---	---

<p>appropriate health authoritie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p> <p>(2)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who makes an order under paragraph (1)(f) shall immediately report the evidence found on the conveyance and the control measures required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p>	<p>(2) 제1항 각호 (f)에 의하여 명령을 하는 환경보건관리자는 운송수단에서 발견한 증거와 요구되는 관리조치를 목적국가의 적절한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40. (1) If a person refuses to obey the order of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made under subsection 39(1), the officer may carry out the order themselves, or order another person to carry it out.</p> <p>(2) After the order is carried out, the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advise the person who refused to obey the order of the action taken and the place where the conveyance and its contents are being kept.</p>	<p>40. (1) 사람이 제39조제1항에 의한 환경보건관리자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절하면 환경보건관리자는 명령을 그들 자신이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2) 명령이 실행된 후, 환경보건관리자는 실행할 수 있는 한 빨리 명령을 따를 것을 거부했던 사람에게 실행된 조치와 운송수단 및 그 내부 물건이 두어진 장소에 대해 알려야 한다.</p>
<p>40.1 No person is required to carry out an order under subsection 39(1) if doing so would expose them to a danger as defined in subsection 122(1) of the Canada Labour Code.</p>	<p>40.1 제39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캐나다 노동법 제122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p>
<p>40.2 (1) As soon as practicable, an</p>	<p>40.2 (1) 환경보건관리자는 실행할 수 있는</p>

<p>environmental health officer shall inform the provincial public health authority of any province concerned if</p> <p>(a) a conveyance has been diverted under section 35; or</p> <p>(b) the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has ordered anything to be done under subsection 39(1).</p> <p>(2) The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shall disclose to the provincial public health authority the follow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conveyance, to the extent that it is known:</p> <p>(a) a description of the conveyance and its itinerary;</p> <p>(b) everything ordered to be done under subsection 39(1) and the reasons why it was ordered to be done;</p> <p>(c) the communicable disease in question; and</p> <p>(d)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operator of the conveyance and of any person using it for the business of carrying persons or cargo.</p> <p>(3) The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may disclos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or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Act to the provincial public health authority if</p>	<p>한 빨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공중보건당국에게 알려야 한다.</p> <p>(a) 제35조에 의하여 운송수단이 이동되었다.</p> <p>(b) 환경보건관리자가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명령을 하였다.</p> <p>(2) 환경보건관리자는 알려진 정도까지 지방공중보건당국에 운송수단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p> <p>(a) 운송수단과 그의 여행 일정에 대한 설명</p> <p>(b)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명령된 모든 것들과 명령의 이유</p> <p>(c) 당해 전염병</p> <p>(d) 운송수단 운영자와 운송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과 위치</p> <p>(3) 환경보건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얻은 기밀 사업 정보 또는 개인 정보의 누설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지방공중보건당국에 밝힐 수 있</p>
---	---

<p>the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isclosure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a communicable disease.</p>	<p>다.</p>
<p>41. (1) A person who is subject to an order referred to in section 39 shall pay any cost of carrying out the order.</p> <p>(2)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may detain the conveyance and its contents until the cost of carrying out the order has been paid.</p>	<p>41. (1) 제39조의 명령의 대상인 사람은 명령을 실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p> <p>(2) 환경보건관리자는 명령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운송수단과 그 내부 물건을 구류할 수 있다.</p>
<p>42. (1)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carrying persons or cargo shall, when required by the Minister to do so, deposit with the Minister any sum of money or other security that the Minister considers necessary as a guarantee that the person will comply with this Act.</p> <p>(2) The Minister may pay from the deposited money, or the proceeds of sale of the security, a fine or costs incurred by the person if</p> <p>(a) the person fails to pay any amount under subsection 41(1) or publication costs under paragraph 80(1)(g) or subsection 80(3); or</p> <p>(b) the person is convicted of an</p>	<p>42. (1)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그가 이 법을 준수할 것을 보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장관이 생각하는 금액 또는 기타 보증을 장관에게 공탁해야 한다.</p> <p>(2) 장관은 공탁된 금액 또는 공탁의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 사람으로 인한 벌금 또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p> <p>(a) 사람이 제41조제1항에 의한 금액 또는 제80조제1항 각호 (g)나 제80조제3항에 의한 출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p> <p>(b)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유죄가 입증</p>

<p>offence under this Act and fails to pay a fine.</p>	<p>되고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다.</p>
<p>(3) The Minister shall return the money or other security if, in the opinion of the Minister, that security is no longer required.</p>	<p>(3) 장관은 보증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라면 돈 또는 기타 보증을 돌려주어야 한다.</p>
<p>43. The Minister may compensate the owner of any conveyance, cargo or other thing that is damaged or destroyed under section 39 or 40 in an amount equal to the market value,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that the property had at the time of its damage or destruction, less any amount that the owner received or is entitled to receive in respect of it from salvage, insurance or any other source.</p>	<p>43. 장관은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하여 손상·파괴된 운송수단, 화물 또는 기타 물건의 소유자에게 장관이 결정하는 소유물의 손상·파괴 당시의 시장가치와 동일한 금액에서 구조사례액, 보험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수령하거나 수령할 자격이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p>
<p>CADAVERS, BODY PARTS AND OTHER HUMAN REMAINS</p>	<p>시체, 신체부위 및 기타 유해</p>
<p>44. (1) Every operator carrying a cadaver, a body part or other human remains into Canada shall provide a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 to the screening officer at the entry point.</p>	<p>44. (1) 시체, 신체부위 또는 기타 유해를 캐나다로 반입하는 운영자는 입국지점의 선별검사관에게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p>
<p>(2) If the operator does not provide a death certificate or the screening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cadaver, body part or other human remains have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p>	<p>(2) 운영자가 사망진단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선별검사관이 시체, 신체부위 또는 기타 유해에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한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선별검사관은 즉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이와 관련한 검역관</p>

<p>or are infested with vectors, the screen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inform a quarantine officer and follow any directive of that officer respecting the matter.</p>	<p>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p>
<p>(3) The operator shall comply with any directive of the quarantine officer respecting the cadaver, body part or other human remains.</p>	<p>(3) 운영자는 시체, 신체부위 또는 기타 유해와 관련한 검역관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p>
<p>45. No person shall export a cadaver, a body part or other human remains that have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listed in the schedule unless the exportat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r is authorized by the Minister.</p>	<p>45. 누구든지 규정을 따르거나 장관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표에 포함된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시체, 신체부위 또는 기타 유해를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6. Sections 44 and 45 do not apply to the import or export of cells, tissues or organs for transplantation that are imported or ex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Food and Drugs Act.</p>	<p>46. 제44조 및 제45조는 식품약품법에 따라서 수입·수출되는 이식용 세포, 조직 또는 장기의 수입·수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GENERAL POWERS</p>	<p>총 권한</p>
<p>47. (1)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may, to determine whether a conveyance or place, or any contents within it, could be the source of a communicable disease, or whether a traveller has or</p>	<p>47. (1)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는 운송 수단이나 장소 또는 그 내부 물건이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여행자가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p>

<p>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is infested with vectors, and to enforce this Act,</p> <p>(a) stop a conveyance, at an entry or departure point or anywhere else in Canada, and direct that it be moved to a place where an inspection can be carried out;</p> <p>(b) enter and inspect the conveyance or any place where the conveyance has been;</p> <p>(c) open and examine any cargo, container, baggage, package or other thing;</p> <p>(d) require any person to produce any record under any terms and conditions that, in the opinion of the officer,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inspection;</p> <p>(e) except with respect to a traveller, conduct or cause to be conducted any test or analysis or take or cause to be taken any sample; and</p> <p>(f) except with respect to a traveller, take any measurement.</p> <p>(2) In conducting the inspection, the officer may</p> <p>(a) use or cause to be used any computer or data processing system to examine any data contained in or available to it;</p>	<p>각호를 할 수 있다.</p> <p>(a) 캐나다의 입국·출발지점 또는 기타 장소에서 운송수단을 정지시키고 검사가 실시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휘한다.</p> <p>(b)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이 있었던 장소에 들어가서 검사한다.</p> <p>(c) 화물, 컨테이너, 수화물 또는 기타 물건을 열고 검사한다.</p> <p>(d)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의 견해로 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어떤 조건에서든 누구에게나 요구한다.</p> <p>(e) 여행자와 관련한 때를 제외하고 검사나 분석을 실행하거나 실행하도록 유발하거나, 표본을 뽑거나 뽑도록 한다.</p> <p>(f) 여행자와 관련한 때를 제외하고 수치 측정을 한다.</p> <p>(2) 검사를 실시할 때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를 할 수 있다.</p> <p>(a) 그 내부에 포함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조사하기 위하여 컴퓨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한다.</p>
---	--

<p>(b) obtain data in the form of a printout or other intelligible output and take the printout or other output for examination or copying; and</p> <p>(c) use or cause to be used any copying equipment to make copies of any record or other document.</p> <p>(3) A screening officer may exercise any of the powers set out in this section, other than those set out in paragraph (1)(e).</p>	<p>(b) 인쇄물 또는 기타 명료한 산출의 형태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조사 또는 복사한다.</p> <p>(c) 기록 또는 기타 자료의 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복사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한다.</p> <p>(3) 선별검사관은 제1항 각호 (e)를 제외한 이 단락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p>
<p>48. (1) A quarantine officer and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may not enter or inspect a dwelling-place without the consent of its occupant except under the authority of a warrant.</p> <p>(2) A justice may, on ex parte application, at any time sign and issue a warrant authorizing the officer named in it to enter and inspect a dwelling-place, subject to any conditions that may be specified in the warrant, if the justice is satisfied by information on oath that</p> <p>(a) the dwelling-place or its contents could be the source of a communicable disease;</p> <p>(b) entry to the dwelling-place is</p>	<p>48. (1) 검역관 및 환경보건관리자는 영장의 권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때에는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처에 들어가서 검사할 수 없다.</p> <p>(2) 재판관은 선서된 정보가 다음 각호의 경우라고 만족할 때에는 일방적인 신청으로 영장을 서명하고 발부하여 영장에 지명된 검역관·환경보건관리자가 영장에 지정된 조건에서 거처에 들어가 검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p> <p>(a) 거처 또는 그 내부 물건이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p> <p>(b) 거처에 들어가는 것이 이 법의 집행</p>

<p>necessary for a purpose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and</p> <p>(c) entry to the dwelling-place has been refused or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it will be refused.</p> <p>(3)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who executes a warrant shall not use force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a peace officer and the use of force is specifically authorized in the warrant.</p>	<p>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p> <p>(c) 거처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되었거나 거절될 것이라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p> <p>(3) 영장을 집행하는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는 보안관이 동반하고 영장이 명확히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9. A quarantine officer and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are public officers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section 487 of the Criminal Code in respect of an offence under this Act.</p>	<p>49. 검역관 및 환경보건관리자는 이 법의 위반에 관련하여 형법 제487조 적용의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이다.</p>
<p>50. The owner or the person in charge of a place or conveyance inspected by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under section 47 and any person found in the place shall</p> <p>(a) give the officer all reasonable assistance to enable the officer to perform their duties and functions under this Act; and</p> <p>(b) provide the officer with any information relevant to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that the</p>	<p>50. 제47조에 의하여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에 의해 검사되는 장소나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그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과 장소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p> <p>(a)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가 이 법에 의한 의무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에게 모든 정당한 협조를 한다.</p> <p>(b)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그에게 제공한다.</p>

<p>officer may reasonably request.</p> <p>51.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may order any person to provide any information or record in their possession about a traveller that the officer may reasonably require in the performance of the officer's duties and functions under this Act, or to give the officer access to such information.</p>	<p>51.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는 누구에게나 이 법에 의한 의무와 기능을 수행하는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행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기록을 제공하도록 명령하거나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52. A peace officer shall provide any assistance that an officer acting under this Act may request for the purpose of administering or enforcing this Act.</p>	<p>52. 보안관은 이 법에 의하여 행동하는 선별검사관, 검역관, 환경보건관리자 등이 이 법의 집행·시행의 목적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p>
<p>53. A screening officer,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may exercise any power or perform any duty or function under this Act respecting a traveller or conveyance at an entry point in another country if doing so does not conflict with the laws of that country.</p>	<p>53. 선별검사관,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는 외국의 입국지점에 있는 여행자 또는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외국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INFORMATION</p>	<p>정보</p>
<p>54. (1) A person who, in good faith, reports to a screening officer,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a contravention of this Act by another person, or the reasonable likelihood of such a contravention, may request that their</p>	<p>54. (1) 다른 사람에 의한 이 법의 위반 또는 위반의 정당한 가능성을 선별검사관,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에게 선의(善意)로 보고하는 사람은 그의 고용주 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과 신분을 정당하게 노출할 수 있는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identity, and any information that could reasonably reveal their identity, not be disclosed to their employer or the other person.</p>	
<p>(2) Subject to any other Act of Parliament, no person shall disclose or permit the disclosure of that identity or information unless authorized in writing by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p>	<p>(2) 의회의 기타 법에 의하여 요청자가 서면으로 권한을 주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누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Despite any other Act of Parliament, no person shall dismiss, suspend, demote, discipline, deny a benefit of employment to, harass or otherwise disadvantage a person for having</p>	<p>(3) 의회의 기타 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해고·정직하거나 지위를 떨어뜨리거나 징벌하거나 고용의 이익을 거절하거나 괴롭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p>
<p>(a) made a report under subsection (1);</p>	<p>(a)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한 사람</p>
<p>(b) refused or stated an intention of refusing to do anything that they believed on reasonable grounds was or would be a contravention under this Act; or</p>	<p>(b)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이 법의 위반이거나 위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할 것을 거절하거나 거절할 의도를 밝힌 사람</p>
<p>(c) done or stated an intention to do anything that they believed on reasonable grounds was required under this Act.</p>	<p>(c)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거나 할 의도를 밝힌 사람</p>
<p>55. The Minister may collect relevant medical information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Act.</p>	<p>55.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의학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56. (1) The Minister may disclose</p>	<p>56. (1) 장관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거나</p>

<p>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or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Act to a department or to an agency of the Government of Canada or of a province, a government or public health authority, whether domestic or foreign, a health practitioner or an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 if the Minist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isclosure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a communicable disease or to enable Canada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p>	<p>캐나다의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 법에 의하여 얻은 기밀 사업 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캐나다 정부 또는 주(州) 정부의 부서·기관, 국내·국외 정부당국 또는 공중보건당국, 의료인 또는 국제보건기구에 밝힐 수 있다.</p>
<p>(2) The Minister may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Act to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carrying persons or cargo, or to a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rganization, if the Minist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r has recently been in close proximity to a person who has or might have a communicable disease, and that the disclosure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disease.</p>	<p>(2) 장관은 정보와 관련한 사람이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전염병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최근에 근접하였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 법에 의하여 얻은 개인 정보를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국제운송기구에 밝힐 수 있다.</p>
<p>(3) If any personal information or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s</p>	<p>(3) 이 조에 의하여 개인 정보 또는 기밀 사업 정보가 밝혀졌을 때에는 장관은</p>

<p>disclosed under this section,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person or business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of the disclosure.</p>	<p>이 사실을 정보와 관련한 사람 또는 사업에 통지해야 한다.</p>
<p>57. If the Minister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information obtain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would be relevant to investigating or prosecuting an offence under Part II.1 of the Criminal Code involving an infectious agent or biological toxin, the Minister may disclose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a peace offic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name, sex, age and date of birth of the traveller; (b) a photograph of the traveller and any other means of identifying them; (c) the traveller's itinerary, home address and location; (d) the description of any conveyance used for carrying the traveller; (e) the name of the infectious agent or biological toxin; and (f) the manner in which the traveller may have acquired the communicable disease or vectors. 	<p>57. 장관은 이 법의 집행에서 얻은 정보가 감염물질 또는 생물학적 독성물질과 관련한 형법 II.1의 위반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장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보안관에게 밝힐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여행자의 이름, 성별, 나이 및 생년월일 (b) 여행자의 사진과 그의 신원을 확인할 기타 수단 (c) 여행자의 여행 일정, 집주소와 위치 (d) 여행자를 이동하는 데 사용된 모든 운송수단의 설명 (e) 감염물질 또는 생물학적 독성물질의 명칭 (f) 여행자가 전염병 또는 매개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p>EMERGENCY ORDERS</p>	<p>응급명령</p>
<p>58. (1) The Governor in Council may</p>	<p>58. (1) 총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한 견</p>

<p>make an order prohibiting or subjecting to any condition the entry into Canada of any class of persons who have been in a foreign country or a specified part of a foreign country if the Governor in Council is of the opinion that</p> <p>(a) there is an outbreak of a communicable disease in the foreign country;</p> <p>(b) the introduction or spread of the disease would pose an imminent and severe risk to public health in Canada;</p> <p>(c) the entry of members of that class of persons into Canada may introduce or contribute to the spread of the communicable disease in Canada; and</p> <p>(d) no reasonable alternative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r spread of the disease are available.</p> <p>(2) The order has effect for the period specified in it and may be renewed if the conditions in subsection (1) continue to apply.</p>	<p>해일 경우 외국 또는 외국의 지정된 장소에 있었던 사람의 집단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명령을 할 수 있다.</p> <p>(a) 외국에 전염병이 발병하였다.</p> <p>(b) 질병의 유입 또는 확산이 캐나다 공중보건에 긴급하고 심한 위험을 줄 것이다.</p> <p>(c) 집단의 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캐나다에서의 전염병의 확산을 시작하거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p> <p>(d) 전염병의 유입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대안이 없다.</p> <p>(2) 명령은 명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제1항의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적용될 때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p>
<p>59.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an order prohibiting or subjecting to any condition the importing of any thing into Canada or any part of Canada, either</p>	<p>59. 총독은 캐나다 또는 캐나다의 어떤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또는 명령에 명시된 장소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캐나다에서의 전염병의 유입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p>

<p>generally or from any place named in the order, for any period that the Governor in Council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introduction or spread of a communicable disease in Canada.</p>	<p>여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기간 동안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명령을 할 수 있다.</p>
<p>60. (1) The Minister may make an interim order containing any provision that could be contained in a regulation made under section 62 or 63 if the Minister is of the opinion that immediate action is required to deal with a significant risk, direct or indirect, to public health.</p> <p>(2) The interim order has effect from the time that it is made but ceases to have effect on the earliest of</p> <p>(a) 14 days after the day on which it is made, unless it is approved by the Governor in Council,</p> <p>(b) the day on which it is repealed,</p> <p>(c) the day on which a regulation made under section 62 or 63 that has the same effect as the interim order comes into force, and</p> <p>(d) one year after the day on which it is made or any shorter period that it specifies.</p> <p>(3) For the purpose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other than this section, any</p>	<p>60. (1) 장관은 공중보건의 중대한 직접적·간접적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라면 제62조 또는 제63조에 의한 규칙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임시명령을 할 수 있다.</p> <p>(2) 임시명령은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다음 각 호 중 가장 이른 경우까지 유효하다.</p> <p>(a) 총독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14일 후</p> <p>(b) 임시명령이 철회되는 날</p> <p>(c) 임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제62조 또는 제63조에 의한 규칙이 유효하게 되는 날</p> <p>(d) 임시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또는 그것이 정하는 그보다 짧은 기간 후</p> <p>(3) 이 조항을 제외한 규정의 목적 상, 이 법에 의한 규칙에 대한 참조는 임시명</p>

<p>reference to regulations made under this Act is deemed to include interim orders, and any reference to a regulation made under a specified provision of this Act is deemed to include a reference to any portion of an interim order containing a provision that may be contained in a regulation made under the specified provision.</p>	<p>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의 특정한 규정에 의한 규칙은 이 규정에 의한 규칙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임시명령의 일부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
<p>61. (1) An order made under any of sections 58 to 60</p> <p>(a) is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sections 3, 5 and 11 of the Statutory Instruments Act; and</p> <p>(b) shall be published in the Canada Gazette within 23 days after the day on which it is made.</p> <p>(2) A copy of the order shall be tabled in each House of Parliament within 15 days after the day on which it is made.</p> <p>(3) In order to comply with subsection (2), the order may be sent to the Clerk of the House if the House is not sitting.</p> <p>(4)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of an offence consisting of a contravention of the order if, at the time of the alleged contravention, the order had</p>	<p>61. (1) 제58조 내지 제60조에 의해 내려진 명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p> <p>(a) 위임명령법 제3조·제5조·제11조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p> <p>(b)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23일 이내 캐나다 공보에 공포되어야 한다.</p> <p>(2)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 명령의 사본은 각 의회에 상정되어야 한다.</p> <p>(3) 제2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령은 의회가 개최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회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다.</p> <p>(4) 추정된 위반 시기에 캐나다 공보에 명령이 공포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명령의 위반으로 유죄가 선언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정된 위반 시기에 사람이</p>

<p>not been published in the Canada Gazette, unless it is proved that, at the time of the alleged contravention, the person had been notified of the order or reasonable steps had been taken to bring the purport of the order to the notice of persons likely to be affected by it.</p>	<p>명령에 대해 통지를 받았거나 명령의 취지에 명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정당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는 제외한다.</p>
<p>REGULATIONS</p>	<p>규칙</p>
<p>62.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p> <p>(a) respecting physical examinations carried out for the purposes of a health assessment;</p> <p>(a.1) respecting any compensation that is to be paid under this Act;</p> <p>(b) respecting the types of costs that a person is not required to pay under section 41;</p> <p>(c) respecting the location, design, construction, installation, operation, maintenance, marking and modification of a quarantine facility or quarantine station;</p> <p>(c.1) respecting the specifications for areas and facilities provided under subsection 6(2);</p> <p>(d) respecting the process of review under section 29;</p> <p>(e) respecting the information to be</p>	<p>62 총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p> <p>(a) 건강평가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된 검진을 존중한다.</p> <p>(a.1) 이 법에 의하여 지불될 보상을 존중한다.</p> <p>(b) 제41조에 의한,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비용의 종류를 존중한다.</p> <p>(c) 검역시설 또는 검역소의 위치, 설계, 설치, 운영, 유지, 표하기 및 수정을 존중한다.</p> <p>(c.1)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규정된 지역과 시설의 내역을 존중한다.</p> <p>(d) 제29조에 의한 심의 과정을 존중한다.</p> <p>(e) 운송수단의 운영자 및 탑승한 여행자</p>

<p>provided by the operator of a conveyance and any other traveller on board;</p> <p>(f) respecting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a traveller;</p> <p>(g)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rivacy Commissioner, as defined in the Privacy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p> <p>(h) respecting the place and manner of embarkation of travellers at a departure point, or disembarkation of travellers at an entry point, and the loading and unloading of goods and cargo onto and from a conveyance;</p> <p>(i) respecting the methods of disinfecting, disinfecting, decontaminating or fumigating conveyances, goods, cargo and places and of disinfecting travellers;</p> <p>(j) respecting the declaration of health referred to in paragraph 39(1)(f);</p> <p>(k) respecting the carrying into Canada of, the exporting from Canada of, or the transportation and the handling of, cadavers, body parts or other human remains that have, or are suspected of having, a communicable disease or that are, or are suspected of being, infested with</p>	<p>가 제공하는 정보를 존중한다.</p> <p>(f) 여행자가 제공할 정보를 존중한다.</p> <p>(g) 프라이버시법에 정의된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협의한 후 개인 정보의 보호를 존중한다.</p> <p>(h) 출발지점에서의 여행자의 탑승 또는 입국지점에서의 여행자의 입국의 장소 및 방법 및 운송수단의 물건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소 및 방법을 존중한다.</p> <p>(i) 운송수단, 물건, 화물 및 장소를 살균하거나 해충을 없애거나 오염을 제거하거나 훈증소독하고 여행자로부터 해충을 없애는 방법을 존중한다.</p> <p>(j) 제39조제1항 각호(f)의 보건신고서를 존중한다.</p> <p>(k) 전염병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이 되거나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이 되는 시체, 신체부위 또는 기타 유해의 캐나다로의 유입, 캐나다로부터의 수출, 또는 이동 및 취급을 존중한다.</p>
--	---

<p>vectors;</p> <p>(l) respecting the process for applications to the Federal Court for matters under this Act;</p> <p>(m) exempting any person or class of persons from the application of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p> <p>(n) respecting anything that may be prescribed under this Act; and</p> <p>(o) generally,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and provisions of this Act.</p>	<p>(l) 이 법에 의한 사항을 위하여 연방법원에 신청을 하는 과정을 존중한다.</p> <p>(m) 이 법의 규정들 전체 또는 그의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면제한다.</p> <p>(n)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을 존중한다.</p> <p>(o) 일반적으로 이 법의 목적 및 규정을 시행한다.</p>
<p>62.1 (1) The Governor in Council may not make a regulation under section 62 unless the Minister has first caused the proposed regulation to be laid before both Houses of Parliament.</p> <p>(2) A proposed regulation that is laid before a House of Parliament is deemed to be automatically referred to the appropriate committee of that House, as determined by the rules of that House, and the committee may conduct inquiries or public hearing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regulation and report its findings to that House.</p> <p>(3)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a regulation under section 62 only if</p> <p>(a) neither House has concurred in any report from its committee respecting</p>	<p>62.1 (1) 총독은 장관이 먼저 규칙(안)이 양 의회에 상정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2조에 의하여 규칙을 규정할 수 없다.</p> <p>(2) 의회에 상정된 규칙(안)은 의회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 대로 의회의 적절한 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의뢰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규칙(안)에 대한 조사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p> <p>(3) 총독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만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p> <p>(a) 양 의회는 규칙(안)과 관련한 위원회의 보고를 규칙(안)이 제출된 날로부</p>

<p>the proposed regulation before the end of 30 sitting days or 160 calendar days, whichever is earlier, after the day on which the proposed regulation was laid before that House, in which case the regulation may be made only in the form laid;</p> <p>or</p>	<p>터 개최일 30일 또는 역일 160일 중 먼저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인하지 않았으며 규칙은 오로지 제출된 형태로만 규정될 수 있다.</p>
<p>(b) both Houses have concurred in reports from their committees approving the proposed regulation or a version of it amended to the same effect, in which case the regulation may be made only in the form concurred in.</p>	<p>(b) 양 의회는 위원회가 규칙(안)을 시인하거나 같은 효력을 갖는 개정된 규칙(안)을 승인하는 보고를 시인하였으며 규칙은 오로지 시인된 형태로만 규정될 수 있다.</p>
<p>(4)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sitting day" means a day on which the House in question sits.</p>	<p>(4) 이 조항의 목적 상, "개회일"이라 함은 당해 의회가 개최된 날을 의미한다.</p>
<p>62.2 (1) A regulation may be made without being laid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if the Minister is of the opinion that</p>	<p>62.2 (1) 규칙은 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견해일 때에는 양 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규정될 수 있다.</p>
<p>(a) the changes made by the regulation to an existing regulation are so immaterial or insubstantial that section 62.1 should not apply in the circumstances; or</p>	<p>(a) 규칙에 의해 현행 규칙에 생기는 변화가 너무 미미하여 제62.1조가 이 상황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b) the regulation must be made immediately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or safeguard the safety of the</p>	<p>(b) 규칙은 공중의 보건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규정되어야 한다.</p>

<p>public.</p> <p>(2) If a regulation is made without being laid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the Minister shall cause to be laid before each House a statement of the reasons why it was not.</p>	<p>(2) 규칙이 양 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규정 되면 장관은 규칙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문이 양 의회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p>
<p>63.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p> <p>(a) amending the schedule by adding, deleting or amending the name of any communicable disease; and</p> <p>(b) designating the authority to whom operators of conveyances shall report when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Canada.</p>	<p>63.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p> <p>(a) 전염병의 명칭을 추가·삭제·수정함으로써 별표를 개정한다.</p> <p>(b) 운송수단의 운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캐나다를 출국할 때 보고해야 하는 당국을 지정한다.</p>
<p>STATUTORY INSTRUMENTS ACT</p> <p>64. For greater certainty, orders made under this Act by the Minister, a screening officer,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including orders made under subsection 15(3) or 25(1), section 26 or 35, subsection 39(1) or 44(3) or section 51, are not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Statutory Instruments Act.</p>	<p>위임명령법</p> <p>64. 분명히 장관, 선별검사관,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가 이 법에 의하여 내리는 명령은 (제15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4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 위임명령법의 목적 상 규칙이 아니다.</p>
<p>OFFENCES AND PUNISHMENT</p> <p>65. (1) No person shall enter a quarantine facility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a</p>	<p>위반과 벌칙</p> <p>65. (1) 누구든지 검역관의 허가 없이 검역시설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p>

<p>quarantine officer.</p> <p>(2) No person shall leave a quarantine facility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a quarantine officer.</p>	<p>(2) 누구든지 검역관의 허가 없이 검역시설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p>
<p>66. No person shall hinder or wilfully obstruct a quarantine officer, a screening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who is carrying out their duties or functions under this Act, or make a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either orally or in writing, to the officer.</p>	<p>66.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의무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검역관, 선별검사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를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막거나 이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허위 또는 오해하기 쉬운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7. (1) Every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they cause a risk of imminent death or serious bodily harm to another person while wilfully or recklessly contravening this Act or the regulations.</p> <p>(2) Every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is liable</p> <p>(a)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to both; and</p> <p>(b)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30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six months, or to both.</p>	<p>67. (1) 이 법 또는 동법시행규칙을 의도적으로 또는 분별없이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긴급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죄이다.</p> <p>(2)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p> <p>(a) 기소에 의한 유죄선고의 경우,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에 처한다.</p> <p>(b) 약식 기소의 경우, 3십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에 처한다.</p>

<p>68. Every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bligation imposed under subsection 15(3) or 25(1) or section 26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20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six months, or to both.</p>	<p>68. 제15조제3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의한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위반죄가 있으며 약식 기소로 2십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에 처한다.</p>
<p>69. Every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bligation imposed under section 35, subsection 39(1) or 44(3) or section 51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75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six months, or to both.</p>	<p>69. 제35조, 제39조제1항, 제44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의한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위반죄가 있으며 약식 기소로 7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에 처한다.</p>
<p>70. Every person who contravenes section 12 or 13, subsection 15(1) or section 65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20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six months, or to both.</p>	<p>70.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또는 제65조를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죄가 있으며 약식 기소로 2십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에 처한다.</p>
<p>71. Ever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6(2), 8(1) or 34(1), (2) or (4), section 36 or 38, subsection 42(1), section 45 or 50, subsection 54(3), section 58 or 59 or subsection 73(2) or the regulations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p>	<p>71.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 제42조제1항, 제45조,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8조, 제59조, 제73조제2항 또는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죄가 있으며 약식 기소로 7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p>

<p>summary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75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six months, or to both.</p>	<p>징역에 처한다.</p>
<p>72. Ever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5(2) or section 66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p> <p>(a)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of not more than \$50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to both; or</p> <p>(b)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20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six months, or to both.</p>	<p>72. 제15조제2항 또는 제66조를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죄가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p> <p>(a) 기소에 의한 유죄선고의 경우, 5십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에 처한다.</p> <p>(b) 약식 기소의 경우, 2십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에 처한다.</p>
<p>RELATED PROVISIONS</p>	<p>관련 규정</p>
<p>73. (1) If a corporation commits an offence under this Act, any officer, director or agent or mandatary of the corporation who directed, authorized, assented to, acquiesced in or participated in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is a party to, and guilty of, the offence and liable on conviction to the punishment provided for the offence, whether or not the corporation has been prosecuted or convicted.</p>	<p>73. (1) 이 법에 의한 위반을 법인이 행하였을 때에는 위반 임무를 지도·허가·찬성·묵인·참가한 법인의 직원, 관리자, 대행자 또는 대리인은 공범자이고 위반죄가 있으며 법인의 기소 또는 유죄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죄에 규정된 벌칙에 처한다.</p>

<p>(2) Every director and officer of a corporation shall take all reasonable care to ensure that the corporation complies with this Act and the regulations.</p>	<p>(2) 법인의 관리자 및 직원은 법인이 이 법 및 동법 규칙을 따르는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정당한 주의를 할 것이다.</p>
<p>74. In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it is sufficient proof of the offence to establish that it was committed by an employee or agent or mandatory of the accused, whether or not the employee or agent or mandatory is identified or has been prosecuted for the offence, unless the accused establishes that</p>	<p>74. 이 법에 대한 위반의 기소에서 피고인의 직원, 대행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위반이 행해졌다고 입증하는 것이 그의 신원확인 또는 기소 여부에 상관없이 위반에 대한 충분한 증거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 각호를 확증할 경우는 제외한다.</p>
<p>(a) the offence was committed without the accused's knowledge or consent; and (b) the accused exercised all due diligence to prevent its commission.</p>	<p>(a) 위반에 대해 피고인은 알지 못 하였고 동의하지 않은 채로 범해졌다. (b) 피고인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당한 노력을 실행하였다.</p>
<p>75. If an offence under this Act is continued on more than one day, the person who committed it is liable to be convicted for a separate offence for each day on which it is continued.</p>	<p>75. 이 법에 대한 위반이 1일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위반자는 위반이 계속되는 1일마다 개개의 위반죄에 대한 유죄 선고에 처한다.</p>
<p>76. (1) A proceeding by way of summary conviction in respect of an offence under this Act may be commenced at any time within two years after the day on which the Minister becomes</p>	<p>76. (1) 이 법에 대한 위반과 관련한 약식 기소에 의한 절차는 절차의 내용이 장관이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작될 수 있다.</p>

<p>awar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proceeding.</p> <p>(2) A document purporting to have been issued by the Minister, certifying the day on which the Minister became awar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proceeding, is evidence of that fact without proof of the signature or official character of the person appearing to have signed it and without further proof.</p>	<p>(2) 절차의 내용을 장관이 알게 된 날을 확인하는 장관이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서명 또는 직인 없이, 또 추가 증거 없이 이 사실의 증거이다.</p>
<p>77. An information in respect of an offence under this Act may be tried, determined or adjudged by a summary conviction court if the defendant is resident or carrying on business within the territorial division of the court, even if the matter of the information did not arise in that territorial division.</p>	<p>77. 이 법에 대한 위반과 관련한 정보는 약식기소 재판소의 구역 내에 피고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는 정보의 사항이 그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재판소에 의해 재판·재정·판결될 수 있다.</p>
<p>78. (1) A quarantine officer or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may submit to an analyst, for analysis or examination, any sample taken under paragraph 47(1)(e).</p> <p>(2) A certificate of an analyst stating that the analyst has analyzed or examined a sample and stating the result of the analysis or examination is evidence of the statements contained in the</p>	<p>78. (1) 검역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는 제47조제1항 각호 (e)의 표본을 분석 또는 검사의 목적을 위하여 분석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2) 분석가가 표본을 분석 또는 검사하였다는 사실 및 분석·검사의 결과를 진술하는 분석가의 증명서는 그것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서명 또는 직인 없이 증명서의 진술의 증거가 된다.</p>

<p>certificate without proof of the signature or the official character of the person appearing to have signed it.</p>	
<p>(3) The party against whom the certificate is produced may, with leave of the court, require the attendance of the analyst for the purpose of cross-examination.</p>	<p>(3) 증명서 제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로 반대신문을 위하여 분석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4) The certificate may not be received in evidence unless the party who intends to produce it has given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tended to be produced reasonable notice of that intention, together with a copy of the certificate.</p>	<p>(4) 증명서는 이를 제출할 의도가 있는 당사자가 증명서 제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이 의도에 대해 정당한 통지 및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p>
<p>79. If an offender is convicted of an offence under this Act, the court may suspend the passing of sentence and may make an order that the offender comply with any condition that has any or all of the effects described in section 80.</p>	<p>79. 위반자가 이 법에 의하여 유죄 선고를 받을 때에는 법원은 형의 선고를 보류할 수 있고 위반자가 제80조의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는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p>
<p>80. (1) If an offender is convicted of an offence under this Act, the court may,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the offence an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its commission, in addition to any other punishment that may be imposed under this Act,</p>	<p>80. (1) 위반자가 이 법에 의하여 유죄 선고를 받을 때에는 법원은 위반행위의 성질과 범행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하여 과해지는 처벌에 더하여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다.</p>

<p>make an order that has any or all of the following effects:</p> <p>(a) prohibiting the offender from committing an act or engaging in an activity that ma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result in the continuation or repetition of the offence;</p> <p>(b) directing the offender to take any measures that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to avoid harm to public health that results from or may result from the act or omission that constituted the offence, or to remedy that harm;</p> <p>(c) directing the offender to publish, in any manner that the court directs, at the offender's own expense, the facts relating to the offence and an apology for any harm caused by the offence;</p> <p>(d) directing the offender, at the offender's own expense, to notify any person who is aggrieved or affected by the offender's conduct of the facts relating to the conviction;</p> <p>(e) directing the offender to post a bond or pay an amount of money into court that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to ensure compliance with any condition required under this section;</p>	<p>(a) 위반자가 법원의 견해로 위반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유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범하거나 행위에 관계하는 것을 금지한다.</p> <p>(b)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유래되거나 유래될 수 있는 공중보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법원이 고려하는 조치를 위반자가 취하도록 지도한다.</p> <p>(c) 위반자가 법원이 지도하는 방법으로 위반자의 부담으로 위반죄와 관련한 사실사항과 위반죄로 인해 유래된 위험에 대한 사과를 출판하도록 지도한다.</p> <p>(d) 위반자가 위반자의 부담으로 그의 유죄 선고와 관련한 사실의 행동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지도한다.</p> <p>(e)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법원이 고려하는 보증금 또는 금액을 법원에게 지불하도록 지도한다.</p>
---	--

<p>(f) directing the offender to submit to the Minister, on application by the Attorney General of Canada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onviction, any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offender's activities that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p> <p>(g) directing the offender to compensate the Minister, in whole or in part, for the cost of any remedial or preventive measure taken by the Minister as a result of the act or omission that constituted the offence;</p> <p>(h) directing the offender to perform community service, subject to any reasonable conditions that may be imposed by the court;</p> <p>(i) directing the offender to pay an amount that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research; and</p> <p>(j) requiring the offender to comply with any other conditions that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for securing the offender's good conduct and for preventing the offender from repeating the same offence or committing another offence under this Act.</p>	<p>(f) 위반자가 유죄선고 이후 3년 이내에 있는 캐나다 법무장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황에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위반자의 행동과 관련한 정보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한다.</p> <p>(g) 위반자가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서 장관이 취한 치료적·예방적 조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관에게 배상하도록 지도한다.</p> <p>(h) 위반자가 법원이 부과하는 정당한 조건에 의한 사회봉사를 하도록 지도한다.</p> <p>(i) 연구를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법원이 고려하는 금액을 위반자가 지불하도록 지도한다.</p> <p>(j) 위반자의 선행을 확보하고 동 위반을 반복하거나 이 법의 기타 위반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절하다고 법원이 고려하는 기타 조건을 위반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한다.</p>
---	--

<p>(2) An order made under section 79 or subsection (1) comes into force on the day on which the order is made or on any other day that the court determines but may not continue in force for more than three years after that day.</p>	<p>(2) 제79조 또는 제1항에 의한 명령은 명령이 내려진 날 또는 법원이 정하는 기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명령은 그 날로부터 3년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p>
<p>(3) If an offender does not comply with an order requiring the publication of facts relating to the offence, the Minister may publish the facts and recover the costs of publication from the offender.</p>	<p>(3) 위반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실사항을 출판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장관은 사실사항을 출판하고 출판 비용을 위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p>
<p>(4) If the court orders the offender to compensate the Minister or if the Minister incurs publication costs under paragraph (1)(g) or subsection (3), the costs incurred by the Minister constitute a debt due to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and may be recovered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p>	<p>(4) 법원이 위반자로 하여금 장관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거나 장관이 제1항 각호 (g) 또는 제3항에 의한 출판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장관이 초과한 비용은 캐나다의 권리로 국왕에 대한 빚이 되며 재판관할의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p>

SCHEDULE (Section 2, subsections 15(2) and 34(1) and sections 45 and 63)	별표 (제2조, 제15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5조 및 제63조)
Active pulmonary tuberculosis	활동성 폐결핵
Anthrax	탄저
Argentine hemorrhagic fever	아르헨티나 출혈열
Bolivian hemorrhagic fever	볼리비아 출혈열
Botulism	보툴리누스증
Brazilian hemorrhagic fever	브라질 출혈열
Cholera	콜레라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크리미아-콩고 출혈열
Diphtheria	디프테리아
Ebola hemorrhagic fever	에볼라 출혈열
Lassa fever	라싸 열
Marburg hemorrhagic fever	마르부르크 출혈열
Measles	홍역
Meningococcal meningitis	수막구균성 수막염
Meningococemia	수막구균혈증
Pandemic influenza type A	A형 유행성 독감
Plague	페스트
Poliomyelitis	소아마비
Rift Valley fever	리프트 계곡 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Smallpox	천연두
Tularemia	야토병
Typhoid fever	장티푸스
Venezuelan hemorrhagic fever	베네수엘라 출혈열
Yellow fever	황열

캐나다 검역법 시행규칙

<p>QUARANTINE REGULATIONS</p>	<p>검역법 시행규칙</p>
<p>SHORT TITLE</p>	<p>소제목</p>
<p>1. These Regulations may be cited as the Quarantine Regulations.</p>	<p>1. 이 규칙은 검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p>
<p>INTERPRETATION</p>	<p>정의</p>
<p>2. In these Regulations, "Act" means the Quarantine Act.</p>	<p>2. 이 규칙에서 "법"이라 함은 검역법을 의미한다.</p>
<p>INCUBATION PERIODS</p>	<p>잠복기</p>
<p>3. The incubation periods for the following 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s a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cholera, five days; (b) plague, six days; (c) smallpox, 14 days; (d) yellow fever, six days; (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 days; (f) Pandemic Influenza Type A, 10 days; (g) Lassa fever or Marburg disease, 21 days; and (h) Argentine, Bolivian, Brazilian, Crimean-Congo, Ebola or Venezuelan haemorrhagic fever, 21 days. 	<p>3. 다음 감염성·전염성 질병의 잠복기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콜레라, 5일; (b) 페스트, 6일; (c) 천연두, 14일; (d) 황열, 6일; (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20일; (f) A형 유행성 독감, 10일; (g) 라싸열 및 마르부르크병, 21일; (h)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크림리아-콩고, 에볼라 및 베네수엘라 출혈열, 21일
<p>MARKING OF QUARANTINE AREAS</p>	<p>검역지역의 표시</p>
<p>Maritime Ports of Entry</p>	<p>해상 입국지점</p>

<p>4. (1) The quarantine area at every maritime port of entry shall be marked,</p> <p>(a) where it includes piers, land or buildings adjacent to the harbour, at the entrance and exit and at all other places where it is necessary to delineate the boundaries of the quarantine area by signs measuring not less than 300 mm by 600 mm containing the words "Quarantine Area" and "Zone de quarantaine", which words shall be easily legible, a yellow patch indicating a quarantine area, and the crest of the Medical Services Branch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and</p> <p>(b) where it includes a part of the harbour, on the hydrographic charts pertaining to the harbour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p> <p>(2) Where a quarantine area at a maritime port of entry is described in a publication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it shall be described, in so far as it includes a part of the harbour, with reference to the hydrographic charts described in paragraph (1)(b).</p>	<p>4. (1) 모든 해상 입국지점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검역지역이 표시되어야 한다.</p> <p>(a) 출입구와 기타 검역지역의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항구에 인접한 부두, 지대 또는 건물이 있는 경우. 이때 300 mm X 600 mm 보다 작지 않은 표지에 "검역지역"이라는 단어가 쉽게 읽을 수 있게 표시되어야 하고 검역지역을 가리키는 노란색 조각과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국의 문장이 있어야 한다.</p> <p>(b) 환경부가 출판한 항구 관련 수로학적 해도에 있는 항구의 일부를 포함할 경우.</p> <p>(2) 해상 입국지점의 검역지역이 보건복지부의 출판물에 설명될 때에는 항구의 일부를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 (b)의 수로학적 해도에 관하여 설명되어야 한다.</p>
--	--

<p>Airports</p> <p>5. The quarantine area at every airport that is a port of entry shall be marked at the entrance and exit and at all other places where it is necessary to delineate the boundaries of the quarantine area by signs measuring not less than 300 mm by 600 mm containing the words "Quarantine Area" and "Zone de quarantaine", which words shall be easily legible, a yellow patch indicating a quarantine area, and the crest of the Medical Services Branch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p>	<p>공항</p> <p>5. 입국지점인 모든 공항의 검역지역은 출입구와 기타 검역지역의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300 mm X 600 mm 보다 작지 않은 표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때 "검역지역"이라는 단어가 쉽게 읽을 수 있게 표시되어야 하고 검역지역을 가리키는 노란색 조각과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국의 문장이 있어야 한다.</p>
<p>Land Ports of Entry</p> <p>6. Any quarantine area that may be established at a land port of entry other than an airport shall be mark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quarantine areas at airports.</p>	<p>육상 입국지점</p> <p>6. 공항을 제외한 육상 입국지점에 설치될 수 있는 검역지역은 공항의 검역지역의 조건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p>
<p>Arrivals and Departures</p> <p>7. The person in charge of a conveyance arriving in Canada or departing from Canada shall, when required by a quarantine officer, arrange for all persons on board the conveyance to be presented for inspection to the quarantine officer in an orderly manner.</p>	<p>도착과 출발</p> <p>7. 캐나다에 도착하거나 캐나다를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검역관이 요구할 때에는 운송수단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조사를 위해 검역관에게 질서있게 공개되도록 조정해야 한다.</p>

<p>7.1 If a quarantine officer believes it is reasonably necessary to preserve public health, the officer shall require the person in charge of a conveyance that is arriving in or departing from Canada to distribute health information and questionnaires to all persons on board or intending to board the conveyance before its arrival or departure, as the case may be.</p>	<p>7.1 검역관이 공중보건을 보존하는 데 정당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검역관은 캐나다에 도착하거나 캐나다를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도착 및 출발 전에 운송수단에 탑승하거나 탑승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건정보와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p>
<p>8. A quarantine officer may require the person in charge of a conveyance departing from Canada for a place outside Canada to report to him, prior to departure,</p> <p>(a) any illness or symptom of illness among any of the passengers or crew; and</p> <p>(b) any condition on board the conveyance that may permit the transmission of any disease of an infectious nature.</p>	<p>8. 검역관은 외국을 목적지로 캐나다를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출발 전에 검역관에게 다음 각호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a) 탑승자 또는 승무원의 병 또는 병의 증상;</p> <p>(b) 운송수단 내 있는 감염성 질병의 전염을 허용할 수 있는 상태</p>
<p>EVIDENCE OF IMMUNIZATION Smallpox</p>	<p>예방접종의 증거 천연두</p>
<p>9. (1) Subject to subsection (2), any person arriving in Canad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shall, when required by a quarantine officer, produce evidence satisfactory to the officer</p>	<p>9. (1) 제2항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캐나다에 도착하는 사람은 검역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3년 이내에 천연두가 있었거나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검역관이 만족할 수 있는 증</p>

<p>that such person has had, or has been vaccinated against, smallpox within the thre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his arrival in Canada.</p> <p>(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here</p> <p>(a) the person arriving in Canada has come directly to Canada from, or has during the 14 days immediately prior to his entry into Canada been continually present in, any place listed in subsection (3) and there is no case or suspected case of smallpox in such place; and</p> <p>(b) there is no case or suspected case of smallpox on board the conveyance bringing such person to Canada.</p> <p>(3) Paragraph (2)(a) applie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places:</p> <p>(a) Anguilla;</p> <p>(b) Antigua;</p> <p>(c) Aruba;</p> <p>(d) Australia;</p> <p>(e) Bahama Islands;</p> <p>(f) Barbados;</p> <p>(g) Barbuda;</p> <p>(h) Bermuda Islands;</p> <p>(i) Bonaire;</p> <p>(j) British Virgin Islands;</p> <p>(k) Cayman Islands;</p> <p>(l) Cuba;</p>	<p>거를 제시해야 한다.</p> <p>(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p> <p>(a) 캐나다에 도착하는 사람이 제3항의 지역으로부터 직접 도착하거나 캐나다 도착하기 전 14일 동안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있었으며 이 장소에 천연두 의심환자가 없다.</p> <p>(b) 이 사람을 이동하는 운송수단 내에 천연두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없다.</p> <p>(3) 제2항 각호 (a)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적용된다.</p> <p>(a) 앵귤라;</p> <p>(b) 앤티가;</p> <p>(c) 아루바;</p> <p>(d) 호주;</p> <p>(e) 바하마 군도;</p> <p>(f) 바베이도스;</p> <p>(g) 바부다;</p> <p>(h) 버뮤다;</p> <p>(i) 보네르;</p> <p>(j) 영국령 버진아일랜드;</p> <p>(k) 케이맨 군도;</p> <p>(l) 쿠바;</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 Curacao; (n) Dominica; (o) Dominican Republic; (p) Greenland; (q) Grenada; (r) the Grenadines; (s) Guadeloupe; (t) Haiti; (u) Iceland; (v) Jamaica; (w) Martinique; (x) Mexico; (y) Miquelon Island; (z) Montserrat; (aa) Nevis; (bb) Redonda; (cc) St. Kitts; (dd) St. Lucia; (ee) St. Martin; (ff) St. Pierre Island; (gg) St. Vincent; (hh) Trinidad and Tobago; and (ii)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 쿠라사오; (n) 도미니카; (o) 도미니카 공화국; (p) 그린랜드; (q) 그레나다; (r) 그레나딘 제도; (s) 과들루프; (t) 아이티; (u) 아이스랜드; (v) 자메이카; (w) 마르티니크; (x) 멕시코; (y) 미클롱; (z) 몬세라트; (aa) 네비스; (bb) 레돈다; (cc) 세인트키츠; (dd) 세인트루시아; (ee) 생마르탱; (ff) 생피에르; (gg) 세인트빈센트; (hh) 트리니다드토바고; (ii) 미국, 미국의 영토와 속령
<p>Cholera</p> <p>10. Any person arriving in Cana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within the incubation period for choler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that,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 is infected or suspected of 	<p>콜레라</p> <p>1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국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검역관의 견해에 의하여 콜레라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 콜레라 잠복기 내에 입국하는 사람

<p>being infected with cholera, or</p> <p>(b) on board a conveyance in which,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 there is a case, a carrier, a suspected case or a suspected carrier of cholera</p> <p>shall, when required by a quarantine officer, produce evidence satisfactory to the officer that such person has been vaccinated against cholera within the six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his arrival in Canada.</p>	<p>(b) 검역관의 견해에 의하여 콜레라 환자, 보균자, 의심환자 또는 의심보균자가 있는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p> <p>검역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였다는, 검역관이 만족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p>
<p>Yellow Fever</p> <p>11. Any person arriving in Canada</p> <p>(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that,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 is infected or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yellow fever, or</p> <p>(b) on board a conveyance in which,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p> <p>(i) there are vectors of yellow fever, or</p> <p>(ii) there is a case or suspected case of yellow fever,</p> <p>and proceeding to an area where vectors of yellow fever are present within the incubation period for that disease shall, when required by a quarantine officer, produce evidence satisfactory to the officer that such person has been vaccinated</p>	<p>황열</p> <p>1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국자는</p> <p>(a) 검역관의 견해에 의하여 황열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 입국하는 사람</p> <p>(b) 검역관에 견해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인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p> <p>(i) 황열 매개체가 있다.</p> <p>(ii) 황열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있다.</p> <p>황열 잠복기 내에 황열 매개체가 있는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검역관의 요구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10년 이내에 황열 예방접종을 하였다는, 검역관이 만족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p>

<p>against yellow fever within the 10 years immediately preceding his arrival in Canada.</p>	
<p>Maritime Traffic</p>	<p>해상 교통</p>
<p>12 (1) Where, in the course of a voyage of a vessel to one of the ports referred to in subsection (3),</p> <p>(a) a member of the crew or a passenger on board the vessel has</p> <p>(i) died,</p> <p>(ii) had a temperature of 38°C (100°F) or greater that persisted for two days or more or was accompanied or followed by a rash, jaundice or glandular swelling, or</p> <p>(iii) suffered from diarrhea severe enough to interfere with that person's work or normal activity,</p> <p>(b) the person in charge of the vessel is, during the period</p> <p>(i) of four weeks preceding the estimated time of arrival of the vessel, or</p> <p>(ii) since he last submitted a declaration of health as required by section 16,</p>	<p>12 (1) 제3항의 항구로의 항해 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a) 선박 승무원 또는 탑승자가</p> <p>(i) 사망하였거나</p> <p>(ii) 2일 이상 체온이 38°C (100°F) 이상이었거나 발진, 황달 또는 선 종창이 동반되거나 이어졌거나</p> <p>(iii) 사람의 업무 또는 정상적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설사를 겪었다.</p> <p>(b) 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p> <p>(i)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4주 전부터의 기간이나</p> <p>(ii) 가장 최근에 제16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건신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의 기간</p>
<p>whichever is the lesser, aware of any instance of illness among the crew or passengers that he suspects is of an infectious nature and may lead to the</p>	<p>이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승무원이나 탑승자의 감염성이 의심되고, 병의 확산을 유래할 수 있는 병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p>

<p>spread of disease,</p> <p>(c) the vessel has,</p> <p>(i) within 14 days of its estimated time of arrival in Canada, been in a country that,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 is infected or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smallpox, or</p> <p>(ii) within 60 days of its estimated time of arrival in Canada been in a country that,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 is infected or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the plague, or</p> <p>(d) a certificate establishing that the vessel has been de-ratted or exempted from de-ratting procedures has expired or is about to expire</p> <p>the person in charge of the vessel shall, by radio at least 24 hours prior to the vessel's estimated time of arrival at its port of destination and between the hours of 9 o'clock in the forenoon and 5 o'clock in the afternoon, notify the quarantine officer at the quarantine station designated in subsection (3) for that port of the occurrence and provide him with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2).</p> <p>(2)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the quarantine officer pursuant to subsection (1) is</p>	<p>(c) 선박이</p> <p>(i)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역관의 견해로 천연두에 감염되거나 감염 의심이 있는 국가에 있었거나</p> <p>(ii)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역관의 견해로 페스트에 감염되거나 감염 의심이 있는 국가에 있었다.</p> <p>(d) 선박이 구서 되었거나 구서로부터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립하는 증서가 만기되었거나 곧 만기될 것이다.</p> <p>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선박의 목적지 항구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24시간 전, 오전 9시와 오후 5시 사이에 라디오를 통하여 제3항의 지정된 검역소에 있는 검역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검역관에게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2) 다음의 각호는 제1항에 의하여 검역관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이다.</p>
---	--

<p>(a) the name and nationality of the vessel;</p> <p>(b) the ports called at during the voyage of the vessel;</p> <p>(c) the nature of the cargo on board the vessel;</p> <p>(d) the number of persons comprising the crew of the vessel;</p> <p>(e) the number of passengers on board the vessel;</p> <p>(f) the port of destination of the vessel and the name of the vessel's owner or, if the owner is not in Canada, the name of the vessel's agent in Canada;</p> <p>(g) the condition of all persons on board the vessel and details of any death or illness occurring during the voyage;</p> <p>(h) whether the body of any person is being carried on the vessel;</p> <p>(i) the estimated time of arrival of the vessel at the port of destination;</p> <p>(j) the number of persons on board the vessel who are not in possession of valid evidence of immunization to smallpox; and</p> <p>(k) the date and place of issuance of any de-ratting certificate or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applicable to the vessel.</p>	<p>(a) 선박의 이름 및 국적;</p> <p>(b) 선박 항해 도중 방문한 항구;</p> <p>(c) 선박에 있는 화물의 성질;</p> <p>(d) 선박 승무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p> <p>(e) 선박에 탑승한 사람들의 수;</p> <p>(f) 선박의 목적지 항구 및 선박 소유자의 성명, 또는 소유자가 캐나다에 있지 않는 경우 캐나다에 있는 선박의 대리점;</p> <p>(g) 선박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 및 항해 도중 발생하는 사망 또는 병의 세부사항;</p> <p>(h) 선박 내 시체 여부;</p> <p>(i) 선박의 목적지 항구의 도착 예정 시간;</p> <p>(j) 선박에 탑승한 사람들 중 천연두 예방접종에 대한 유효한 증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p> <p>(k) 선박에 적용되는 구서증명서 또는 구서면제 증명서 발급 일시 및 장소</p>
--	--

<p>(3)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1), the quarantine station for vessels bound for</p> <p>(a) a port in the Province of Nova Scotia or a port in the Province of Prince Edward Island, is Quarantine Station, Halifax, Nova Scotia;</p> <p>(b) a port in the Province of New Brunswick, is Quarantine Station, Saint John, New Brunswick;</p> <p>(c) a port in the Province of Newfoundland, is Quarantine Station, St. John's, Newfoundland;</p> <p>(d) a port in the Province of Quebec or any Canadian port via the St. Lawrence River, is Quarantine Station, Montreal, Quebec;</p> <p>(e) a port in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is Quarantine Station, Vancouver, British Columbia; and</p> <p>(f) a port on Hudson Bay, is Quarantine Station, Churchill, Manitoba.</p>	<p>(3) 제1항의 목적 상, 다음 각호의 목적지를 가진 선박의 검역소는 다음과 같다.</p> <p>(a) 노바 스코시아 주 또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내 항구의 검역소는 노바 스코시아 헬리팩스 시 검역소이다.</p> <p>(b) 뉴 브런즈윅 주 내 항구의 검역소는 뉴 블런즈윅 세인트 존 시 검역소이다.</p> <p>(c) 뉴펀들랜드 주 내 항구의 검역소는 뉴 펀들랜드 세인트 존스 시 검역소이다.</p> <p>(d) 퀘벡 주 내 항구 또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경유하는 캐나다 항구의 검역소는 퀘벡 몬트리올 시 검역소이다.</p> <p>(e)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내 항구의 검역소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시 검역소이다.</p> <p>(f) 허드슨 만에 있는 항구의 검역소는 마니코바 처칠 시 검역소이다.</p>
<p>13. A quarantine officer shall, upon being notified pursuant to subsection 12(1) or section 14, instruc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vessel</p> <p>(a) to proceed to his port of destination; or</p> <p>(b) when, and in which quarantine area, the vessel shall be subjected to</p>	<p>13. 검역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을 지시하여야 한다.</p> <p>(a) 목적항구로 이동한다.</p> <p>(b) 선박이 검역조사를 받을 일시 및 검역장소</p>

<p>quarantine inspection.</p> <p>14. (1) Where the person in charge of a vessel decides to change his port of destination after receiving instructions from a quarantine officer under section 13, he shall notify that quarantine officer of such change and request new instructions.</p> <p>(2) Where any illness occurs on board a vessel</p> <p>(a) afte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vessel has received instructions under section 13, or</p> <p>(b) within the period of 24 hours prior to the estimated time of arrival of that vessel at its port of destination, the person in charge of the vessel shall report the illness forthwith by radio to the quarantine officer at the quarantine station designated for that port in subsection 12(3).</p>	<p>14. (1) 제13조에 의하여 검역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후 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목적항구를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그 검역관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새로운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p> <p>(2) 선박 내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질병이 발생할 때</p> <p>(a) 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제13조에 의하여 지시를 받은 이후</p> <p>(b) 선박이 목적항구에 도착할 예정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p> <p>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즉시 라디오를 통해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검역소의 검역관에게 질병을 보고하여야 한다.</p>
<p>15. (1) Every person in charge of a vessel who has received instructions under paragraph 13(b) shall, on approaching a port, display at the fore, as a quarantine signal, a yellow flag by day and a red light over a white light by night, in such a manner that the signal may be readily seen.</p> <p>(2) No person shall remove a signal</p>	<p>15. (1) 제13조 각호 (b)에 의하여 지시를 받은 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항구에 접근할 때에 앞 돛대 머리에 검역의 신호로 낮에는 황색기를, 밤에는 백색등 위에 적색등을 신호가 즉시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p> <p>(2)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한 신호를 검역관</p>

<p>displayed pursuant to subsection (1) until the vessel has been granted clearance by a quarantine officer.</p>	<p>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6. (1) Every person in charge of a vessel arriving at a port referred to in subsection 12(3) shall, as soon as possible,</p> <p>(a) communicate with the quarantine officer at the quarantine station designated for that port, or with the nearest collector of customs; and</p> <p>(b) when required by a quarantine officer, complete and deliver to the quarantine officer at the quarantine station designated for that port, or to the nearest collector of customs, a declaration of health in respect of that vessel, substantially in accordance with a model of the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referred to as Appendix 5 in Article 90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dopted by the Twenty-Second World Health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July 25, 1969.</p> <p>(2) A declaration of health delivered pursuant to paragraph (1)(b)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requested therein and shall also indicate</p>	<p>16. (1) 제12조제3항의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다음 각 호를 실시하여야 한다.</p> <p>(a) 항구에 지정된 검역소의 검역관 또는 가장 근접한 세관원과 통신한다.</p> <p>(b) 검역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구에 지정된 검역소의 검역관 또는 가장 근접한 세관원에게 1969년 7월 25일 제22회 세계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보건규칙의 제90조의 별표5인 보건상태신고서와 본질상 일치하는 선박과 관련한 보건상태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한다.</p> <p>(2) 제1항 각호 (b)에 의하여 전달된 보건상태신고서는 그것이 요청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3년 이내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p>

<p>whether there are any persons on board the vessel who have not been vaccinated against smallpox within the immediately preceding three years and, if so, the names of those persons.</p> <p>(3) Every person in charge of a vessel arriving at a port referred to in subsection 12(3) shall, when required by a quarantine officer,</p> <p>(a) provide an accommodation ladder or suitable gangway for the use of the quarantine officer;</p> <p>(b) give the quarantine officer and his boat proper shelter or lee in stormy weather while he is boarding or leaving the vessel; and</p> <p>(c) anchor the vessel or operate it at a speed that allows the quarantine officer to board and leave the vessel safely.</p>	<p>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3) 제12조제3항의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검역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를 행하여야 한다.</p> <p>(a) 검역관의 사용을 위하여 현제(舷梯) 또는 트랩을 제공한다.</p> <p>(b) 검역관이 폭풍 속에 선박에 승·하선할 때 검역관과 그의 선박에 적당한 피난 장소 또는 보호를 제공한다.</p> <p>(c) 검역관이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승·하선할 수 있는 속도로 운영한다.</p>
<p>17. Every person in charge of a vessel arriving at a place other than a port referred to in subsection 12(3) shall, as soon as possible</p> <p>(a) communicate with the quarantine officer designated for that place; or</p> <p>(b) where there is no quarantine officer designated for that place, communicate with the nearest</p>	<p>17. 제12조제3항의 항구 외의 장소에 도착하는 선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다음 각호의 1을 행해야 한다.</p> <p>(a) 그 장소에 지정된 검역관과 통신한다.</p> <p>(b) 그 장소에 지정된 검역관이 없는 때에는 가장 근접한 검역관 또는 세관원과 통신한다.</p>

<p>quarantine officer or collector of customs.</p> <p>18. (1) No person on board a vessel shall leave the vessel until permission to do so has been given by a quarantine officer.</p> <p>(2)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a person on board a vessel described in section 17 may leave the vicinity of that vessel</p> <p>(a) if he is in physical danger;</p> <p>(b)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with a quarantine officer or collector of custom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7; or</p> <p>(c) with the permission of a collector of customs.</p>	<p>18. (1) 누구든지 검역관의 허가 없이 선박을 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선박에 탑승한 사람은 선박의 부근을 떠날 수 있다.</p> <p>(a) 사람이 신체적인 위험에 처했다.</p> <p>(b) 제17조에 따라 검역관 또는 세관원과 통신하기 위함이다.</p> <p>(c) 세관원의 허가가 있다.</p>
<p>Air Traffic</p>	<p>항공 교통</p>
<p>19. (1) Where a person in charge of any aircraft arriving in Canad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wishes to land at any of the airports listed in subsection (2),</p> <p>(a) he shall, prior to arrival, except in the case of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communicate with the airport send by radio to the</p>	<p>19. (1)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항공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제2항의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행해야 한다.</p> <p>(a) 공항과 통신하기 불가능한 응급 또는 기타 상황을 제외하고 입국 전에 다음과 관련한 정보를 공항의 검역관에게 라디오로 통신하여야 한다.</p>

<p>quarantine officer at such airport information concerning</p> <p>(i) any illness among the persons on board the aircraft, other than air sickness, or resulting from any accident that might have occurred during the flight, with details of such illness including the existence of fever, skin rash, headache, backache, jaundice, diarrhea, vomiting, chills or abnormal behaviour, or</p> <p>(ii) the death of any person on board the aircraft during the flight; and</p> <p>(b) he may, where no illnes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i) has become apparent and no death has occurred during the flight, send by radio to the quarantine officer at such airport a message that all on board appear to be healthy.</p> <p>(2) Subsection (1) applie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airports:</p> <p>(a) Gander International;</p> <p>(b) Goose Bay;</p> <p>(c) St. John's International;</p> <p>(d) Halifax International;</p> <p>(e) Sydney; ;</p> <p>(f) Montreal International (Dorval);</p> <p>(g) Montreal International (Mirabel);</p> <p>(h) Quebec, Jean Lesage International;</p>	<p>(i)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들 중 멀미 이외 또는 비행 중에 발생하였을 수 있는 사고로부터 유래된 질병과 그 질병에 대한 상세한 사항, 예를 들어 열, 발진, 두통, 요통, 황달, 설사, 구토, 오한, 비정상 행동의 여부 등</p> <p>(ii) 비행 중 탑승한 사람의 사망</p> <p>(b) 각호 (a) (i)의 질병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비행 중 사망이 없었을 때에는 공항의 검역관에게 라디오를 통하여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보인다고 전달할 수 있다.</p> <p>(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공항에 적용한다.</p> <p>(a) Gander International;</p> <p>(b) Goose Bay;</p> <p>(c) St. John's International;</p> <p>(d) Halifax International;</p> <p>(e) Sydney; ;</p> <p>(f) Montreal International (Dorval);</p> <p>(g) Montreal International (Mirabel);</p> <p>(h) Quebec, Jean Lesage International;</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Hamilton; (j) Toronto, Lester B. Pearson International; (k) Ottawa, Macdonald-Cartier International; (l) Windsor; (m) London; (n) Winnipeg International; (o) Saskatoon, John G. Diefenbaker International; (p) Regina; (q) Edmonton International; (r) Calgary International; (s) Vancouver International; (t) Victoria International; and (u) Kelow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Hamilton; (j) Toronto, Lester B. Pearson International; (k) Ottawa, Macdonald-Cartier International; (l) Windsor; (m) London; (n) Winnipeg International; (o) Saskatoon, John G. Diefenbaker International; (p) Regina; (q) Edmonton International; (r) Calgary International; (s) Vancouver International; (t) Victoria International; and (u) Kelowna.
<p>20. (1) Where a quarantine officer has received information pursuant to section 19, he shall, upon the arrival of an aircraft in the quarantine a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grant permission to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ircraft to disembark all persons and transfer them to a place designated by the quarantine officer for quarantine inspection and to commence ground operations; or (b) order the aircraft to remain in quarantine, in the ramp area, for quarantine inspection, in which case no one may disembark and no 	<p>20. (1) 제19조에 의하여 정보를 전달받은 검역관은 항공기가 검역지역에 도착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1을 행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항공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상륙시키고 검역조사를 위하여 검역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육상작업을 시작할 허가를 한다. (b) 검역조사를 위하여 이동트랩지역에서 검역상태를 유지할 것을 명령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상륙할 수 없으며 검역관이 허가를 할 때까지 육상작업을

<p>ground operations may commence until the quarantine officer has given his permission.</p>	<p>시작할 수 없다.</p>
<p>(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b), "ramp area" means the area provided for loading or unloading passengers or cargo, or for refuelling, parking or maintaining the aircraft.</p>	<p>(2) 제1항 각호 (b)의 목적 상, "이동트랩지역"이라 함은 승객 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고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하거나 주차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지역을 의미한다.</p>
<p>21. (1) Where an aircraft arrives from a place outside Canada at an airport listed in subsection 19(2) without the person in charge having communicated with the quarantine officer, or at a place in Canada other than an airport listed in subsection 19(2), the person in charge shall communicate as soon as possible with a quarantine officer at that airport or other place if one has been designated, or with the nearest quarantine officer or collector of customs.</p>	<p>21. (1) 항공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검역관과 통신하지 않은 채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 제19조제2항의 공항에 입국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공항 외의 캐나다 내 기타 장소에 입국할 때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공항 또는 지정이 있을 경우 기타 장소의 검역관, 또는 가장 근접한 검역관 또는 세관원에게 통신하여야 한다.</p>
<p>(2) Where an aircraft arrives at a place in Canad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whether or no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ircraft has communicated with a quarantine officer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that person shall, when required by a quarantine officer, complete and</p>	<p>(2) 항공기가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 캐나다에 입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항공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검역관과 통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검역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969년 7월 25일 국제연합 제22회 세계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보건규칙의 제91조의 별표6인 항공</p>

<p>deliver a declaration of health substantially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Part of the Aircraft General Declaration referred to as Appendix 6 in Article 91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dopted by the Twenty-Second World Health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July 25, 1969,</p> <p>(a) if the place of arrival is an airport referred to in subsection 19(2), to the quarantine officer at that airport; or</p> <p>(b) if the place of arrival is not an airport referred to in subsection 19(2), to the nearest quarantine officer or collector of customs.</p>	<p>기종합신고서 중 보건부문과 본질상 일치하는 보건상태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p> <p>(a) 입국 장소가 제19조제2항의 공항일 경우; 해당 공항의 검역관에게 전달한다.</p> <p>(b) 입국 장소가 제19조제2항의 공항이 아닐 경우; 근접 검역관 또는 세관원에게 전달한다.</p>
<p>22. (1) No person on board an aircraft shall leave the aircraft until permission to do so has been given by a quarantine officer.</p> <p>(2)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a person on board an aircraft described in section 21 may leave the vicinity of that aircraft</p> <p>(a) if he is in physical danger;</p> <p>(b)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with a quarantine officer or collector of customs in accordance with section 21; or</p>	<p>22. (1)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은 누구든지 검역관의 허가 없이 항공기에서 내려서는 아니 된다.</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21조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은 선박의 부근을 떠날 수 있다.</p> <p>(a) 사람이 신체적인 위험에 처했다.</p> <p>(b) 제17조에 따라 검역관 또는 세관원과 통신하기 위함이다.</p> <p>(c) 세관원의 허가가 있다.</p>

<p>(c) with the permission of a collector of customs.</p>	
<p>Land Traffic</p> <p>23. A quarantine officer may board any conveyance arriving at any land port of entry into Canad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for quarantine inspection and may require any person found in such conveyance to undergo quarantine inspection.</p>	<p>육상 교통</p> <p>23. 검역관은 검역조사를 위하여 육상 입국 지점을 통하여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 캐나다로 도착하는 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이 검역조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Unloading of Goods and Cargo</p> <p>24. No person shall unload goods or cargo from</p> <p>(a) a vessel or an aircraft, or</p> <p>(b) a conveyance boarded pursuant to section 23</p> <p>arriving in Canad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until a quarantine officer has completed his quarantine inspection of the conveyance and the goods or cargo found therein or until a quarantine officer or, in the case of a vessel described in section 17 or an aircraft described in section 21, a collector of customs has given permission for the unloading of the conveyance.</p>	<p>상품 및 화물의 하역</p> <p>24. 누구든지 상품 또는 화물을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 캐나다로 입국하는</p> <p>(a)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p> <p>(b) 제23조에 의하여 탑승된 운송수단</p> <p>으로부터 검역관이 운송수단의 검역조사를 마치고 상품 또는 화물이 그 내부에서 발견되었거나, 검역관 또는 제17조의 선박 또는 제21조의 항공기의 경우에는 세관원이 운송수단의 상품 및 화물을 내리는 것을 허가하였을 때까지 내려서는 아니 된다.</p>
<p>Methods of Cleansing Conveyances, Goods and Cargo</p> <p>25. (1) This section applies to conveyances</p>	<p>운송수단, 상품 및 화물의 정화 방법</p> <p>25. (1) 이 조항은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p>

<p>arriving in Canad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and goods or cargo found therein.</p>	<p>캐나다로 입국하는 운송수단과 그 내부의 상품 또는 화물에 적용한다.</p>
<p>(2) Conveyances, goods and cargo may be cleansed b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disinfecting, (b) disinfecting, or (c) de-ratting, 	<p>(2) 운송수단, 상품 및 화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정화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살균 (b) 해충을 없앴 (c) 구서
<p>as, in the opinion of the quarantine officer, the circumstances require.</p>	<p>이 방법들은 상황이 요구한다는 검역관의 견해에 따라 행해진다.</p>
<p>(3) Subject to subsection (9) of this section and paragraph 7(1)(b) of the Act, where there is no practicable method of cleansing an article or substance, it shall be burned.</p>	<p>(3) 제9항 및 제7조제1항 각호 (b)에 따라, 물품 또는 물질을 정화할, 실행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는 태워야 한다.</p>
<p>(4) Any part of a conveyance may be disinfected by washing with a phenolic germicidal detergent.</p>	<p>(4) 운송수단의 모든 부분은 페놀성 살균 세제로 세척함으로써 살균될 수 있다.</p>
<p>(5) Goods and cargo or any portion thereof may be disinfected b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washing with a phenolic germicidal detergent; (b) steam under pressure where it is practicable; or (c) the vaporization of formaldehyde. 	<p>(5) 상품, 화물 또는 그의 일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살균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페놀성 살균 세제를 사용한 세척 (b) 실행 가능한 때에는 압력 증기 (c) 포름알데히드 증발
<p>(6) Water and containers thereof that are,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 contaminated may be disinfected with a chlorine solution.</p>	<p>(6) 검역관의 견해로 오염된 물과 물 용기는 염소 용액으로 살균될 수 있다.</p>
<p>(7) Baggage of a person and personal articles including clothing, bedding or</p>	<p>(7) 사람의 수하물 및 의류 또는 침구를 포함한 개인물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p>

<p>linen may be disinfected by</p> <p>(a) washing with a phenolic germicidal detergent, or</p> <p>(b) steam under pressure where it is practicable,</p> <p>unless the articles would be damaged by washing or steaming, in which case they may be disinfected by the vaporization of formaldehyde.</p> <p>(8) Cooking and eating utensils may be disinfected by</p> <p>(a) washing and immersion in boiling water;</p> <p>(b) immersion in a chlorine bath; or</p> <p>(c) steam under pressure.</p> <p>(9) Any food or beverage may be cleansed where practicable, but where such food or beverage cannot,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 be kept safe for use, it shall be removed from the conveyance for disposal under the supervision of a quarantine officer.</p> <p>(10) Waste matter that is,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 contaminated shall be disinfected with a formaldehyde solution before it is discharged or unloaded.</p> <p>(11) Any part of a conveyance or the goods and cargo therein that, in the opinion of a quarantine officer, is</p>	<p>살균될 수 있다.</p> <p>(a) 페놀성 살균 세제를 사용한 세척</p> <p>(b) 실행 가능한 때에는 압력 증기</p> <p>단, 세척 또는 증기로 인해 물품이 손상될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증발로 살균될 수 있다.</p> <p>(8) 조리도구 및 식기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살균될 수 있다.</p> <p>(a) 끓는 물로의 세척과 끓는 물에 담금</p> <p>(b) 요소 용액에 담금</p> <p>(c) 압력 증기</p> <p>(9) 실행 가능할 때에는 식음료는 정화될 수 있다. 그러나 검역관의 견해로 식음료가 섭취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없을 때 이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제거되어 검역관의 감독 아래 처분되어야 한다.</p> <p>(10) 검역관의 견해로 오염된 폐기물은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지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살균되어야 한다.</p> <p>(11) 검역관의 견해로 천연두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의심이 있는 운송수단의 모든 부분, 또는 그곳의 상품 및 화물</p>
---	---

<p>contaminated or suspected of being contaminated with smallpox may be cleansed by the vaporization of formaldehyde.</p>	<p>은 포름알데히드 증발로 정화될 수 있다.</p>
<p>(12) Any conveyance or part thereof or any goods or cargo that are infested by insects shall be disinfected with a spray or powder containing an agent or agents approved for such purpose by a quarantine officer.</p>	<p>(12) 해충이 서식하는 운송수단 또는 그 부분, 또는 그 내부 상품 또는 화물은 검역관으로 인해 허가된 약품(들)을 포함하는 스프레이 또는 분말로 살균되어야 한다.</p>
<p>(13) Any conveyance found to be infested by rodents shall be de-ratted under the supervision of a quarantine officer.</p>	<p>(13) 쥐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된 운송수단은 검역관의 감독 아래 구서되어야 한다.</p>
<p>Methods of Disinfesting Persons</p> <p>26. A person arriving in Canad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found to be infested with insects shall be disinfested with a 10 percen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dusting powder.</p>	<p>사람으로부터 해충을 없애는 방법</p> <p>26. 해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발견된,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 캐나다에 도착하는 사람에 대하여 10% DDT 살포분말로 해충을 없애야 한다.</p>
<p>Handling of Bodies</p> <p>27. (1) Every person in charge of a conveyance arriving in Canada from a place outside Canada that is carrying the uncremated body of a person who has died elsewhere than on board the conveyance shall provide the quarantine officer at the quarantine station or quarantine area</p>	<p>시체 취급</p> <p>27. (1) 운송수단 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사람의 화장되지 않은 시체를 실은, 캐나다 외의 장소로부터 캐나다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입국지점의 검역소 또는 검역지역의 검역관에게 사망한 장소의 지역사망기록원 또는 유사 당국이 발부한 사망신고서를 검역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at the port of entry with an offici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 issued by the local registrar of deaths, or a similar authority, at the place where the death occurred.</p> <p>(2) No person shall take a conveyance described in subsection (1) through a quarantine station or quarantine area</p> <p>(a) earlier than one year from the time of death, if the cause of death was smallpox;</p> <p>(b) earlier than six months from the time of death, if the cause of death was cholera; or</p> <p>(c) if the cause of death was plague, unless the body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signed by a person who is immediately responsible for the proper health measures in the place in which the death occurred, stating that the body is free from insect vectors of the disease.</p> <p>(3) Where a body is removed from a conveyance described in subsection (1), a quarantine officer shall determine the proper method of disposal of the body and the cost of such disposal shall be a charge against the owner of the conveyance from which the body is removed.</p>	<p>(2) 누구든지 제1항의 운송수단을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검역소 또는 검역지역을 통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 사망 원인이 천연두인 경우, 사망 시 기로부터 1년 이내</p> <p>(b) 사망 원인이 콜레라인 경우, 사망 시 기로부터 6개월 이내</p> <p>(c) 사망 원인이 페스트인 경우,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적절한 보건조치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이 서명한, 시체에 질병의 매개해충이 없다고 진술하는 증명서가 있는 시체를 제외한 경우</p> <p>(3) 제1항의 운송수단으로부터 시체가 이동될 때에는 검역관은 시체의 적절한 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처리 비용은 시체가 이동된 운송수단의 소유자에게 부담되어야 한다.</p>
---	---

<p>28. (1) No person shall remove from a conveyance the body of a person who has died on board that conveyance until permission to do so has been given by a quarantine officer.</p> <p>(2) No person shall remove from a conveyance the body of a person who has died or is suspected of having died on board that conveyance from cholera, smallpox or plague until arrangements for the disposal of the body satisfactory to a quarantine officer have been made.</p>	<p>28. (1) 누구든지 검역관의 허가 없이 운송수단 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누구든지 콜레라, 천연두 또는 페스트로 인해 운송수단 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의 시체를 검역관이 만족할 시체 처리 준비가 될 때까지 운송수단으로부터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ndertaking to Report</p>	<p>보고에 대한 보증</p>
<p>29. The undertaking to report to a medical officer of health referred to in paragraph 8(2.2)(a) and paragraph 8.1(4)(a) of the Act shall be in the form set out in the Schedule I.</p>	<p>29. 제8조제2.2항 각호 (a) 및 제8.1조제4항 각호 (a)의 보건의료공무원에의 보고 보증은 별표 I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p>
<p>30. The order of a quarantine officer made for the detention of a person pursuant to subsection 8.1(3) of the Act shall be in the form set out in Schedule II.</p>	<p>30. 제8.1조제3항에 의한 사람의 구류를 위한 검역관의 명령은 별표 II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p>

[부록 3]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다음은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각 설문 항목을 읽어보시고, 소속 기관의 역량 정도를 평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항목의 평가 정도는 5가지(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기준으로 1점 ~ 10점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든 답변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답안지에 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임시적 관리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6	7	⑧	9	10

I. 지역사회 차원 또는 일차적 공중보건대응 차원 (보건소 차원)

1. 관할 구역 내, 전역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 정도를 초과하는 정보의 질환 또는 사망을 동반한 사건을 탐지할 보건소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2. 가능한 모든 필수 정보를 적절한 차원의 보건의료대응기관에게 즉각 보고할 보건소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서 필수정보라 함은 임상적 특징, 실험실 결과, 위험의 출처와 유형,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 및 적용한 보건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3. 초보적 관리조치를 즉각 시행할 보건소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서 초보적 관리조치라 함은 방역조치, 역학조사, 건강진단, 사례조사, 예방접종 등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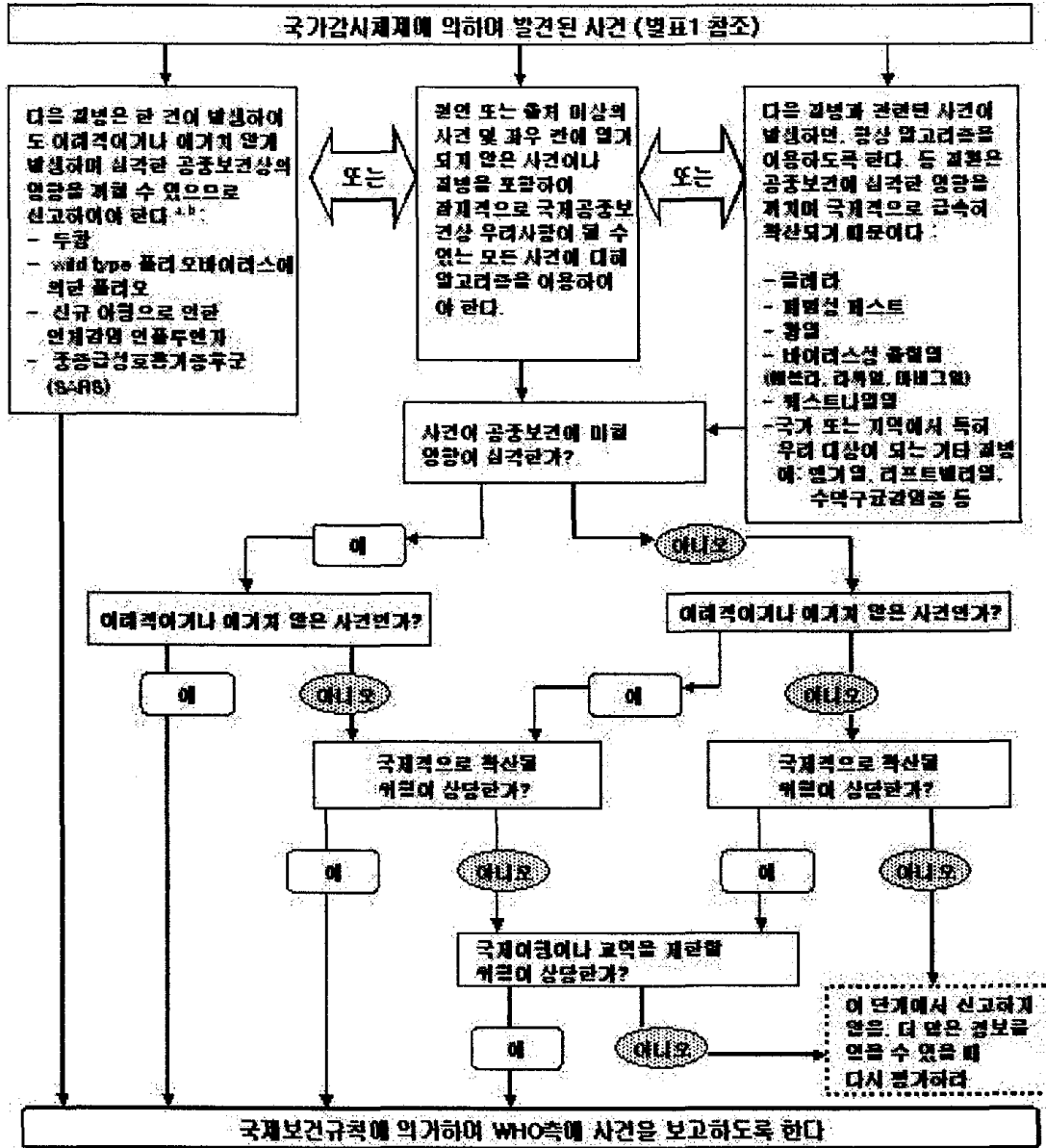
II. 중간 공중보건대응 차원 (광역자치단체 차원)

1. 보고된 사건의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 관리조치를 지원 또는 시행할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2. 보고된 사건을 즉각 평가하고, 긴급사건일 경우, 모든 필수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III. 국가 차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1. 48시간 내에 모든 긴급사건을 보고를 평가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긴급사건의 평가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결정도구〉



^a WHO 사례정의에 따름

^b 질병목록은 오직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함

2. WHO에 신고하여야 할 상황인 경우 IHR 국가대표기관을 통해 이를 즉시 신고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IHR 국가대표기관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질병의 국내외 확산 방지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신속히 결정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4. 전문요원, 검체의 실험실 분석, 물자 등의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로 생각되십니까?
5. 지역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6. 신속하게 억제 및 관리조치를 승인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고위 보건관리 및 기타 관리와 직접적인 운영연결체계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7. 다른 관련 정부부처와 직접적인 연락체계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8.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WHO에서 수신한 정보 및 권고사항을 보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공항, 항만, 육상교차점, 연구소 및 기타 핵심업무처와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연결(네트워크)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학제/다부문 팀을 창설하는 것으로 포함한 국가공중보건비상 대응계획을 수립·시행·유지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10. 위 3.에서 9.의 사건을 24시간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답안지

평가척도 문항번호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6	7	8	9	10
I-1	1	2	3	4	5	6	7	8	9	10
I-2	1	2	3	4	5	6	7	8	9	10
I-3	1	2	3	4	5	6	7	8	9	10
II-1	1	2	3	4	5	6	7	8	9	10
II-2	1	2	3	4	5	6	7	8	9	10
III-1	1	2	3	4	5	6	7	8	9	10
III-2	1	2	3	4	5	6	7	8	9	10
III-3	1	2	3	4	5	6	7	8	9	10
III-4	1	2	3	4	5	6	7	8	9	10
III-5	1	2	3	4	5	6	7	8	9	10
III-6	1	2	3	4	5	6	7	8	9	10
III-7	1	2	3	4	5	6	7	8	9	10
III-8	1	2	3	4	5	6	7	8	9	10
III-9	1	2	3	4	5	6	7	8	9	10
III-10	1	2	3	4	5	6	7	8	9	10

※ 귀하의 보건소 및 행정기관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위의 역량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갖추고 있는 역량의 종류가 무엇이며, 부족한 역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1	
I-2	
I-3	
II-1	
II-2	

※ 귀하의 보건소 및 행정기관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위의 역량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갖추고 있는 역량의 종류가 무엇이며, 부족한 역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1	
III-2	
III-3	
III-4	
III-5	
III-6	
III-7	
III-8	
III-9	
III-10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사

<p style="text-align: center;">전염병의 종류와 분류에 관한 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전염병격리 치료시설의 지정에 관한 부분</p>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법안 개정 관련 의견</p>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역량 평가

다음은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각 설문 항목을 읽어보시고, 소속 기관의 역량 정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의 평가 정도는 5가지(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가 정도 선택 후, 괄호 안의 점수(1점~10점)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답안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6	7	⑧	9	10

I. 항시 필요한 역량

1. 병든 여행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진단시설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도를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2.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3. 병든 여행자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4. 화물 검사를 위한 숙련된 인력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5. 식수원, 음식점, 항공기내식 관련 시설, 공중화장실, 적절한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타 잠재적 위험지역 등 입국지점의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조사사업을 시행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6. 입국지점 내 또는 그 인근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위한 관리 사업과 숙련된 인력을 실천 가능한 한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II.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1. 해당 입국지점의 조정자 및 접촉창구 지명, 공중보건 및 기타 기관과 서비스 등 공중보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 적절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2. 격리,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의료 및 수의과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 여행자나 동물을 평가하고 돌볼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3. 의심 또는 감염된 자와 면접하기 위하여 여행자로부터 떨어진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4. 평가 필요시 감염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여행자를 되도록 입국지점에서 떨어진 시설에 격리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5.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구제, 구서, 소독, 오염제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고 조치를 적용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6.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출국 관리(입·출국 제한 등)를 적용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7.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수 있는 여행자의 이송을 위하여 특정 장비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숙련된 인력(별도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역량 평가
답안지**

평가척도 문항번호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6	7	8	9	10
I-1	1	2	3	4	5	6	7	8	9	10
I-2	1	2	3	4	5	6	7	8	9	10
I-3	1	2	3	4	5	6	7	8	9	10
I-4	1	2	3	4	5	6	7	8	9	10
I-5	1	2	3	4	5	6	7	8	9	10
I-6	1	2	3	4	5	6	7	8	9	10
II-1	1	2	3	4	5	6	7	8	9	10
II-2	1	2	3	4	5	6	7	8	9	10
II-3	1	2	3	4	5	6	7	8	9	10
II-4	1	2	3	4	5	6	7	8	9	10
II-5	1	2	3	4	5	6	7	8	9	10
II-6	1	2	3	4	5	6	7	8	9	10
II-7	1	2	3	4	5	6	7	8	9	10

※ 귀하의 검역소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위의 역량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갖추고 있는 역량의 종류가 무엇이며, 부족한 역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1	
I-2	
I-3	
I-4	
I-5	
I-6	

※ 귀하의 검역소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위의 역량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갖추고 있는 역량의 종류가 무엇이며, 부족한 역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1	
II-2	
II-3	
II-4	
II-5	
II-6	
II-7	

[부록 4]

감시와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주관식 답안

I-1.

관할 구역 내, 전역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 정도를 초과하는 정보의 질환 또는 사망을 동반한 사건을 탐지할 보건소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부족한 역량은 병의원에서 1차적으로 보건소에 보고하는 체계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제1의 조치라고 생각되며,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기구 및 인력이 별도로 필요함.
- 일선 보건소의 유관기관(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체계 미흡과 의료기관 등의 비협조로 탐지에 한계가 있으며, 보건인력 부족 등으로 탐지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의 질병정보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탐지할 역량이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의 신고율이 아직도 저조함.
-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신고된 전염병은 보건소에서 EDI를 통하여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 질병정보모니터망, 병·의원, 행정기관 등의 신속한 신고로 조기에 탐지 역량이 뛰어남.
- 경찰, 소방서, 주민 신고 등을 통한 예상 정도를 초과하는 사태 발생 시 지역 보건소로의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시도 보건소 단위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하여 질병 감시체계는 양호함.
- 보건소에서 시도 등으로의 전염병 모니터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보건소관할 의료기관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신고율이 매우 불확실하며, 전염병의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의 확립이 요구됨.
- 전염병신고체계 및 미신고시의 벌금과 같은 행정조치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됨.
- 의료인 또는 전염병 환자 신고의무자의 전염병환자발생보고 및 신고를 통한 질병별 발

생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즉, 전염병환자 신고 의무자에 의존한 발생 감시로 예상 정도를 초과하는 질환 또는 사망에 대한 정보는 신중 질환 혹은 발생률이 적은 질환에 한하여 탐지 속도가 빠를지도 모르나, 그 외 기타 전염병 발생 유행에 대한 탐지 가능여부는 미지수임. 또한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및 인력의 능력(주로 행정담당자 또는 공보의로 구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I-2.

가능한 모든 필수 정보를 적절한 차원의 보건 의료 대응기관에게 즉각 보고할 보건소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서 필수정보라 함은 임상적 특징, 실험실 결과, 위험의 출처와 유형,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 및 적용한 보건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 모든 질병관리 상태가 매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량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문제는 병원에서 즉시 보고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됨.
-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필수정보를 즉시 보고할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행정조치 등은 가능하나 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전문가와 같은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치단체에 각 전염병 관리 기동반 1반/6명이 편성되어 초기 대응 및 확산방지 등의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무관심 및 최근에 크게 확산되는 질병이 없기에 질병 확산방지에 대한 실무적 경험이 부족함.
- 사태 발생 시 6하 원칙에 의거 협조보고 부서로 즉각 보낼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음.
- 신고 즉시 방역대책반 운영되어 환자의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의 인적사항 및 임상증상 등 구체적인 정보가 수집되고 있음.
- EDI 등 사도에 전염병환자신고, 집단 환자 발생보고 등이 부족하며, 전염병 신고를 위한 정보체계 및 전염병원체 진단, 분리, 동정 등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함.

- 신고 강화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며, 신고를 판단(유행 혹은 신종질환) 할 수 있는 능력 고양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전염병 환자의 기초 자료(법정전염병신고서식 및 사례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기초 정보를 넘어선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즉, 지역 인구, 환경, 기후, 생산기반 등)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이를 분석 적용하여 즉각 보고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부족함.

I-3.

초보적 관리조치를 즉각 시행할 보건소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서 초보적 관리조치라 함은 방역조치, 역학조사, 건강진단, 사례조사, 예방접종 등을 포함합니다.)

-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질병)에 대하여 즉각 대처를 하고 있으므로 그런 대로 좋은 상태이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원 및 장비(차량 지원)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임.
- 초보적인 관리조치를 위하여 방역기동반이 현지 방문하여 분야별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담당자 1명이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방역조치, 역학조사,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시행할 역량이 있음.
-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 전염병담당자가 자주 바뀜(기피업무)으로 시에서(광역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지 출장 지도를 하여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집단 환자, 전염병환자 발생 시 비상기동방역반 및 역학조사반이 긴급 투입되어 초기 대응 및 확산방지를 할 수 있음.(역학조사설문, 검체 및 가검물채취, 수거방법, 설문조사분석, 방역조치 등)
- 초보적 관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부족하며, 전문 인력(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과 조직을 반드시 보건소 및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관련 법령에 강제하길 바람.
- 초보적 관리조치에 관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
- 보건소 내의 역학조사반 및 방역조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활동능력이 우수하지만,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등의 과학적인 조사 수행능력이 미흡함.

- 초보적 관리조치의 정도(간단한 소독, 사례조사, 검체 채취, 예방접종)를 넘어선 방역 조치는 어려움.

II-1.

보고된 사건의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 관리조치를 지원 또는 시행할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광역 단체에서는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운영상 문제가 없지만 월 또는 분식 별 1회씩 이라도 정기적인 지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전문성 및 인력부족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 시·군(기초자치단체)으로부터 보고된 사건의 상황을 확인하고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할 역량이 있음.
-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역학조사 등을 실시 등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역학조사관 등이 있어 모든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항상 예산 및 인력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함.
- 기초단체(지역보건소)의 보고 상황을 분석, 확인하여 추가적인 관리조치를 지원하고 전 파 보고할 수 있음.
- 역량은 현행 공중보건조사(역학조사)를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조직이 절대 부족하여 실제 심각한 사건 및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없음.
- 사건 별 질병유행 현황 파악 등에 있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소수 인력의 운영 등으로 대유행에 대처하기 어려움
- 보건소에서 신고한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역학조사, 질병 통제의 지원 및 지도가 부족하며 역학조사관을 통한 기술 지도 및 지원, 각종 물자에 제공 등이 부족하고 과학적인 조사 및 정보의 분석 능력이 필요함.
- 시도 전염병담당자가 전염병신고를 받게 되면,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 역학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어 보고된 사건의 상황을 추가적 확인(시도 역학조사관)은 가능하나, 전염병 담당자, 역학조사관 등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함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II-2.

보고된 사건을 즉각 평가하고, 긴급사건일 경우, 모든 필수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가 이루어져 문제가 없으나, 다만 기술적인 노하우를 적극 지도함이 필요함.
- 필수정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긴급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이 미흡한 실정임.
- 각종 사건에 대한 행정조치는 신속하게 처리할 역량이 있으나, 즉시 평가할 역량은 다소 부족함.
- 보고된 사건에 대하여 2차 환자 발생은 사건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인근지역의 홍보 등의 실시가 필요함.
- 체계적인 역량은 갖추어져 있음.
- 보고된 사건의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긴급사건일 경우 필수정보를 국가에 보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
- 전염병정보망(EDI) 등 비상연락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에 각종 매체를 통한 보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자료 취합 및 신속한 보고 능력이 필요하며, 사군구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이 필요함.
-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와 사도의 자료를 지역의 환경 등 영향조건에 따른 분석 및 (추가자료, 필수자료의 분석 등)평가 능력은 부족하며 의심 사례는 일단 보고하자고 보자는 식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

III-1.

48시간 내에 모든 긴급사건을 보고를 평가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신하며, 질병감시체계 또한 사군구도 별로 잘 되어 있지만, 세계의 상황을 좀 더 빠르게 알려줄 의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과 인력이 대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 이 부분의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CDC는 조직의 대규모와 전문 인력 배치 등과 같이 48시간 내 긴급사건을 평가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전염병을 전담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됨.
- 잘되어 있음.
- 전염병감시체계, EDI 보고를 통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즉각 보고되고 있으며 시도 혹은 중앙의 역학조사반의 사태평가 및 분석이 뛰어남.
- 48시간 내에 전염병의 확인 가능성이 있는지가 의문이지만, 보고 등의 행정적인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각종 보고에 대한 분석 및 확인이 시행되고 있으며 역학조사 및 상황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국가 표준 실험 및 진단 시설 및 이와 관련된 능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행정 보고 체계상 신속한 평가 및 보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III-2.

WHO에 신고하여야 할 상황인 경우 IHR 국가대표기관을 통해 이를 즉시 신고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IHR 국가대표기관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 인력이 풍부하여 각 팀별 협조체제만 잘 이루어지면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 매우 역량이 높음.
- IHR 국가 대표기관은 질병관리본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함.
- 양호 높음.
- WHO에 신고하여야 할 상황인지의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WHO에

신고 가능함.

- 현재의 조직과 분리 또는 추가하여 전담인력이 충원되어야 함.
-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고 있으며 부족한 역량은 없다고 생각됨.
- IHR 국가 대표기관에 평가/보고의 완전 권한(평가/보고를 신뢰받는)이 부여되지 않는 한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 WHO에 보고하는 체계는 매우 어려움.

III-3.

질병의 국내외 확산 방지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신속히 결정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일전에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으나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대응훈련을 통한 질병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매우 양호함.
- 체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 높음.
- 질병의 국내외 확산방지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위해 위기 단계별 수준의 결정과 조치가 가능함.
-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휘가 실제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역학조사반 및 방역관 파견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부족한 역량은 없다고 판단됨.

III-4.

전문요원, 검체의 실험실 분석, 물자 등의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실험실계통의 전문 인력이 정년퇴임 후에라도 전문직으로 지속적으로 실험실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일용직 혹은 축탁 등의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전문요원, 실험실 물자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연례적으로 소량이나마 지원이 됨.

- 매우 높음.
- 1단계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2단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며 3단계는 국립보건원에서 전문요원 검체의 실험용 분석 등을 전담하고 있어 안전 수준이라 생각됨.
- 보통임.
- 기초단체 및 시도 단위의 검사요원·분석·기계·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됨.(신종전염병, 해외유입전염병 등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함.)
- 지역 내 물자 및 인력동원으로 중앙의 지원역량이 부족함.
- 신종전염병병원체에 대한 진단능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에 기술 전무를 위한 단기 파견 역량이 필요함.
- 국가에서 비축 관리하는 물량이 매우 부족함.

III-5.

지역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양호함.
- 지역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지원을 제공하기는 하나 약간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 매우 높음.
-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보통임.
- 지역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을 미비함.
- 중앙기관에만 질병 발생 감시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문조직이 편제되어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도,시,군)에는 대응전문인력과 조직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비상상황발생 시 중앙전문조직과 인력이 전국을 다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볼 때에 지방에도 전문인력과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보통 수준으로 지역 간(광역화) 유행 시 대처가 어려움.
- 현재 중앙역할조사반이 존재하며, 역학조사관 훈련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비

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Ⅲ-6.

신속하게 억제 및 관리조치를 승인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고위 보건관리 및 기타 관리와 직접적인 운영연결체계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양호함.
- 비상방역체계구축 등 도상 연습으로는 충분하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지는 미지수임.
- 매우 높음.
- 수준 이상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됨.
- 관련 부서, 유관 기관 간 협조체제 미흡함.
- 비상기획위원회, 재난대비상황실 등을 통해 직접적인 운영연결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중앙기관에만 질병 발생 감시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문조직이 편제되어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도,시,군)에는 대응전문인력과 조직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비상상황발생 시 중앙전문조직과 인력이 전국을 다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볼 때에 지방에도 전문인력과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일원화 보고체계)
- 각종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으며, 전화, fax, 인터넷 등을 통한 상황보고 및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
- 정부기관 간 연락망 구축 및 의료기관, 다학제/다부분 팀의 구성이 현재 전무하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됨.

Ⅲ-7.

다른 관련 정부부처와 직접적인 연락체계를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보통임.
-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미지수임.
- 잘 되어 있음.
-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됨.
- 관련 부처 특히 교육부, 환경부, 농림부, 식약청 간의 협조체계가 미흡함.
- 비상기획위원회, 재난대비상황실 등을 통해 직접적인 운영연결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중앙기관에만 질병 발생 감시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문조직이 편제되어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도,시,군)에는 대응전문인력과 조직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비상상황발생 시 중앙전문조직과 인력이 전국을 다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볼 때에 지방에도 전문인력과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부처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중복적인 조치 및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범 정부 대책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화, fax, 인터넷, 국무회의 등을 통한 각종 의사소통채널을 가지고 있음.

III-8.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WHO에서 수신한 정보 및 권고사항을 보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공항, 항만, 육상교차점, 연구소 및 기타 핵심업무처와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연결(네트워크)을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보통임.
- 각 부처별 위기대응체계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에 무리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매우 역량이 높음.
-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신속한 홍보를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됨.
- 정기적인 질병정보를 환류함으로써 양호함.
- 홈페이지, 인터넷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중앙기관에만 질병 발생 감시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문조직이 편제되어 있으

나 실제 지방자치단체(도,시,군)에는 대응전문인력과 조직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비상상황발생 시 중앙전문조직과 인력이 전국을 다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볼 때에 지방에도 전문인력과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민간 의료기관까지 정보제공의 수단이 미확보됨.
- 각종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

III-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학제/다부문 팀을 창설하는 것으로 포함한 국가공중보건비상 대응계획을 수립·시행·유지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보통임.
- 위기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가동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높음.
-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응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평소에는 전염병관리에 예산, 인력 투입을 적게 편성하고 발생하면 될 했느냐는 식으로 담당요원 사기저하로 전염병 담당업무 기저현상이 발생됨.
- 국가위기대응메뉴얼 및 재난대응메뉴얼들의 수립 및 포상 및 실제 훈련을 통해 유지할 역량 있음.
- 중앙기관에만 질병 발생 감시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문조직이 편제되어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도,시,군)에는 대응전문인력과 조직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비상상황발생 시 중앙전문조직과 인력이 전국을 다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볼 때에 지방에도 전문인력과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위기관리메뉴얼 등 갖추어져 있으나, 실행가능성은 의문임.
- 비상대응 T/F의 가동되고 있음.

III-10.

위 3.에서 9.의 사건을 24시간 제공할 국가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보통임.
- 대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완지원이 필요함.
- 각종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어 24시간 제충할 국가역량이 있음.
- 전염병정보망을 통하여 국민에게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TV 등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조직 형태에서의 지자체 역량은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전염병 인력의 동원이 필요함.
- 중앙기관에만 질병 발생 감시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문조직이 편제되어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도,시,군)에는 대응전문인력과 조직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비상상황발생 시 중앙전문조직과 인력이 전국을 다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볼 때에 지방에도 전문인력과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24시간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야간 근무 없음)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사(1)

전염병의 종류와 분류에 관한 의견

- 법적으로 지정된 전염병이 너무 많아 혼동이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창궐하는 전염병에 대하여 분류를 하고 외국에서 유행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이 필요함.
- 전염병의 종류와 분류에 관하여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심각성과 위해 정도를 감안하여 분류를 해야 할 것임.
- 법정전염병의 종류(군별)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수시로 개정하는 것은 환자관리 및

방역조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후 개정되어야 함.

- 전염병의 종류가 너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으며, 현 안에서 ‘중’ 분류를 ‘군’ 분류로 1군의 콜레라, 페스트는 크리미안콜고출혈열 등으로 바꾸길 바람.
- 전염병의 종류와 분류는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됨.
- 전염병의 종류의 나열은 적절하지만 이외의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시 법의 개정으로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늦으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신속히 신종전염병에 추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야 함.
- 국내 발생 및 발생 가능 전염병으로 각 목의 전염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전염병의 관리방안(방법)에 따른 전염병 분류에는 동의하는 격리방법만이 분류 체계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일례로 결핵의 경우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병실에 입원시켜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결핵의 유병률이 높아 음압시설에 격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격리방안과 더불어 현실적인 현황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함.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사(2)

전염병격리 치료시설의 지정에 관한 부분

- 법적으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전염병 대비 격리시설을 별도로 설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 전염병 격리시설 및 치료시설의 미흡으로 집중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비 지원으로 권역별 격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 수송시설에서 격리치료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염병 격리 치료시설(1군2군일반)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시군별로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여야 할 만큼 상시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설치 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설치 또한 어려움.
- 제31조 전염병격리치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전염병격리치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려됨.

- 현행 전염병예방방법에는 호흡기질환 및 접촉감염으로 구분 격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현 일반 병·의원에 격리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상급 병실료사용액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어 격리병상지정을 받지 않으려 함.
-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을 갖춘 격리 치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음.
- 전염병격리치료시설의 의무화는 운영의 문제점이 따르며, 운영비 혹은 시설비 등 시도 지사에게 일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인력 등 실행이 어려움으로 정부에서 지역별 설치 및 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일본의 경우 특수 전염병별로 격리병원(제1종, 제2종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3 단계 정도의 격리병상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전염병예방방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사(3)

기타 법안 개정 관련 의견

- 식품위생분야의 업무와 명확한 한계가 필요하며 보건소의 명칭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건강센터 등)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등으로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본 시책 수립 등을 국가의 지침에 의해 시행해야 됨.
- 현 추세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만 개정되고 이에 따른 조직과 예산이 확보 되지 않는다면, 질병관리 분야는 발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실제 격리대상 전염병환자를 의료기관에 격리입원시켰으나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 관리 및 격리해제에 대한 기준은 이행하지 않아 2차 감염 발생 사례가 발생하며 격리치료 및 격리해제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미이행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 기준 명시.
- 전염병 탐비 역량 강화의 문제로 전염병 신고의무자(의료인)의 교육의 의무 부여해야 하며 전염병에 대한 인식부족 및 태만으로 미신고 등 탐지가 불가함. 또한 예방접종약

의 계획 생산이 필요함.(의무화추진)

- IHF focal point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염병대응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조직 신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기타 core capacity 관련한 내용은 그대로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입국지점의 핵심역량 평가 주관식 답안

I-1.

병든 여행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진단시설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도를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세균성 질환에 대한 진단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인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높으나 해양검역소는 질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 없음. 의료서비스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도록 조치 필요 예방접종(콜레라, 황열)을 실시함.
- 환자발생시 인근 전염병 환자 격리 지정병원으로 이송 관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보유, 세균검사 시설 확보, 의료인력(의사) 및 환자 병상 등 부족함.
- 공항검역소의 경우는 진료실이나 격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공중보건의 배치), 항만 검역소의 경우는 상기 시설이 전반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
- 항만의 의료서비스는 전무한 상태고, 다만 의사 환자 발생 시 후송체계는 구축되어 있음.
- 진료실 및 공중보건 의사 상시 근무함, 공항 내 의원 소재하고 있음.
- 검역질문서 실시, 체온측정 실시, 일부 검역소에 공중보건의 배치함.
- 진료실 및 공중보건 의사 상시 근무(내과전문의 1, 병실침대3)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공항 내 병원 위치함.
- 임상적 기준 및 역학관계 확인 후 의심환자 색출가능하며(공중보건 의사 1명 배치), 공항 내 [의원]급의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세균검출이 가능한 검사실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기간이 3-4일 소요됨에 따라 이미 국내입국이 끝난 상태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함.

- 검역소 내 진료실과 검사실을 갖추고 공중보건 의사와 검역관의 의심환자 진단을 통해서 지점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격리병사는 소유하나 유명무실함.
- 공항만 입국장 내 격리를 위한 ‘검역진료실’ 설치, 공중보건 의사에 의한 역학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역학 조사 후 귀가/후속조치 요구 시에는 보건소와의 연계체제로서 후송수단(앰블런스) 및 격리 지정 병원 등으로 후송조치 체계 구축 가동하고 있으나, 현 수준은 virus성 질환에 대한 대응시설은 전무한 수준임.
- 관할 지역 내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심환자 또는 환자 발생 시 의뢰 조치하고 있음, 전문 의료인력 충원과 구급차량 확충 등이 필요함.
- 환자/의심자에 대한 진단시설: 검사실 운영 중이며 입국장 내 격리병상(2개 병상)이 마련되어 있음, 환자를 위한 의료진은 간호사(2명) 뿐임.
- 현재의 검역소에서는 예방 접종 외에는 진단, 치료, 이송 등의 수단이 직접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지역 내 보건소나 국공립 의료기관 등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질문서의 답변 기준은 동 기관과 유기적 관계 수준을 평가한 것임(단 검사실은 정상적 수준임).
- 검사실과 임상병리사는 확보되어 있고, 세균검사는 충분히 시행하고 있으나 바이러스 검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여객터미널 내 임시가능 진료장소 확보 및 공중보건 의사 1명 상주 근무하고 있음.
- 수인성전염병 검사실 시설은 갖추고 있으며 또한 검사요원의 자질이 우수하나, 바이러스 검사는 검사시설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함.
-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며, 진료실도 없음. 검역설문서, 시진·문진을 통하여 환자 또는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정병원으로 이송함.

I-2.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일부검역소에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간호 인력은 13개 검역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 부족하나 유사시 환자 후송체계 구축 및 시행하고 있음.
- 환자(의심) 발생 시 후송체계가 갖추어져 있음(보건소 또는 119와의 협조체계).
- 의료진과 의료장소는 없으나 역시 의사환자 후송체계는 그나마 되어있음.
- 공중보건 의사, 진료실, 의료장비 보유하고 있음.
- 일부 검역소(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된 곳)에만 기초 장비 구입하고 있음.
- 공중보건 의사1, 진료실3, 의료장비 등을 구축함.
- 일반 환자에 대한 역량은 좋으나, 공기매개 등의 전염병환자는 공항 내 검역소 진료실이나 [의원]으로 이송할 수 없음(음압시설 설치 불가능).
- 전염병환자 진단 및 치료 기능은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전염병관리팀)에서 네트워크 형성(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운영 중임.
- 공항만 입국장 내 격리를 위한 '검역진료실' 설치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의사에 의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역학 조사 후 귀가/후속조치 요구 시에는 보건소와의 연계체제로서 후송수단(앰블런스) 및 격리 지정 병원 등으로 후송조치 체계 구축 가동 중임(현 수준은 virus성 질환에 대한 대응시설은 전무한 수준임).
-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장비, 진료실 등의 확충이 필요하며, 진료재료,약품 등의 충원도 필요함.
-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격리병상(24개 병상)을 지정, 유사시 환자 격리/수용 가능함.
- 현재의 검역소에서는 예방 접종 외에는 진단, 치료, 이송 등의 수단이 직접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지역 내 보건소나 국공립 의료기관 등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질문서의 답변 기준은 동 기관과 유기적 관계 수준을 평가한 것임(단 검사실은 정상적 수준임).
- 검역소 자체의 별도 의료진과 병실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관내 보호소와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음.
- 고열설사 환자 등은 국제여객 터미널 내 확보되어 있는 진료실에 임시격리 및 의심환자 후송체계에 따라 관할보건소의 앰블런스를 이용 격리병원에 후송 조치함.
- 인근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후송,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ex. 유사 SARS 환자 발생 통보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긴급조치 하였음.)
-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정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나, 집단(다수) 환

자 발생 시에는 대응이 곤란함.

I-3.

병든 여행자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
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현재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후송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음.
- 환자 후송 시 보건소 및 소방서 앰블런스 지원 요청으로 신속한 후송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자체 장비 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 환자(의심) 발생 시 후송체계가 갖추어져 있음(보건소 또는 119와의 협조체계).
- 역시 의사환자 후송체계만 구축됐을 뿐임.
- 앰블런스 보유, 공항 내 병원 후송함.
- 보건소와 상호 협력하여 환자 후송 조치함.
- 앰블런스(1) 보유, 공항 내 병원 후송함.
- 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환자는 신속한 격리를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이 “후송 전담기관” 과 “격리병원” 을 지정·운영해야 함(현재 환자 이송 시 어떤 증상일 경우 의료인 등 이송 관련 지침 등이 전무함).
- 전염병환자 이송은 119 또는 보건소 구급차를 활용하여 지정병원으로 이송함.
- 구급차량의 확충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충원이 필요함.
- 환자 등의 의료시설 이송 시 필요할 경우 관내 보건소의 환자 운송차량(구급차량)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자체 구급차량 없음.
- 현재의 검역소에서는 예방 접종 외에는 진단, 치료, 이송 등의 수단이 직접적으로 마련 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지역 내 보건소나 국공립 의료기관 등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질문서의 답변 기준은 동 기관과 유 기적 관계 수준을 평가한 것임(단 검사실은 정상적 수준임).
- 검역소 자체의 이송 차량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관내 보건소와 협력할 수 있 는 체계는 되어 있음.
- 고열·설사 환자 등은 국제여객 터미널 내 확보되어 있는 진료실에 임시격리 및 의심

환자 후송체계에 따라 관할보건소의 앰블런스를 이용 격리병원에 후송조치하고 있으나, 검역소 자체적으로 환자 이송에 필요한 앰블런스 등의 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선원 및 승객의 입국자 없음.
-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정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나, 집단(다수) 환자 발생 시에는 대응이 곤란함.

I-4.

화물 검사를 위한 숙련된 인력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화물검사는 없으며, 중독 및 식품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음.
- 화물검사를 위한 숙련된 인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나, 운송수단 별 세균검사요원은 준비되어 있음.
- 화물검사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없음.
- 전혀 되어있지 않음.
- 현재 화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화물에 대한 검사실적 미비함.
-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화물검역 불가함.
- 숙련된 인력은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화물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고철, 목재 등 화물의 일부를 검역관의 판단 하에 관능검사를 통해 선박 내 병해충검사 실시하여, 병해충 발견 시 선박 전체에 대한 소독 실시함.
- 화물 선박 및 화물 창고에 대한 검역조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검역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한 검역조사는 미흡한 수준임(화물특성별 검역조사 방법 개발 필요함).
- 검역인력의 확충이 필요함(특히 남자검역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 전문 인력이 부족함.
- 일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함.
- 검역업무에 장기간 근무한 숙련된 인력은 확보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함.

- 검역관이 선박 및 화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음.
- 숙련된 검역인력 확보하고 있음.
- 화물검사를 위한 숙련된 인력은 충분히 제공 가능함.

I-5.

식수원, 음식점, 항공기내식 관련 시설, 공중화장실, 적절한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타 잠재적 위험지역 등 입국지점의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조사사업을 시행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시행으로 전염병 발생 환경 제거 및 안전한 환경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 검역소 별로 검역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검역구역에 대한 보건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 그나마 검역소의 조사연구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봄.
- 조사사업을 시행할 역량은 있으나 부분적인 항목의 조사사업, 필요성이 없음(공중화장실 등),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공항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음.
- 각 검역소 검사실에서 검사 가능
- 숙련된 검사요원(5명)근무 가능함
- 적절한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중, 조류 인플루엔자 등 관련 보호복 폐기물 처리 지침 없음, 항공기 소독 기준 없음(단, 탄저 등 생물테러 관련 처리는 가능(제독장치)).
- 여행자 및 운송수단의 보건위생 관리 차원에서 다양하게 검역검사 수행함.
- 검역구역 내 전염병 매개체 조사사업으로 모기밀도 조사 및 해양환경 내 병원성균(비브리오패러셀) 조사사업 수행 중,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업무 과중함.
- 안전한 환경 보장에 따른 시설은 거의 없으며, 타 기관 및 민간에게서 상업용으로 운영되는 실정임.
- 일부인력(전문훈련이수자)을 “전염병 매개체·병원체조사 사업”에 투입하고 시행하고

- 있으며, 관내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검역 구역 내 음식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 및 지도를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의 문제가 있음.
 - 현재 검역법 제29조(검역 구역 안의 보건위생관리)에 의거 채무, 하수, 접객업소, 어패류 등에 대한 세균검사 실시와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음.
 - 선원 및 승객의 입국이 없음.
 - 주기적으로 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숙련된 인력도 충분함.

I-6.

입국지점 내 또는 그 인근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위한 관리 사업과 숙련된 인력을 실천 가능한 한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검역구역 내 매개체와 병원소 관리를 위하여 세균검사 등을 통해 개선 노력 지속하고 있음.
- 검역소 별로 검역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검역구역에 대한 보건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 적절한 숙련된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나 인력 재배치(특히 임상병리사)가 되어야 된다고 봄.
- 제공 가능함.
-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모기 밀도 조사, 해외유입장내세균검사 등을 실시함.
- 제공 가능함.
- 숙련된 인력은 있으나 검역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임.
- 검역소명 임상병리사와 검사실을 확보하고 PCR, VITEK 등 검사장에 갖추고 일반세균 검사 수행 중이며, 다만 중요한 확인 검사 및 Virus검사는 CDC가 수행하고 있음.
- 매개체 · 병원소 관리를 위한 조사사업 진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 · 범위가 작고 예산이 취약함.
- 검사실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식수원, 음식점, 항공기내식 관련 시설, 공중화장실, 적절한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타

잠재적 위험지역 등 입국지점의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입국지점 주변 또는 인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직접적 처리 권한이 없는 실정임으로 적극적인 실천이 곤란함.
- 검역 구역 내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세균검사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검역관 및 검역소 검사실요원이 선박가검물 채취 및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을 매년 상시 실시하고 있음.
-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어패류 등의 감시와 페스트 예방을 위한 쥐를 잡아 질병관리본부에 이송함.
- 주기적으로 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숙련된 인력도 충분함.

II-1.

해당 입국지점의 조정자 및 접촉창구 지명, 공중보건 및 기타 기관과 서비스 등 공중보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 적절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공중보건 비상 계획 기 수립 ·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상태 발생 시 대응 역량은 다소 부족함.
- 신종 전염병 별로 단계별 위기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단계별 대응 준비체제가 잘되어 있음.
- 유관기관과 협의 필요함.
-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 수립함.
-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은 유관 기관 협력이 필요함.
- 대응할 역량은 있으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과 검역지원팀이 서로 미루어 검역소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할 것임.
-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CDC) 차원의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사항 수행함.
- 2003년 SARS의 성공적 대응 사례가 우리의 역량을 말해줌.

- 공중보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실제 수행할(대응) 할 역량은 인력·예산 등 부족하며,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대응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의 의무 사항 제정이 필요함.
- 관내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과 주기인 합동훈련 시행중이며 비상훈련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음.
- 입국지점의 유관기관(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관리소 등)들의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SARS 발생이후 어느 정도 인식의 변화로 역량의 강화가 진전되고 있음.
- 입국자 중 전염병 의심환자 임시격리 및 후송조치 생물테러 대비 전염병관리를 위한 장비 보유 및 관계 기관 협조체계는 수립되어 있음.
- 콜레라 및 생물테러 예방을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함.
- 비상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역량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임.

II-2.

격리,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의료 및 수의과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 여행자나 동물을 평가하고 돌볼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지역사회와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에서 격리병원을 모르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동물에 대한 평가는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감염 여행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음.
- 타 기관 및 병의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으로 감염여행자나 동물을 돌볼 역량은 마련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는 다소 미흡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동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음.
-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할 사항임.
- 관련기관(수의과학검역원)과의 협의 가능함.
- 시·도에서 지정한 격리 병원 이용, 수의과학검역원 별도 검역 실시함.
- 수의과학검역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실현 가능함.

- 격리 및 치료는 검역소 소관 사항이 아님(검역소는 의심환자를 색출하여 신속하게 격리병원으로 후송하는 것까지임).
- 동물검역은 농림부 소관으로 우리와는 별개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인수공통전염병에 한해 부처 간의 합의체 구성 운영 중임.
- 사람·동물·식물 검역이 각각 구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계가 필요하며, 총괄 기능의 제정 및 법제화가 필요함.
- 관내 종합병원 및 보건소 등과 환자 격리/수용/진료를 위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인력이 절대적 부족함.
- 격리/치료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동물과 관련한 수의과학원과의 협조체계는 미흡함.
- 입국자 중 전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후송체계 수립하고 있으며, 동물은 농림부 사하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담당함.
- 인근 보건소와 협조체계 유지 및 식물·동물 검역소와 원활한 업무 체계 확립됨.
- 협조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비상시(환자 발생시) 환자의 이송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II-3.

의심 또는 감염된 자와 면접하기 위하여 여행자로부터 떨어진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검역소 별로 적절히 면접할 공간을 가지고 있음.
- 입·출국장 내 사무실 확보 부족 및 시설협조로 감염자 면접 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임.
- 공항검역소 이외의 항만검역소에는 감염(의심)환자를 진료 또는 격리할 별도 공간이 대체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
- 현재로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음.
- 공사와 사전협의를 의한 장소 확보 시 가능함.
- 일부 검역소에만 설치되어 있음(공항이나 여객선 전용 터미널이 있는 항만 검역소에

설치되어 있음).

- 공항공사와의 사전 협의에 의한 장소 확보 시 가능함.
-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공간 전무함.
- 입국자에 대한 질병진단을 위해 검역질문서 작성 제출, 의심자에 대해서는 시진·문진, 발열감시를 통해 확진 검사를 수행함.
- 현재 검역진료실이 있긴 하나 공간의 협소하므로 충분한 (여행자 집단들과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역 장소에서 의심자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심환자에 대하여는 병원 후송 체제를 이용하고 있음.
- 입국장 내 임시 격리 시설 및 기초검사 장비가 구비되어 있음.
- 선박 검역의 경우 선박 내에서 하고 있음.
- 의심환자는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확보되어 있는 진료실에서 임시 격리 가능, 검역소 내에 임시 격리 할 수 있는 공간(방2개) 기 확보 조치함.
- 선원 및 여행자 입국자 없음.
- 여행자로부터 떨어진 적절한 공간이 없음.

II-4.

평가 필요시 감염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여행자를 되도록 입국지점에서 떨어진 시설에 격리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지역자치단체에서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검역소에서는 격리를 별도로 하지 않음. 검역소별로 격리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없어 활동하지 못함.
- 자체 격리시설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등 격리 필요시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등의 시설이 부족함.
- 검역소별로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인근 보건소와의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병원과의 일정한 격리병상이 갖추어져 있음.
- 역시 후송체계도 그나마 잘되어 있다고 봄.
- 인력 동원을 전제 조건으로 가능함.

- 각 시도별로 격리병원 지정되어 있음.
- 인력 충원을 전제 조건으로 가능함.
- 1~2시간 내의 일시적 격리만 가능함.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격리보호 시설 활용함.
- 간이 진료·진단시설의 설치가 필요함.
- 관내 종합병원 등에 격리 병상을 지정/운용하고 있음.
- 격리·치료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의심환자는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확보되어 있는 진료실에서 임시 격리 가능하며, 검역소 내에 임시 격리 할 수 있는 공간(방2개) 기 확보 조치함.
- 선원 및 여행자 입국자 없음.
- 여행자로부터 떨어진 적절한 공간이 없음.

II-5.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구제, 구서, 소독, 오염제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고 조치를 적용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소독 대행업체 관리 및 적절한 소독시행으로 오염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는 부실한 실정임.
- 운송 수단이나 일부 화물(고철)에 대한 소독 명령 체계 이외에는 없는 상태임.
- 전혀 되어 있지 않음.
- 인력 증원이 우선 문제임.
- 운송 수단에 대한 구충·구서 실시, 수출화물에 대하여 상대국이 요구 시 실시, 수입 고철 등에 대하여 소독 실시함.
- 인력 충원이 우선임.
- 전무하며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후송체계 및 격리병원 지정이 필요함.
- 법령에는 있으나 평상 시 실제로 수행하지 못함.
- 승객/승무원에 대한 입국검역외의 baggage나 화물에 대한 검역 조사는 인력 부족 등으로

로 실시 곤란함.(구체적인 검역조사 기법도 미개발한 상황임)

- 사람 위주의 검역실시와 동물·식물 검역 연계가 필요하며, 화물 등에 대한 검역 시각 지대임.
- 극히 제한적임.
- 검역 업무 수행 내용임.
- 검역법에 의거 검역관이 검역 조치 중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소독 명령을 내려 구서·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역 실시함.
- 운송수단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II-6.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출국 관리(입·출국 제한 등)를 적용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상당히 부족함.
- CIQ 기관이 갖추어져 있어 출입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그나마 대한민국 검역관리 면에서 잘 되어 있음.
- 현 인원으로 입국은 가능하나 출국은 불가능함.(인력 증원 필요)
- 검역법에 의한 강제적인 입·출국 제한 사례는 없음.(필요시 격리 조치)
- 출국 인력의 부족하여 불가함.
- 전무하며, 검역업무안내에 검역소장이 해야 하는 것처럼 애매하게 되어 있음.
-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합 계획 반영이 필요함.
- 검역소 단독으로는 곤란하고, 국제의료차원 고려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국가 위기 대응 체계 구축 필요함.
- 일반 역량 협조 체계 법제화 필요하며, 출입국 관리 법령과의 상호 연계 필요함.
- 환자/유증상자에 대한 조치 역량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음.
- 여행객이 없으나 승무원에 대한 제한은 검역전염병 환자로 의심될 경우 가능할 것임.
- 입출국 제한은 실제적으로 세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로 행해질 수 있음.

- 선원 및 입국자 없음.

II-7.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수 있는 여행자의 이송을 위하여 특정 장비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숙련된 인력(별도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활용도는 다소 떨어짐.
- 검역소별로 여행자 이송을 위한 보호 장구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음(인천공항 검역소의 경우는 구급차도 완비).
- 숙련된 인력은 보통이나 그나마 의사환자 후송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음.
-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이 필요함.
- 이송 장비인 경우 보건소 앰블런스를 이용, 개인 보호 장구는 각 검역소마다 비치되어 있음.
-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 가능함.
- 생물테러 전염병에 대한 숙련된 인력 전무하며, 1~2명의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장비 및 개인 보호 장구 인력만 있음.
- 생물테러대응 등 보호복이 일부 지급되어 있으나 검역관에 비해 수량이 매우 부족함 (해항 · 공항에는 검역관 포함 수많은 출입국 종사자가 있음).
- 공중보건의 및 개인 보호 장구 비치 등으로 어느 정도 대응가능 하나 상시 대응을 위한 중앙 차원의 모의훈련 등이 필요함.
- 개인 보호 장구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충원이 필요하며, 현재는 비상시 대비한 최소 수량만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며(1회 사용 분량 비치됨), 보유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함.
- 보호 장구 및 훈련된 인원이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음.
- 유관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 생물테러와 관련한 1인 장비와 마스크 정보 보유하고 있음.
- 생물테러대비 기초 보호 장구를 보유하고 있음.

- 생물테러 장비 비치 및 활용 방법 숙지하고 있음.

[부록 5]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As of December 21, 2001

서문

MESHPA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때에 계획하고 예방하고, 생물테러(Bioterrorism)를 포함한 공중보건 응급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중보건에 대한 권한을 주(State)와 지방의 공중보건당국에게 부여한다. 이 법안은 그들 주의 공중보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와 지방의 입법자들 및 전국의 건강관련 공무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2001년 10월 초안이 작성되었고 12월에 최종판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안은 2006년 4월 15일 현재, 44개 주와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Northern Mariannas Islands에서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의 구성

PRAMBLE

ARTICLE I Title, finding, purposes, and definitions

ARTICLE II Planning for a public health emergency

ARTICLE III Measures to detect and track public health emergencies

ARTICLE IV Declaring a 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

ARTICLE V Special powers during a states of public health emergency : management of
property

ARTICLE VI Special powers during a states of public health emergency : protection of persons

ARTICLE VII Public information regarding public health emergency

ARTICLE VIII Miscellaneous

전문(Preamble)

9.11 테러 이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새로이 발생되거나 재발하는 감염성 질환, 대형 사고 등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 요소들이 국민들을 심각한 위협에 당면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예방, 발견, 관리 및 억제 정책을 필요로 한다.

생물테러와 전염성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을 포함하는 Emergency health treats에 대해서는 정부가 몇 가지 필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각의 주가 건강, 안전 및 복지의 보호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와 지방 정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The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는 그러므로 각 주의 주지사(governors)와 공중보건당국에 특정한 응급 시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 적절하게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정보와 기록의 보고 및 수집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즉각적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공중보건 응급상황 중에, 주와 지방 정부는 치료와 보호, 환자들에 대한 주거 제공, 오염된 시설이나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거나 질병 상태인 사람들에게 보건 서비스의 제공, 검사, 치료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자들을 격리할 권한도 주어진다.

동시에, 이 법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 보건 권한(Emergency health powers)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mergency powers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과 질병 전파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에 의해, 주와 지방정부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이 법은 Emergency powers를 행사하는 때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된 사람들의 시민권, 자유 및 요구가 심각한 건강 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공중보건법과 우리 법원은 전통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추구해왔다. Harlan 대법관이 Jacobson v. Massachusetts의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the whole people covenants with each citizen, and each citizen with the whole people, that all shall be governed by certain laws for the 'common good'." 이 법은 그 조화를 꾀한다. 이 법은 주와 지방 정부에게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 발견, 관리의 권한을 준다.

비록 현대화된 공중보건법이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중보건체계 그 자체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공중보건 인력과 효율적인 정보 체계 및 충분한 실험적 역량이 요구된다.

Article I Title, Findings, Purposes, and Definitions

Section 101 Short title.

이 법의 명칭은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로 한다.

Section 102 Legislative findings.

주의 입법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영해야 한다.

- (a) 정부는 국민의 건강, 안전 및 전반적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b) 새롭게 나타나거나 다시 발생한 감염성 질환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위험 요인들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내포한다.
- (c)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해 예방, 발견, 관리 및 억제에 새로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d) 생물테러에 의해 야기되는 것과 같은 Emergency health threats은 예외적인 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수행을 요구한다.
- (e) 주(State)는 잠재적 혹은 실제적인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f) 응급 보건 권한(Emergency health powers)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g) 응급 보건 권한(Emergency health powers)은 공중 보건 위협(public health threats)과 질병 전파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기반

으로 해야 한다.

- (h) 정의의 원칙과 비차별주의(antidiscrimination) 원칙에 따라, 주의 의무는 개인 및 집단에게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 (i) 자유권, bodily integrity(신체 통합성) 및 프라이버시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j) 이 법은 이 주(State)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Section 103 Purpose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공중보건 응급상황이 발생한 때에 협력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 (b) 자금의 관리, 국민의 보호, 의사소통에의 접근, 정보와 기록의 보고 및 수집의 권한을 부여한다.
- (c) 특정한 경우에 개인의 건강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d) 주와 지방 정부에게 치료와 보호, 환자들에 대한 주거 제공, 오염된 시설이나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e) 주와 지방 정부에게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거나 질병 상태인 사람들에게 보건 서비스의 제공, 검사, 치료 및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자들을 격리할 권한을 부여한다.
- (f) 감염되었거나 노출된 사람들의 요구는 심각한 건강 위협을 통제하려는 일차적 목적 내에서 가능한 한 보장한다.
- (g) 주와 지방 정부에게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 발견, 관리의 권한을 준다.

Section 104 Definitions.

- (a) "생물테러"라 함은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성 물질 혹은 생물공학의 결과로 만들어진 생물학적 제조물의 의도적인 사용, 또는 시민들을 위협/억압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

고 사람, 동/식물 및 다른 생명체에게 죽음, 질병, 다른 생물학적 불구상태를 야기하기 위해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물질, 생물학적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b) "chain of custody"이라 함은 검체의 수집에서부터 최종 배치에 이르기까지의 책임과 통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검체를 추적하고, 검체를 수집, 취급, 검사, 보관 및 이동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각 단계에서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 (c) "contagious disease(전염성 질환)"이라 함은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 질병이다.
- (d) "health care facility(건강 관리 시설)"는 건강 서비스, 의학적 치료 혹은 간호, 재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비연방(non-federal) 기관, 빌딩 또는 사용되는 영리,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 (e) "health care provider(건강 관리 제공자)"는 병원, 클리닉, 의원, 특별 관리 시설, 의학 실험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physician assistants, 간호사, nurse practitioners, 보조원, 응급 의료 혹은 실험실 기술자, 및 응급 구조사를 포함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이다.
- (f) "infectious disease(감염성 질환)"이라 함은 진균, 박테리아, 기생충, 원생동물,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혹은 다른 병원체에 의해 야기되는 질병을 말한다. 감염성 질환은 사람에서 사람, 동물에서 사람, 곤충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g) "infectious waste"라 함은,
 - (i) "biological waste"는 혈액, 혈액 부산물, 분비물, 배설물, 삼출물 및 기타 혈액 또는 체액으로 젖은 쓰레기를 포함한다.
 - (ii) "cultures and stocks"는 병원체 및 검체 및 이송 및 접종 등에 사용되는 장치 및 도구, 검체를 포함한 관련된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한다.
 - (iii) "pathological waste"는 생검 물질, 모든 조직, 수술이나 산과적 시술, 부검, 해부 및 실험실적 절차 후에 나오는 인간 신체의 일부, 연구를 위해 병원체에 노출된 동물의 시체 등을 포함한다.
 - (iv) "sharps"는 오염된 바늘, 바늘이 달린 정맥주사 튜브, 나비바늘, 란셋, 깨질 수 있는 유리 튜브 및 주사기를 포함한다.

- (h) "isolation(격리)"은 격리되지 않은 개인에게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격리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감염성 질환에 걸렸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개인 및 집단을 신체적으로 분리 및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 (i) "mental health support personnel"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및 위기 상담 그룹을 포함한다.
- (j) "organized militia"는 미국 주방위군(State National Guard), 육군, 공군, 또는 이 주의 법에 의해 조직된 기타 군대 조직을 포함한다.
- (k) "protected health information"라 함은 구두, 서면, 전자, 시각적 혹은 기타 다른 형태의 정보를 말하며, 개인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치료, 서비스, 구매 상품, 및 관리 항목 및 개인의 건강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한 정보는 개인의 식별 정보를 삭제하여 활용될 수 있다.
- (l) "public health authority"는 공중 보건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 정부 기관 및 그 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
- (m) "public health emergency(공중보건 응급상황)"은 질병 또는 건강 상태의 발생 혹은 즉각적 위협의 상태를 말한다.
- (1) 다음의 것들에 의해 발생 된다.
- (i) 생물테러(bioterrorism)
 - (ii) 새로운 혹은 이전에 통제되었거나 근절되었던 감염성 물질 혹은 생물학적 독소의 발생
 - (iii) [자연 재해]
 - (iv) [화학적 공격 혹은 화학물의 방출 사고]
 - (v) [핵 공격 혹은 사고] ;
- (2)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i) 수 많은 사람들의 사망
 - (ii) 중대하거나 장기간의 불구상태
 - (iii) 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감염성 혹은 독성물질의 만연
- (n) "public safety authority(공중보건당국)"이라 함은 지방의 정부 기관, 혹은 지방 기관의 업무에 대한 권한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 (o) "Quarantine(검역)"은 전염성 질환의 증상/증후를 보이지 않는

전염성 혹은 전염 가능한 질병에 노출된 개인 혹은 집단을 건강 한 사람들로의 전파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물리적인 분리 및 구금이다.

- (p) "specimens(검체)"는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혈액, 객담, 뇨, 변 및 다른 체액, 배출물, 조직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q) "tests(검사)"는 대중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적 혹은 연구 상의 분석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r) "trial court"는 공중보건 응급상황이 선포된 지방의 법원 혹은 이 법의 제2장 내용에 의한 법원, 격리 및 검역이 발생한 지방의 법원을 의미한다.

Article II Planning for a public health emergency

Section 201 Public Health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주지사는 사법부 구성원, 주 입법자 대표 등 공중 보건 응급상황 대비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기관의 State directors 또는 그의 지명자로 구성된 Public Health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을 만들고 위원장을 임명한다.

Section 202 Public Health Emergency Plan.

- (a) content. 위원회는, 구성된 지 6개월 이내에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계획을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조항 또는 지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이 법에 의해 공중보건 응급 상황 중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의 보고
 - (2) 주, 지방, 연방 기관의 지원 등을 포함한 자원, 인력 및 서비스에 대한 중추적 관리의 수행
 - (3) 의료 서비스,약품, 예방접종, 음식, 피난처, 주거의 공급 등 필수 자원의 위치선정, 조달, 보관, 이송, 유지관리 및 분배
 - (4) 301조에 제시된 요건의 보고에 대한 순응
 - (5) 이 법에 기술된 격리 및 검역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의 결정에 의하여 개인을 확인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사법체계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수행

- (6) 응급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들에게 주거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방법
 - (7) 감염성 질환에 이환된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건강 관리 제공자의 선정 및 훈련
 - (8) 이 법의 조항에 따른 예방접종
 - (9)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건강 상태나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노출된 사람들의 치료
 - (10) 이 법에서 정한 인간 배출물이나 감염성 쓰레기의 안전한 폐기에 대한 사항
 - (11) 공중보건 응급상황 중에 치료, 검사,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검역을 받았거나 격리가 된 사람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제
 - (12) 감염된 사람의 자료나 결과에 대한 추적
 - (13)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주의 도시나 지역을 확인 한다-
 - (i) 이 법의 검역 또는 격리의 원칙 및 상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격리되는 장소
 - (ii) 의학적 서비스의 공급, 음식 및 다른 필수 사항들을 사람들에게 분배할 장소
 - (iii) 공중보건 및 응급인력이 머무를 장소
 - (iv) 인력 및 물품이 이송되는 경로 및 방법
 - (14) 관련된 문화적 상황, 가치, 종교적 원칙 및 전통
 - (15)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방법들
- (b) Distribution. 위원회는 그것의 적용에 책임이 있는 이들,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 대중에게 이 계획을 알려야 하고, 그들의 검토와 의견을 받아야 한다.
- (c) Review. 위원회는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매 년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Article III Measures to detect and track public health emergencies

Section 301 Reporting.

- (a) Illness or health condition(질병상태). 건강관리자, 조사관, 또는 의학적 시험자는 공중보건 응급 상황을 야기할 잠재성이 있는 건강 상태 혹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 질병으로는 42 C.F.R. § 72, app.

A(2000)에 제시된 생물학적 제제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질병 및 건강상태, 공중보건 당국에 의해 확인된 건강상태 및 질병이 포함된다.

- (b) Pharmacists(약사). 건강 관리자에 대해 앞서 요구한 바에 덧붙여, 약사는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처방의 경향, 흔하지 않는 처방, 드물거나 증가된 처방 비율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요하는 처방 관련된 사례는 다음을 포함 한다-
- (1) 공중보건 당국이 규정한 치료 상태에 대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나 처방의 양적 증가
 - (2) 항생제 처방의 증가
 - (3) 생물테러와 관련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처방.
- (c) Manner of reporting(보고방법). 보고는 24시간 내에 공중보건 당국에 서면 혹은 전자문서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는 다음의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해야 한다 : 질병명 또는 건강상태,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인종, 직업 및 현재 거주지 및 직장 주소(city, county 포함) ; 건강관리자의 이름과 주소, 조사자, 의학적 검사자, 보고자 ; 추후 관리에 필요한 환자의 위치에 대한 기타 정보. 동물이나 곤충에 물린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물이나 곤충의 의심되는 위치 정보, 동물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고해야 한다.
- (d) Animal disease. 모든 의사, 가축 소유주, 수의 진단 실험실 관리자, 혹은 다른 동물 보호 관리자는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동물의 질병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24시간 이내에 공중보건당국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 질병 및 건강상태, 동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 소유주의 이름 및 주소, 보고자의 이름 및 주소.
- (e) Laboratories.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건강관리자(health care provider)"의 정의는, 이 주의 보고 요건에 적합한 다른 주(out-of-state)의 의학 실험실을 포함한다. 실험실에서 검사에 의해 나온 결과는 보고되어야 하고, 다른 주의 실험실에 검체를 보낸 주(in-state)의 실험실은 보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 (f) Enforcement. 공중보건당국은 명령과 규정의 항목에 따라 이 조

항을 수행을 강요할 수 있다.

Section 302 Tracking(추적).

공중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강상태 및 질병의 사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 감염의 근원에 대한 모든 사례를 조사하고, 적절한 통제 방법에 대한 문제를 확인 한다 ; 질병 혹은 건강상태의 분포에 대해 정의한다. 이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보건당국은 다음에 제시된 바에 따라 해당 개인을 확인 한다-

- (a) Identification of individuals(개인의 식별) 이 법 301조에 따라 공중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 혹은 건강 상태에 노출된 개인에 대한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 (b) Interviewing of individuals(면담의 실시). 공중보건당국은 질병 혹은 건강상태의 전파 및 감염원과 관련된 정보의 습득, 노출된 개인의 확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과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이름, 주소(city, county 포함), 질병명을 포함한다.
- (c) Examination of facilities or materials(시설 혹은 물질의 평가). 공중보건당국은 시험 목적을 위하여,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시설이나 물질에 대해 접근, 평가 혹은 오염의 방지, 시설의 오염 방지, 오염 물질의 파괴할 수 있다.
- (d) Enforcement(강제). 공중보건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조항들을 수행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중보건당국의 명령은 공공안전당국에 의해 즉각적으로 강요된다.

Section 303 Information sharing(정보의 공유).

- (a) 공중보건당국 혹은 다른 주, 지역 정부의 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질병 및 건강상태,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일상적이지 않은 집단적 발생 혹은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 들었을 경우 즉시 공중보건 당국에게 보고해야 한다.
- (b) 공중보건당국이 보고해야 하는 질병 혹은 건강 상태의 사례에 대해 들을 때에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일상적이지 않은 집단적 발생(unusual cluster) 혹은 의심스러운 사건이 생물테러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그것은 즉시 공공안전당국, 지역 당국 및 연방의 공중보건당국에게 보고해

야 한다.

- (c) 보고할 질병, 건강상태, 일상적이지 않은 집단적 발생 혹은 공중보건과 안전당국 사이의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한 정보의 공유는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예방, 조사, 통제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된다.

Article IV Declaring a 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

Section 401 Declaration(선포).

공중보건 응급상황인 경우 주(State)는 이 법 103조 (m)에 따라 주지사에 의하여 "public health emergency(공중보건 응급상황)"의 발생이 선포될 수 있다. 선포에 앞서, 주지사는 공중보건 당국과 상의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중보건 전문가 또는 다른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주지사는 공중보건당국과, 혹은 시간이 촉박한 경우 다른 전문가와의 협의 없이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선포할 수 없다.

Section 402 Content of declaration(선포의 내용).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진술은 특성화된 행정 명령에 의해 공포되어야 한다.

- (a)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특성
- (b)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의 정치적 혹은 지역적 구분 기준
- (c) 공중보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상황
- (d) 만일 30일 이내라면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기간
- (e) 응급상황에 대처할 일차적 공중보건 당국

Section 403 Effect of declaration(선포의 효과).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선포는 정치적 분할 혹은 지역에 따라 주, 지역, 사법관할 내의 재난 계획의 복구 국면 및 재난 반응으로 가동된다. 이러한 선포는 이 법에 의거하여 사용 가능하거나 비축되고, 결집된 시설 및 물품, 장비 등 공급품의 분배 혹은 사용 및 공급 계획에 대한 권한의 사용 및 운용을 정당화한다.

(a) Emergency powers(응급권).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기간 동안 주지사는 ;

- (1) 엄격한 수행이 공중보건 응급상황 혹은 국민들에 대한 건강 위협을 증가시키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당국이 수

행해야 하는 행위를 지연 혹은 방해하는 경우 주 기관의 규칙, 규정 및 명령, 주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기술된 규정의 절차 조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 (2)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하다고 합당하게 판단되는 경우 주 정부와 하위 부서들의 모든 유용한 자원의 이용할 수 있다.
 - (3)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프로그램의 복구 및 대처를 용이하게 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주의 기관이나 부서의 기능, 인력,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
 - (4) 주의 서비스 안에서 조직된 민방위군(militia)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동원할 수 있다. 적극적인 의무 보고를 위해 조직된 민방위군의 향방에 대한 명령은 동원된 목적과 완수된 목표를 포함한다.
 - (5) 이 주와 체결된 주 사이의 응급 상황에 대한 계약에 따라서 다른 주로부터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6) 연방 프로그램 혹은 요구에 따라서 연방 정부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b) Coordination(협력). 공중보건당국은 주의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에 관련된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한다. 공중보건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일차적 사법권,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 (1) 계획 및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평가, 완화, 대처에 대한 준비 및 복구 ;
 - (2) 주와 지방 정부 사이의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협력 ;
 - (3) 관련된 연방정부 당국, 다른 주의 선출된 당국자, 사립조직 및 회사와의 협력 ;
 - (4)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따른 복구 작업에서의 협력 ;
 - (5)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작업 수행 대한 공공 정보 활동의 조직.
- (c) Identification(확인). 주의 공중보건 응급상황 선포 후에, 모든 공중 보건 인력의 업무 확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확인(Identification)은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에 응급권(emergency powers)과 공중보건 기능 수행에 대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권한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공중 보건 인력은 명료한 관점에서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404 Enforcement.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상태에서, 공중보건당국은 공공안전당국(public safety authority)으로부터 이 법에 다른 시행 명령에 의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안전당국은 공중보건당국의 시행명령에 따라 조직된 민방위군(militia)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405 Termination of declaration.

- (a) Executive order(행정 명령). 주지사는 행정 명령에 의해 공중보건 응급상황 선언을 종료할 수 있다.
- (b) Automatic termination(자동적 종료).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주지사가 4장 Section 4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갱신하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선언은 30일 후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그러한 갱신 역시 주지사의 또 한 번의 갱신이 없다면 30일 후에 자동 종료된다.
- (c) State legislature(주 입법). 상/하원에서의 다수결에 의하여, 주 입법은 응급 상황이 더 이상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대다수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중대하고 영구적인 불구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뒤따르는 해악의 위험을 가지지 않는 경우 선언의 날짜에서 언제라도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종료할 수 있다. 주 입법에 의한 그러한 종료는 주지사의 응급상황 갱신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 (d) Content of termination order(종료 명령의 내용).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선언을 종료하는 모든 명령과 입법 행위는 응급의 특성, 위협을 받는 지역, 선언의 종료를 가능하게 하는 상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rticle V Special powers during a 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 management of property

Section 501 Emergency measures concerning facilities and materials.

공중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응급의 상황에서 시설과 재화에 대해 다음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 (a) Facilities(시설).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질 합당한 이유가 있는 시설의 정화 혹은 철거를 지시와 강제.
- (b) Materials(재화).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질

합당한 이유가 있는 재화의 파괴 혹은 정화.

Section 502 Access to and control of facilities and property-generally.

공중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기간 동안 공공장소, 도로, 시설 및 재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Use of materials and facilities.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시설들의 조달, 구성, 임대, 이송, 저장, 유지, 개선 및 공급하는 것. 이러한 재화와 시설들은 의사소통 장치들, 운반 장치, 부동산, 연료, 음식 및 의복 등을 포함한다.
- (b) Use of health care facilities. 건강관리 시설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 권한 및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만일 공중보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러한 서비스 또는 사용이 합당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에 시설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관리 시설을 요구하는 것. 건강관리시설의 사용은 공중보건 응급상황 상태의 선언 종료 시점을 지나지 않은 때에, 건강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공중보건당국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 (c) Control of materials.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대처에 필요할 경우, 할당량을 사용 및 분배함으로써 조사, 통제, 제한 및 규제하고, 운송, 배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 판매, 분배, 그리고 식품, 연료, 의복 및 다른 필수품의 운송을 금지하는 것.
- (d) Control of roads and public areas(공공장소와 도로의 통제).
 - (1) 사람의 대피 또는 응급 시 식량 후송과 관련하여 운송의 경로 및 방법과 목적지를 기술하는 것.
 - (2) 만일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에 필요한 경우, 그 지역 안에서의 사람들의 이동,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의 건물의 점거, 공포 상황 혹은 위협을 받는 공공 장소로부터의 진입 및 탈출을 제한 혹은 통제하는 것.

Section 503 Safe disposal of infectious waste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공중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기간 동안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 (a) Adopt measures (방법의 채택).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대처로서

필요한 경우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에는 감염성 폐기물의 수집, 저장, 취급, 파괴, 처리, 이송 등이 포함된다.

- (b) Control of facilities (시설의 통제). 만일 그러한 조치가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업이나 시설을 통한 사업의 지속적 수행의 능력, 권한, 허가가 있는 때에, 이 주의 법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의 수집, 저장, 취급, 파괴, 처리, 이송 및 폐기를 위하여 시설이나 사업, 그리고 매립지 사업 혹은 기타 그러한 소유지를 요구하는 것.
- (c) Use of facilities (시설의 사용).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경우 감염성 폐기물의 수집, 저장, 취급, 파괴, 처리, 이송 및 폐기에 대한 권한이 있는 시설이나 사업, 그리고 그러한 재화 혹은 매립지 사업 등.
- (d) Identification (확인). 감염성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모든 가방, 박스 또는 다른 용기에는 감염성 폐기물을 포함한다는 표기가 분명히 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도 표기해야 한다.

Section 504 Safe disposal of human remains.

- (a) Adopt measures (방법의 채택).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대처에 필요한 경우 human remains의 안전한 폐기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강요할 수 있다. 이들 방법에는 human remains의 폐기, 이송, interment(발굴), disinterment, 매장, 소각, 향료처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b) Possession (소유권). human remains의 통제 혹은 소유.
- (c) Disposal (처리). 사망 이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혹은 화장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은 사람의 human remains의 폐기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가능한 한 고인 혹은 그 가족들의 종교적, 문화적, 가족이나 개인의 신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human remains를 처리하도록 한다.
- (d) Control of facilities (시설의 통제). 시설 혹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 권한, 또는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 사업이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human remains의 수용을 위한 이 주의 법에 따라 human remains의 처리, 이송, 발굴, 매장, 화장, 향

료처리에 대한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이나 사업의 사용은 그러한 사업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제한된 기간 동안 공중보건당국에게 주는 것을 포함하며,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상태에 대해 종료가 선언된 시점을 넘지 못한다.

- (e) Use of facilities (시설의 사용).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경우, 이 주의 법에 따라 감염성 쓰레기의 처리, 이송, 취급, 파괴, 저장, 수집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f) Labeling. 폐기처리에 앞서 모든 human remains는 사망의 상황과 사망자 확인을 위한 정보에 대하여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망자의 human remains는 그 사람이 감염되었고, 전염성 질환을 앓았었다는 점에 대해 시신 외부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태그를 붙여야 한다.
- (g) Identification. Human remains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은 유용한 사망 환경 및 사망자 확인 정보 및 각 개인에 대한 서면 혹은 전자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human remains가 처리되기 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한 한 지문 및 human remains의 사진, 확인할 수 있는 치과 정보, DNA 검체를 수집해 놓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얻어진 모든 정보는 공중보건 당국에게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Section 505 Control of health care supplies.

- (a) Procurement (획득). 공중보건당국은 추가적 입법적 권한부여 없이,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통제 혹은 준비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anti-toxins, serums, vaccines, immunizing agents, antibiotics, 및 pharmaceutical agents 혹은 의학적 공급품을 구매 및 분배할 수 있다.
- (b) Rationing (배급). 만일 공중보건 응급상황이 주 혹은 지역적 저장 혹은 (a)항에 따른 모든 물품의 저장에 위협을 초래한 경우, 그 물품들이 공중보건당국에 의해 구매된 것이든 아니든, 공중보건당국은 주 시민들의 공중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물품의 이송, 분배, 판매, 사용, 그리고 통제, 제한, 할당, 배급의 규제, 이송 금지 및 위치 혹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 (c) Priority (우선순위). 공급 및 분배에 대한 결정에서, 공중보건당국은 건강관리 제공자, 재난 구조사(disaster response personnel)

및 장례식장 직원(mortuary staff)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d) Distribution (분배). 공중보건 응급상황 기간 동안, 공중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필요한 경우 주 안의 anti-toxins, serums, vaccines, immunizing agents, antibiotics, 및 pharmaceutical agents 혹은 의학적 공급품을 조달, 저장 혹은 분배할 수 있다. 만일 공중보건 응급상황이 한 가지 이상의 상황이라면, 이 조항은 공중보건당국이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를 하는 것을 막거나 그러한 물품들의 저장의 목적으로 anti-toxins, serums, vaccines, immunizing agents, antibiotics, 및 pharmaceutical agents 혹은 의학적 공급품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Section 506 Compensation.

주는 이 법의 Section 805의 4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 장(Article)에 나타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공중보건 당국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과 재화의 소유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은 501조와 같이 공중보건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고 믿어지는 합당한 이윤이 있을 때 파괴되거나 정화되거나 철수되는 시설이나 재화들에 대하여 제공되지 않는다.

Section 507 Destruction of property.

이 장(Article)에 의해 모든 재화의 파괴에 우선하여, 실행할 수 있는 한 공중보건당국은 이 주의 법원의 규칙과 법 또는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의 사용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진행된 그러한 규칙에 따라 파괴되는 재화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한 소송을 통하여 공중보건 당국에 의하여 획득되는 모든 재화는 법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파괴됨으로써 처리된다.

Article VI Special powers during a 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 protection of persons

Section 601 Protection of persons (사람에 대한 보호).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공중보건당국은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고, 전염성 질환의 모든 사례에서 적합한 치료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Section 602 Medical examination and testing (건강검진 및 검사).

- (a) 건강검진 혹은 검사는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받은 사람에게 의하여 시행된다.
- (b) 건강검진 혹은 검사는 영향을 받을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 (c) 604조에 따라 공중보건당국은 감염성 질환 혹은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른 감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 중에서 강검진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혹은 검역을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603 Vaccination and treatment (예방접종 및 치료).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공중보건당국은 필요한 경우 사람에게 대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 Vaccination (예방접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전염성 질환의 전파 혹은 가능한 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 (1) 예방접종은 공중보건 당국에 의하여 권한을 받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의하여 수행된다.
- (2) 등록된 백신은 적용될 개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보건당국은 60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건강, 종교, 또는 양심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격리 혹은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b) Treatment (치료).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

- (1) 치료는 공중보건당국에 의하여 권한을 받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의하여 수행된다.
- (2) 치료는 적용될 개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보건당국은 604조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을 건강, 종교, 또는 양심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격리 혹은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Section 604 Isolation and quarantine (격리 및 검역).

- (a) Authorization.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공중보건 당국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격리 혹은 검역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예방접종, 치료, 검사, 혹은 602조, 603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을 포함한다. 공중보건당국은 또한 격리와 검역의 장소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고, 규정 및 명령을 정할 수 있다. 이들 규정, 명령 및 조항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 (b) Conditions and principles. 공중보건당국은 개인 및 집단에 대해 검역 혹은 격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 (1) 격리 및 검역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혹은 사적인 건물 혹은 자택에만 머물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제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2) 격리된 개인은 검역을 거친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3) 검역 혹은 격리된 개인의 건강 상태는 검역 혹은 격리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4) 만일 검역을 실시한 개인이 그 이후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합리적으로 감염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 혹은 그녀는 격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5) 격리되거나 검역을 한 개인이 전염성 질환의 전파의 충분한 위험이 없는 경우 곧바로 해제시켜야 한다.
 - (6) 적절한 의학적 치료, 투약 및 이것들에 대한 결정 이외에도 검역 혹은 격리를 제공하는 것 등 검역 및 격리 상태에 있는 자의 요구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이 방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 (7) 격리 및 검역에 사용되는 건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격리 및 검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염의 전파 혹은 다른 해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8) 가능한 한, 격리 및 검역 장소의 유지 및 설립, 개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 (c) Cooperation. 격리 또는 검역의 대상인 자는 공중보건당국의 규칙 및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격리 또는 검역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에 따르지 않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 (d) Entry into isolation or quarantine premises.

- (1) Authorized entry. 공중보건당국은 격리 또는 검역의 대상인 개인들의 요구를 사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건강관리 전문가, 혹은 격리 또는 검역에서 개인과 접촉하는 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2) Unauthorized entry. 공중보건당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 외에는 누구도 격리 또는 검역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지 않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 (3) Potential isolation or quarantine. 공중보건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거나 받지 않은 격리 또는 검역 장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604조 (a)항에 따라 격리 또는 검역의 대상이 된다.

Section 605 Procedures for isolation and quarantine.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개인 또는 집단의 격리 및 검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a) Temporary isolation and quarantine without notice.

- (1) Authorization(권한의 부여). 공중보건당국은 검역 또는 격리의 수행의 지연이 전염성 혹은 가능한 전염성 질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제한 또는 예방하려는 공중보건당국의 능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경우 서면 지침(written directive)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일시적 격리 혹은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 (2) Content of directive(지침의 내용). 서면 지침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i) 격리 또는 검역의 대상이 되는 개인 혹은 집단의 확인 (ii) 격리 또는 검역의 수행 장소 (iii) 격리 또는 검역이 시작되는 날짜와 시간 (iv) 의심되는 전염성 질병 (v) 이 법에 관련된 정의 및 이 법 6장의 내용.
- (3) Copies. 서면 지침의 내용은 격리 또는 검역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만약 그 명령이 집단에게 적용되거나 개인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 또는 검역 장소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될 수 있다.
- (4) Petition for continued isolation or quarantine. 서면 지침의 발행 후 10일 이내에, 공중보건당국은 격리 또는 검역 대상인 개인 또는 집단의 지속적인 격리 또는 검역에 대하여 권한을 얻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605조 (b)항에 의거, 탄원서

를 제출할 수 있다.

(b) Isolation or quarantine with notice.

- (1) Authorization(권한의 부여). 공중보건당국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위하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Content of petition(탄원의 내용). (b)(1)항에 따라 탄원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i) 격리 또는 검역의 대상이 되는 개인 혹은 집단의 확인 (ii) 격리 또는 검역의 수행 장소 (iii) 격리 또는 검역이 시작되는 날짜와 시간 (iv) 의심되는 전염성 질병 (v) 604조의 격리 및 검역에 대한 원칙 및 상황에 따른 진술 (vi) 이 조항에 따라 정당화된 격리 또는 검역에서의 원칙에 대한 진술. 탄원은 법원의 심리에 대한 자료 및 관련된 추가적 정보 및 탄원서에 주장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중보건당국의 진술서 내용에 대한 맹세와 함께 이루어진다.
- (3) Notice(통지). 탄원서에 진술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통지는 민사 소송의 규칙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4) Hearing. 심리(審理)는 이 법의 조항에 따라 탄원서의 제출 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나 공중보건당국은 10일까지 심리는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개인의 권리, 대중의 건강에 대한 보호, 증거와 증인의 활용 및 응급 상황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참작될 수 있다.
- (5) Order. 법원은 격리 또는 검역이 전염성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탄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i) 격리 또는 검역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의 행사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 (ii) 명령은 (a) 이름 또는 공유되거나 유사한 특성이나 상황으로 격리 또는 검역 대상인 개인 또는 집단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b) 이 법에 따라 허가된 검역 또는 격리의 사실 조사 결과를 기입해야 한다 (c) 격리 및 검역이 이 법에 의해 제한되고 진술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d) 민사 소송의 규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제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6) Continuances(연기). 605(b)(5) 조항에 따라 수행된 명령의 만

료에 앞서, 공중보건당국은 연장의 일수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격리 또는 검역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605(b)(5) 조항의 기준에 따라 그 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

(c) Relief from isolation and quarantine.

(1) Release. 이 법에 따라 검역이나 격리가 적용된 개인이나 집단은 개인이나 집단이 격리 및 검역에서 풀릴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 신청 48시간 이내에 이유 증명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일 법원이 그것의 적용을 허가한다면, 법원은 이유 증명을 위한 명령의 발포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유 증명을 위한 심리(審理) 일정을 세워야 한다. 명령의 발표는 격리 또는 검역 명령을 요구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2) Remedies for breach of conditions. 이 법에 따라 검역이나 격리가 적용된 개인이나 집단은 격리 또는 검역의 상태 불이행에 관한 구제를 위하여 재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 요청은 격리 또는 검역 명령을 요구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i) 구제의 즉각적 제공을 정당화하는 예외 상황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제출된 요청에 대해서, 법원은 요청의 접수로부터 24시간을 넘지 않는 주장의 건에 대한 심리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

(ii) 그렇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요청의 제출 시 법원은 요청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주장된 건에 대한 심리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

(3) Extensions. 이 조항에 하에서 구제를 위한 진행 시, 예외적인 상황 및 바람직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당국은 심리 날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개인의 권리, 대중의 건강에 대한 보호, 증거와 증인의 활용 및 응급 상황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참작될 수 있다.

(d) Proceedings. 이 조항에 따른 진행의 기록은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 관계자들은 재판에 개인적으로 출정(出廷)할 수 없으며, 진행은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표에 의해서 행해지며, 완전한 참여를 위한 모든 관련자들의 허락에 따른 방법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e) Court to appoint counsel and consolidate claims.

- (1) Appointment.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 법의 조항에 따라 검역을 받거나 격리된 자 혹은 집단을 대신하여 변호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정해 놓아야 한다. 비용의 지정은 공중 보건 응급상황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혹은 집단의 격리 또는 검역의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공중보건당국은 그러한 개인 혹은 집단과 그들의 변호사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2) Consolidation.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하여 그리고 해당 개인의 권리를 감안하기 위하여, 공공의 건강 보호, 응급의 심각성 그리고 필요한 증인 및 증거의 유용성, 법원은 그 개인 또는 집단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 (i) 해당되는 개인들이 재판에 참여하기 불가능한 경우
 - (ii) 개인의 권리나 요구에 대한 법적 혹은 사실적 질문
 - (iii) 집단의 요청 혹은 권리는 개인의 요구 혹은 권리를 상징한다.
 - (iv)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집단은 적절하게 대리된다.

Section 606 Collection of laboratory specimens ; performance of test.

공중보건 응급상황 중에, 공중보건당국은 검체를 모으고, 602조 조항에서 제공되는 바에 따라 생존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또한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대처에 필요한 경우 이전에 수집된 검체 혹은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a) Marking. 모든 검체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b) Contamination. 검체의 수집, 취급, 저장 및 검사실로의 운반은 검체가 오염되거나 섞이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검체의 안전한 수집, 저장, 취급 그리고 이송을 제공해야 한다.
- (c) Chain of Custody. 검체의 수집 혹은 검사 수행을 담당하는 자는 적절한 기록 관리, 취급, 표시 및 검사된 검체의 확인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련의 관리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현장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수집된 검체를 포함한 모든 검체에 적용된다.
- (d) Criminal investigation. 공중보건 응급상황 중에, 수집되었거나 검사가 수행된 모든 검체는 범죄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모든

사업, 시설 혹은 검체 수집 혹은 검사 수행의 권한이 있는 기관은 관련된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Section 607 Access to and disclosur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a) Access. 의학적 검사, 치료, 예방접종, 격리 혹은 검역 프로그램이나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공중보건당국에 의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그 정보가 취득되고 사용된다는 합법적인 필요가 있는 자로 제한된다.

- (1) 건강 정보 당사자 개인의 치료를 위한 경우
- (2) 역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3) (질병)전파 원인 조사를 위한 경우

(b) Disclosure. 공중보건당국에 의해 보호된 건강 정보는 다음의 사람에게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의 특정한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없다 :

- (1) 당사자
- (2) 해당인의 부모, 자녀 및 배우자(immediate family) 혹은 대리인
- (3) 연방 기관 혹은 연방 법에 따른 관련 당국
- (4) 개인 혹은 공중보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 (5) 감소된 개인을 확인하거나 사망의 원인 혹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

Section 608 Licensing and appointment of health personnel.

공중보건 응급상황 중에 공중보건당국은 보건 담당자의 자격부여 및 임용에 관한 다음의 응급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a) Health care providers. 이 주에서 건강관리 제공자가 그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능력, 권한, 또는 자격에 따라 예방접종, 치료, 검진 및 검사의 수행에 도움을 줄 건강관리 제공자를 요구하는 것.

(b) Health care providers from other jurisdictions.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주(out-of-state) 건강관리 제공자의 의무를 정하고 기술하는 것.

- (1) 다른 주의 응급의료 종사자의 임명은 그 시간이 제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종료 선언 시점을 넘을 수 없다. 공중보건당국은 종료로 인하여 시민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협에 빠지지 않는 시점에 이들의 임명을 종료해야 한다.
 - (2) 공중보건당국은 이 주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사법권에서 온 건강관리 제공자들에 대하여 주의 법 및 관련 명령, 규칙 혹은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자격 요건, 인정 및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 (3)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다른 주의 응급의료 종사자는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대처와 관련된 의학적 돌봄 혹은 치료의 결과로서 나타난 손상에 대하여 민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손상이 환자의 건강 혹은 삶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무시한 무모한 상황 하에서 의학적 돌봄 혹은 치료의 제공했거나 제공하지 못한 결과이더라도 그러하다.
- (c) Personnel to perform duties of medical examiner of coroner.
 기관(office)의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응급 시에 건강 상태 평가를 도울 자 혹은 검시관을 임명하고 그 의무를 기술할 수 있도록 건강 상태 평가자 혹은 검시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 (1) 응급 시 건강 상태 평가자(medical examiner) 혹은 검시관을 도울 자를 임명하는 것은 그 시간이 제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종료 선언 시점을 넘을 수 없다. 건강 상태 평가자 혹은 검시관은 어느 때, 어느 이유에서든 그 임명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임명의 종료는 기관의 의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2) 건강 상태 평가자 혹은 검시관은 그들의 의무 수행에 대한 주의 법 그리고 관련 명령,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 요건, 인정 및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3)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건강 상태 평가자 혹은 검시관의 보조자는 악의가 없고, 의무로 기술된 범위 내의 행동에 대해 그들의 의무 수행에 있어 민사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VII Public information regarding public health emergency

Section 701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공중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이 선포되거나 종료된 상태에 주(State)의 시민들에게 공중보건 응급상황 시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행동이 응급상황을 통제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Means of dissemination. 공중보건당국은 일반 대중들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유용하고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b) Languages. 공중보건당국이 판단하기에,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영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가 많은 경우, 공중보건당국은 영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c) Accessibility. 정보는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702 Access to mental health support personnel.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선포 후, 공중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해 심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에게 의뢰해야 한다.

Article VIII Miscellaneous

Section 801 Titles.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장(Articles), 조(Sections), 및 하부 조항(Subsections)의 제목 및 하위 제목은 유익해야 하며, 불변하지 아니한다.

Section 802 Rules and regulations.

공중보건당국과 다른 관련 기관들은 이 법의 조항의 실시 및 적용에 필요한 경우 규칙 및 규정의 적용과 공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공중보건당국과 다른 관련 기관들은 벌금과 벌칙, 명령의 발포 및 법에 의한 다른 구제책의 부과를 통하여 이 법 조항을 수행토록 하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이 조항이 법에 열거된 특정한 강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803 Financing and expenses.

- (a) Transfer of funds. 주지사는 공중보건 응급상황 중에 필요한 경우 주의 예산을 양도(transfer)할 수 있다.
- (b) Repayment. 양도된 예산은 입법 예산에 의하여 충당된 자금으로 채워져야 한다.
- (c) Conditions. 이 조항에 따라 주지사가 행한 자금의 양도는 다음의 상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
 - (1) 입법 예산 혹은 다른 절차를 통하여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대처가 어려운 경우.
 - (2)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예산이 불충분한 경우.
 - (3)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자금이 다른 공공 자금 혹은 주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 (d) Expenses.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주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다음의 제한의 대상이 된다.
 - (1) 주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2) 이 조항에 따라 발생된 모든 비용의 총합은 회계연도의 예산을 넘을 수 없다.
 - (3) 회계연도에 우선하여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상태에 대하여 발생하는 자금은 오로지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위한 회계연도에 실행될 수 있다. 회계연도에 우선하는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위한 자금은, 회계연도에 소비되고, 회계연도에 대한 지출 제한을 적용한다.

Section 804 Liability.

- (a) State immunity(주에 대한 면제). 주와 그 하위 기관과 고의의 잘못 혹은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 공중보건당국 혹은 이 법에 근거를 두는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은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이 법에 따라 공포된 법, 규정,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결과로서 나타난 상해, 사망, 물적 손실에 책임이 없다.
- (b) Private liability(개인의 책임).
 - (1)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피난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보상 없이 특권 혹은 자격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의 일부 혹은 전부의 사용 혹은 지정을 허용한 부동산을 소유자나 상속자는 재산상 손실, 상해, 사망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이 법의 조항에 의하여 주 혹은 하부 기관의 지시 하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 및 고용인, 그러한 사람, 기업의 대리인은 고의적인 잘못 혹은 중과실의 발생을 제외한 재산상 손실 혹은 인명의 상해,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이 법의 조항에 의하여 주 혹은 하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도움이나 장비를 제공한 개인, 기업 및 고용인, 그러한 사람, 기업의 대리인은 고의적인 잘못 혹은 중과실의 발생을 제외한 재산상 손실 혹은 인명의 상해,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이 하부조항에 따른 면제는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일부 혹은 전체에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개인, 기업 및 고용인, 그러한 사람, 기업의 대리인 및 그에 따라 책임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805 Compensation.

- (a) Taking. 재산의 보상은 이 법에 따라서 주지사에게 의하여 선포된 공중보건 응급상황 동안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공중보건당국에 의하여 사유재산이 사용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 (b) Actions. 보상의 지불에 관하여 주에 대항하기 위한 소송은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제정될 수 있는 규칙 및 법의 존재에 따라서 이 주의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c) Amount. 보상의 정도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주된 절차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며, 505조에 의한 항목을 위하여 계산되는 보상의 양을 제외하고는 그 항목의 생산을 위하여 초래된 비용에 한정된다.

Section 806 Severability.

이 법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다. 만일 이 법의 어떤 조항 또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의 적용이 사법권 내의 주 법원 혹은 연방에서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이 법의 적용이나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Section 807 Repeals.

이 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삭제된다.

- (a) [To be inserted in each state considering passage of the Act]

- (b) [To be inserted in each state considering passage of the Act]
- (c) [To be inserted in each state considering passage of the Act]...

Section 808 Saving clause.

- (a) Federal supremacy. 이 법은 연방 법 또는 규정을 따른다.
- (b) Prior conflicting acts. 공중보건권과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주법
혹은 지방 법이 상충되는 경우, 이 법의 조항이 적용된다.

Section 809 Conflicting laws.

이 법의 조항은 주지사의 서명에 의해 시행된다.